



74

2019 Autumn

<특집 I-2> 한국 민족문제 연구의 성찰과 전망

04 다문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용재
30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의 동향과 과제	김용찬
52 재외한인 연구의 성찰과 과제	송석원

<특집 II> 국제이주와 인간안보

72 신남방정책을 위한 對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의 안보위협 분석	오정은
92 제주 예멘 난민사태와 인간안보	석인선 · 황기식
116 다문화인권교육을 통한 증오범죄 대응방안	정은정 · 김대중

<일반논문>

138 간문화능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원순옥 · 김영경
-----------------------------	-----------

Articles

-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 of Multicultural Studies: Focused on the Limitations and Overcoming of Government-led Multicultural Discourse 04
 Lee Youngjea (GyeongSangBuk-Do Council)
-  The Review and Suggestions of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in Korea 30
 Kim Yongchan (Daegu Catholic University)
-  Introspect and Prospect of Studies on Overseas Koreans 52
 Song Seokwon (Kyung Hee University)
-  A Study on Security Threats due to the Visa Waiver for Citizens from ASEAN Countries as Part of New Southern Policy of South Korean Government: Focusing on the Increase of Irregular Immigrants in Korea 72
 Oh Jungeun (Hansung University)
-  Yemeni Refugees on Jeju Island and Human Security: Focused on Social Integration 92
 Suk Insun (Dong-A University), Hwang Kisik (Dong-A University)
-  Countermeasures of Hate Crime Cases through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Focused on Hate Crime Cases in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French Immigrants 116
 Jung Eunjeong (Dong-A University), Kim Daejung (Dong-A University)
-  The Effects of Intercultural Competence on Conflict Management Style: Focusing on Interpersonal Conflicts in Multicultural Families 138
 Won Sunok (KyungWoon University), Kim Yeongkyeong (Daegu Catholic University)

특집 1-2

한국 민족문제 연구의 성찰과 전망

다문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 정부주도 다문화 담론의 한계와 극복을 중심으로	이용재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의 동향과 과제	김용찬
재외한인 연구의 성찰과 과제	송석원



다문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 정부주도 다문화 담론의 한계와 극복을 중심으로



이 용 재 (경북도의회)
(laski@hanmail.net)

국문요약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국민만들기의 동화정책을 다문화정책으로 추진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정부주도 “다문화” 정책의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현상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관심을 끌면서 관련연구도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다문화담론은 다문화주의의 넓은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문화연구의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고, 동화를 통한 국민만들기에 치우치게 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와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가 31.32%와 11.38%로 가장 많았고, 갈등에 관한 연구는 1.54%에 불과했다. 또한 다문화연구 편수 또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변화와 맥을 같이해 2010년과 2012년 이후에 감소하는 등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민자를 수용하는 정부의 시혜적·도구적·계층적 시각이 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다문화현상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문화연구는 인구유입의 현상적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따른 내적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다른 층위의 행위자들이 소통하는 평등한 권력관계의 형성으로 풀어가야 한다.

주제어 : 다문화주의, 다문화연구, 동화, 통합, 갈등

I. 문제제기

역사는 이주와 함께 만들어진다. 세계 제국으로 성장한 로마는 트로이와 알프스에서 남하한 인도-유럽어족의 라틴족에서 시작되었고, 훈족의 침입을 받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그 막을 내렸다. 우리의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조선은 위만(衛滿)과 그를 따르는 1,000여 명이 연나라에서 이동해오면서 철기시대를 열고, 새로운 고대국가를 형성하였다.¹⁾ 고구려·백제·신라 또한 새로운 문명 혹은 세력을 통해 급격히 성장했다. 새로운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는 '관용'은 성장과 변화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열로 인한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이주가 기존 사회체제에 주는 충격은 매우 크다.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자본과 상품과 함께 사람들 또한 국경을 넘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주에 대해 스티븐 카슬과 마크 J. 밀러는 「이주의 시대」(1993)에서 오늘날 이주는 세계의 사회와 정치를 개편하는 초국가적 혁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네그리와 하트는 「제국」(2000)에서 오늘날 이주현상은 보편적 일상이며, 근대적 국가의 국경통제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하고, 이주라는 유령이 출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에게도 이주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주민들의 삶은 이미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고, 매일 직접 혹은 매체를 통해 그들을 만나고 있다. 이주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다.

유엔(United Nations 2017)에 따르면, 고국을 떠난 이민자의 수가 2000년 1억 7,260만 명에서 2017년 2억 5,770만 명으로 8,510만 명, 약 49.3%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는 외국인노동자가, 2000년대에는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8월에 100만 254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08년 6월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인구의 약 3.9%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1년에는 국내체류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주민의 증가가 이들에 대한 호의적 시선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오랜 이민국가인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연합이 결성된 이후 인도·파키스탄 등에서 들어오는 이주민들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고, 실업률이 치솟자 이주민들로 인해 복지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설한 2014, 83). 안정적 삶을 위협하는

1) 위만 조선에 대해서는 사마천의 『사기(史記)』와 반고의 『한서(漢書)』에 따르면 연나라 사람으로 요동일대에서 천여 명을 모아 준왕(準王)의 외신(外臣)으로 있다가 왕이 되고, 왕검성에 도움을 정했다고 한다.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는 현재의 통설을 반영한다.

사회위기가 심화되면서, 변화에 대한 거부와 함께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반이민정서(anti-immigration feeling)의 확산은 2001년 이슬람 테러집단에 의해 발생한 9.11사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외부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국가 안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애국자법”(Patriot Act)이 2001년 10월 26일에 제정되었고,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 발생한 방리유(Banlieue) 사건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톨레랑스’를 강조하며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강조하였던 프랑스 이민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프랑스에도 이민자들은 주류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배제되어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민자들의 저항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 대한 거부도 드러나고 있다.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는 정부의 다문화정책을 비판하고, 무슬림의 추방을 요구하면서 당시 노동당 정부와 노동당 청년 캠프에 대해 테러를 감행해 76명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민자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거부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민자들의 저항은 이들의 사회통합을 지향하였던 다문화정책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1970년대부터 다문화주의를 표방했던 호주는 2007년 1월에 ‘이민 다문화부’를 폐지하고, 동화를 제시함으로써 다문화주의의 공식폐기를 선언하였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10년 10월 17일에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기독교민주당(CDU) 청년 당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겠다는 노력은 이미 실패했으며,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민자들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2월에는 영국의 캐머린 총리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또한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이야기했고, 유럽의회도 다문화주의 실패에 동의하는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민자들이 주류문화로 동화를 통한 통합을 주장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시간당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수렴되면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 또한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경쟁자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그들의 사회적 기여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어진 체류기한을 넘긴 외국인노동자들은 불법체류외국인으로 그들의 존재마저 부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배제와 갈등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노동자들을 포함해 모든 사회적 다름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다문화가정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2011년 74.2%였지만,

2013년에는 67.5%로 6.7%p 감소하였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응답 또한 2011년 25.8%에서 2013년 32.5%로 6.7%p 상승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감소하고, 부정적 응답이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한국 사회가치를 어지럽힌다는 응답은 2010년 15.7%에서 2013년 21.5%로 5.8%p 증가하였고, 한국사회로의 적응 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같은 시기에 24.6%에서 27.2%로 2.6%p 증가하였다(아산정책연구원 2014). 또한 한국사회가 다민족, 다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2010년 60.6%에서 2015년 49.6%로 11.0%p 감소하였고, 다른 인종, 언어, 종교, 문화를 가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10년 48.9%에서 2015년 56.9%로 8%p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한국인 국적 취득을 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5년 30%에서 2010년 40.7%로 10.7%p 증가하였지만, 2015년에는 34.2%로 2010년에 비해 6.5%p 감소하였다(이내영 외 2016).

이처럼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발(backlash)은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여 온 한국의 경우 이러한 한계는 더욱 명확하다. 이민자들을 일방적으로 주류사회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동화정책은 이민자들의 저항을, 복지적 시각에서 이들을 시혜대상으로 다루는 지원정책은 이들을 사회적 부담으로 간주하는 내국인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을 국민 혹은 사회적 구성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으로 바라보는 도구적 시각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동화에서 배제로 이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필요에 따라 이주민을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족으로 나누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통해 정부 주도 하에 다문화정책의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면서 외국인노동자를 배제하고,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면서 형성된 다문화담론은 오늘날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담론으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많은 다문화연구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다문화사회의 필요성과 사회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다문화주의 정서와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문화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다문화담론에 치우친 다문화연구는 다문화사회가 초래하는 '갈등'을 외면하고 있다. 역사는 문화적 이종교배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늘날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이 초래하는 필연적 갈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연구의 현실을 돌아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통합의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II.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1. 다문화주의 등장 배경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할 것인가 혹은 거부할 것인가라는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새로운 문화의 수용방식에 대한 갈등이다. 역사적으로 다문화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갈등은 민족국가의 형성을 통해 '민족'과 '민족문화'라는 단일성이 형성되고, 형성된 단일성의 붕괴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러 신분이 공존하는 신분제 사회를 거쳐, 각각의 지역적 기반을 가진 봉건귀족들이 강력한 권력에 의해 통합되면서, 왕권국가가 탄생하였다.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falen)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독립성이 인정되면서 근대국가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1789년 프랑스혁명을 통해 왕을 대신해 주권을 가진 새로운 근대국가가 등장하였다. 또한 프랑스혁명은 모든 사회적 신분과 특권을 형식적으로나마 거부하면서 천부인권사상 안에서 모든 인간들을 국민으로서 서로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정치체제로서 국가는 국경을 단위로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었고, 국가적 단일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민족'개념은 국가 안의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배제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한 정치체제의 성원이 아니라 공동의 운명을 가진 민족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국가의 경계 안에서 종족을 뛰어넘어 언어·문화·역사적 경험을 함께 공유했다고 간주하는 역사적 운명공동체로서 민족이 등장한다. 어니스트 겔러(Ernest Gellner 1983)는 민족주의를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를 일치시키는 정치적 원리라고 지적한다. 민족주의는 다시 공동문화로서 국가문화 또는 민족문화가 민족국가 통합의 강력한 이데올로기(Ideologie)로 작동하면서 민족주의는 문화적 단일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박정수 2013, 8). 배제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경을 경계로 단일한 민족이 만들어졌지만, 때로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다름으로 인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국경 내에서 민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민족국가는 국가를 구성한 이후에 민족주의를 통한 내적통합으로 형성하는 것과 종족 혹은 민족이 민족주의를 통해 형성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민족주의가 민족을 형성하기 때문에 민족은 새롭게 창조된 구성적 존재로 인식되지만, 후자는 민족이 역사적 실체이기 때문에 '역사성'과 '혈연의 계보적 연대'를 통해 강조된다. 민족을 통해 근대민족국

가가 형성하는 이 형태가 민족을 근대 이전의 산물로 보는 역사주의적 민족주의가 주장하는 '역사적-문화적 공동체'로서 '종족적 민족'과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박정수 2013, 9). 이처럼 민족은 때때로 국가와 동일시되면서 동시에 국경을 넘는 새로운 운명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근대민족국가는 국가를 하나의 운명적 단위로 간주하게 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형성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은 많은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랑스 군과의 전쟁을 통해 유럽은 국경 안에 속한 사람들을 국민으로,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결집시키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1806년 나폴레옹과 프로이센의 예나 전투(Battle of Jena)에서 프로이센이 대패하고, 이로 인해 1807년 7월 7일 틸지트 조약(Treaties of Tilsit)이 체결되었을 때 피히테(J. G. Fichte 1762~1814)는 프랑스의 프로이센 점령에 항의해 1807년 12월부터 독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강연을 시작하였다. 이 강연은 유명한 「독일 국민에게 고함」(Reden an die deutsche Nation)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어, 독일 국민들에게 독일 민족주의를 각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국제사회에서 갈등의 주체가 왕에서 국가로 전환되고, 국가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통일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공동의 운명공동체인 민족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국경을 경계로 한 내적 단일성과 외적 이질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민족국가의 형성은 주권에 기초한 정치권력체인 국가와 언어·종족·종교 등에 기초한 문화공동체인 민족이 동일시되면서 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그 민족의 구성원으로 간주되고, 국민의 자격은 혈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국가의 운명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국민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민족의 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국가를 단위로 제도적 국민과 함께 정서적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국가단위의 사회통합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국가민족주의는 다른 민족과 국가의 생존과 관계없이 자신의 민족과 국가의 생존만을 강조하는 제국주의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자기민족의 운명을 국가권력을 통해 다른 민족에 대한 배척과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던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세계는 민족국가의 운명적 구성원이 아닌 보편적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자행되었던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위해 1948년 12월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성원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와 지위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확산은 기존의 권위를 거부하고,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새로운 권력구성의 방식을 수용하였다. 그동안 강조되었던 단일성에 대한 회의와 새롭게 등장한 다양성에 대한 추구가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단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들 속에서 새로운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개인의 자유와 사교의 자유로움에 대한 추구는 프랑스 68혁명을 거치면서 기존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확산되었다. 전통적 단일문화개념이 후퇴하고, 수직적·수평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으로 문화개념이 확대되면서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서적(階序的) 질서에 기초한 권위가 해체되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류문화로 인해 배척되었던 하위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존의 권위에서의 질주와 탈주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화형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다문화주의의 등장은 이러한 인식적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한다.

2.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캐슬과 밀러(Castles & Miller 1993, 247-249)는 '편입'의 양식을 동화, 통합, 다문화주의 등으로 구분하고 이주민의 일방적 편입으로서 동화와 점진적 편입으로서의 통합과 달리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이 이주사회의 핵심적 가치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그들의 고유한 문화, 종교, 언어를 포기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주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1970년대 이후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에서 개인을 주류사회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벗어나 소수집단의 문화·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비유럽계 이민자들이 본국에서의 생활방식과 언어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와 갈등을 일으키자, 정부가 동화정책을 완화하고, 이들 이민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새로운 민족국가 정책을 시작하였다(Ang Ien 2010).

이처럼 다문화주의는 서구사회에서 그들이 가진 문화가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이주자들의 문화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양성을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민족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주도 기획"(Forrest, James & Kevin Dune 2006, 206)이다. 이용승(2004, 182)은 다문화주의를 국가, 인종, 민족 등의 거시적 차원에서부터 사회의 소외계층과 소수자 혹은 세대 갈등이나 성 역할의 차이 등 미시적인 문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라고 지적하면서, 1970년대를 전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 혹은 운동의 목표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윤인진(2008, 73)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도록 하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이 개인을 주류문화에 동화시키는 정책에서 이들의 집단적 문화정체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요인에 대해 킬리카(Will Kymlica 2005)는

1960년대 이후 인권의식이 확산되고, 소수 인종에 대한 인권의식과 소수인종의 권리의식이 고양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합의가 확산되어, 주류 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을 관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김비환(2007)은 자유화와 민주화에 따른 인권의식이 확립되어 소수인종 및 문화집단들에 대한 인정과 공존의 수용이 제시됨에 따라 다문화주의가 등장하였다고 하고, 이용승(2011)은 근대민족국가의 형성 이후에 20세기 후반 국제이주가 증가하면서 문화적 우열관계에 기초한 동화정책이 이주자에 대한 억압과 배제를 동반하였지만,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소수자들이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분출시키게 됨에 따라 국가와 주류민족이 이들의 욕구를 무시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을 다문화주의 등장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용재(2012)는 다문화주의 등장요인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누고, 내적요인으로 문화의 수직·수평적 다양성의 확대에 의한 생활세계의 내적 체계분열을, 외적요인으로 외부문화의 수용으로 인한 생활세계의 외적 체계유입을 제시하면서, 외적 체계의 유입은 내적 체계분열로 인한 수용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 내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를 그 정책적 방향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기도 한다. 마르티니엘로(Martiniello 1997, 89-107)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개입 정도와 개별문화의 자유와 정체성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온건(soft) 다문화주의’와 ‘강경(hard) 다문화주의’로 구분한다. 온건다문화주의는 사적 공간에서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소비방식의 다양성, 개인들의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추구태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강경다문화주의는 민족적 정체성 문제에 주목하고, 근대민족(국민)국가의 정체성의 확립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류사회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에 따라 소수집단들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강경다문화주의는 다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구분한다. 자유주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개인들을 사회의 중심으로 두고, 공적영역이 아닌 사적영역에서 소수문화를 가진 개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한다.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는 사회는 개인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로 구성되므로, 소수문화공동체의 정체성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한다.

요네야마(米山リサ 2006, 350-354)는 ‘자유주의적(liberal) 다문화주의’와 ‘비판적(critical) 다문화주의’로 구분하면서, 관용과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복수의 문화와 역사적 전통이 지배적 공적 공간에서 공정한 취급을 받고,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추구하고,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의 차별성과 문화 간 관계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권력과 구조의 문제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차이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상대적 가치를 승인하면서도 그것을 기성공간으로 포섭하고 한계지운다고 비판한다. 비판적 다문화주의가 주목하는 것은 이미 차이를 계서화한 주류적 지배문화의 가치규범이다. 지배문화의

우위성이 암묵적으로 관철되는 가운데 소수문화에 대한 자율성의 인정을 통해 마치 공적 공간이 가치중립적이어서 어느 집단이든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것은 지배계급이나 사회적 다수자의 가치관이 규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한다.

다문화주의는 사회가 가진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일원적이고 동화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고, 공존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처럼 다문화주의의 스펙트럼은 하나의 국가 안에서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이질적 집단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일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가치와 다른 개인적 신념과 행동양식을 지니고, 지배적 문화가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지배적 주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문화에 대한 다른 신념과 다른 생활모습을 가진 다른 인종·민족으로 구성된 집단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상대성을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조현상 2012, 225). 이를 통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제·종교·가치·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집단이 하나의 사회 내에서 공존하는 상태를 포괄(이신동 외 2017)한다.

Ⅲ. 한국의 다문화연구의 현황

다문화주의의 폭넓은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논의는 주로 인종과 출신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주요대상은 남성으로 간주되는 외국인노동자와 여성으로 간주되는 결혼이민자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남성으로 간주되는 외국인노동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여성으로 간주되는 결혼이민자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이라는 주제 하에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모두 논의의 대상을 이루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는 임시적인, 결혼이주여성은 영구적인 통합의 대상이라는 차이를 가진다.

한국의 다문화연구는 외국의 다문화정책을 소개하는 초기연구를 거쳐,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인권보호를 통해 그들이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인간으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인구학적 변화의 시각에서 인종과

출신국가의 다름에 기초해 문화적·언어적 동화를 통한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연구는 조현상(2012, 227)의 지적처럼, 이주노동의 유입기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0여년의 기간과 결혼이주여성의 유입기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다문화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 결혼이주여성, 2000년대 이후 외국인유학생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다름을 전제로 이들을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국민만들기(Nation building)를 지향하는 통합·동화정책으로서 다문화연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노동자(Guest-worker)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국적과 인종·언어·민족의 다름을 이유로 사회의 경계에 서 있는 소수자들에 대해 주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이들이 유입국의 필요에 따라 초대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는 국가정책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했다.

오늘날 다문화정책의 주요대상인 결혼이민자는 2000년에 24,081명으로 체류외국인 491,324명의 약 4.9%에 불과했고, 불법체류외국인은 205,205명으로 체류외국인의 41.8%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각각 6.7%와 15.0%로 그 비중이 변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대부분 이주노동자인 불법체류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표 1〉 결혼이민자와 체류외국인 현황

년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결혼이민자	24,081	75,011	141,654	151,608	152,374	155,457	159,206
체류외국인	491,324	747,467	1,261,415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불법	205,205	204,254	168,515	214,168	208,971	251,041	355,126

출처: e-나라지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년도별 통계연보

1980년대 후반에 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은 관광 또는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취업하였다. 1991년에서 2006년까지 시행된 산업기술연수제도(‘산업연수제도’로 변경)는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시킴으로써 경제적·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는 고압적 자세를 보여준다. 이 제도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는 과도한 입국경비와 낮은 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스스로 감수해야 했고, 사회적으로는 불법체류, 송출비리,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4년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는 2006년까지 병행되었고, 2007년 1월에 비로소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어, 고용허가제가 오늘날까지 한국의 저숙련 외국인인력제도의 근간역할²⁾을 하고 있다(설동훈 2017, 88).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와 업종은 고용인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체와 건설업, 요식업, 사회복지사업, 청소년관련사업 등의 몇몇 서비스업과 농·축산업 및 연근해어업 등의 일부 업종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1년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갱신하여야 하고, 3년의 고용계약과 2년 미만의 재계약 규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5년 미만의 근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적법』제5조(일반귀화 요건)제1호에서 외국인의 귀화허가의 조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가 증가하면서 2017년 12월 19일 『국적법』일부개정령을 통해 제5조(일반귀화 요건)제1의2호로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을 신설하여 불법체류자의 일반귀화신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일시적 필요에 따라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새로운 국민 혹은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는 혈연적·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의 유지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 정주를 포함하는 ‘이민사회’라는 용어 대신에 내국인과 결혼하는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다문화’정책의 범위를 한정하고, 선별적 포섭과 배제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는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문화정책의 주요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1970년대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 시작되고, 1980년대 국제적 위상이 증가하면서 국내

2)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신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약 7만 9천명에 달했다. 이중 산업연수제를 통해 약 3만 8천명이 유입되었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4만 1천명이 유입되었다. 2004년 당시 농축산업에 약 2만 7천명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었지만, 이후 농축산업의 외국인 인력은 점차 감소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노동력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문화적 비대칭이 심화되었고, 베이비붐 세대 이후 심화된 성비불균형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지역인구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총각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제결혼을 통하여 지역 농촌의 인구감소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국제결혼이 1990년에는 4,710건으로 외국인아내보다는 외국인남편과의 결혼이 더 많았다. 그러나 1995년에는 13,494건으로 증가하였고, 외국인남편보다는 외국인아내와의 결혼의 비중이 더욱 커졌다. 1990년과 1995년을 비교하면 국제결혼의 건수는 약 2배가 증가하고, 외국인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한다. 2000년도 이후에 국제결혼은 저개발국 출신의 여성들이 빈곤탈출의 방법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라는 특징은 결혼이주가 국가 간의 불균형한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인종·계급·젠더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장명선·이옥경 2008, 3)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외국인노동자처럼 정부의 정책적 주도에 따라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표 2〉 국제결혼 현황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합계	4,710	13,494	12,319	43,121	34,235	21,274	20,591	20,835	22,698
외국인아내	619	10,365	7,304	31,180	26,274	14,677	14,822	14,869	16,608
외국인남편	4,091	3,129	5,015	11,941	7,961	6,597	5,769	5,966	6,09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및 연도별 국가별국제결혼건수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정부는 이민자문제를 정책의제로 제시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국적법』(1997)과 『출입국관리법』(2005)이 개정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에 이어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이 제정되었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³⁾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

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함과 동시에 한국인 가족의 며느리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드러내고, 영구체류와 귀화를 전제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을 출입국 통제 및 관리를 담당하던 법무부에서 이관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 및 가족업무를 이관 받아, 결혼이주여성정책을 가족정책차원에서 주관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과정에서 제명을 “다문화가족”과 “이주민가족” 중에서 “다문화가족”으로 정하게 된다. 사실상 “이주민가족”(Migrant Families)이 UN의 공식용어였지만, 당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 관계조정을 위해 외국인노동자가족, 재외동포가족 등을 포괄하는 “이주민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⁴⁾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기존의 재한외국인정책과의 차이점은 2007년 6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을 위해 개최된 “혼혈인·이주민·다문화가족 지원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달리 국적취득 이전뿐만 아니라 이주 경험을 가진 한국국적을 가진 가족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과 갈등을 최소화하여 이들이 한국사회에 원만하게 통합되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외국인노동자와 달리 이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혼인귀화자 누계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38,991명에서 2018년 129,028명으로 약 3.3배가 되었고, 여성귀화자는 가 되었다. 또한 2015년 혼인귀화자 중 결혼이주여성이 남성의 19배에 달한다.

또한 국적취득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전체의 약 62.97%를 차지하고, 2013년에는 80.04%까지 그 비중이 올라간다.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국적취득 유형에서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은 전체국적취득의 67.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5년 이상의 거주기간에 대하여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일반귀화의 경우에는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전체국적취득에서 차지하고 비율이 평균 2.77%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2004년 12월 27일에서 2005년 5월 22일까지 실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을 말한다. 연구수행기관은 (재)미래인력연구원이고, 수행연구원은 설동훈 교수가 진행하였다.

4) 2007년 5월 3일 국무조정실 주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회의를 통해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재한외국인 정책을 법무부가 총괄하고, 여성가족부는 외국징정책실무위원회 산하 결혼이민자 관련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결혼이민자대책을 주관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여성가족위원회, 2007).

〈표 3〉 혼인귀화자 누계 현황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혼인귀화자	38,991	56,584	69,804	76,473	83,929	90,439	92,316	114,901	121,339	129,028
귀화남성	2,624	3,796	4,317	4,268	4,264	4,261	4,563	-	-	-
귀화여성	36,367	52,788	65,487	72,205	79,665	86,178	87,753	-	-	-

출처: 통계청,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2007년-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6년-2018년)

〈표 4〉 연도별 국적취득(귀화) 유형별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6,312	16,090	10,541	11,270	11,316	10,924	10,108	10,086	
일반	154	130	103	133	298	323	566	715	
간이	혼인	10,271	10,733	7,733	9,021	7,607	6,966	6,375	6,438
	기타	181	388	184	291	475	618	413	304
특별	5,706	4,839	2,521	1,677	2,717	2,778	2,382	2,238	
수반취득				148	217	239	372	391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연감」(연도별)

이처럼 결혼이민자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정책적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한국사회의 동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체류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과는 다른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의 개념적 범위는 국민만들기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에 제한되고 있으며, 지원정책 또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및 생애지원, 그 자녀의 교육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문화'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 또한 정부의 이러한 개념범위에 구속되어, 다양한 다문화논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다문화 담론의 선점과 주도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논의를 포함하지 못하고, 대상과 정책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이후 다문화논의를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다문화연구의 현황과 방향

국내 다문화에 대한 초기연구로는 미국의 다문화현상을 국내에 소개한 이종석의 “미국 다문화교육의 이론적 고찰”(1984)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이종석은 다문화논의가

196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인종 간의 갈등과 민주주의 이념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고, 단일민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는 용어 그 자체가 낯설고, 관심도 없는 영역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국내에서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김동훈(1985), 브라이언 L. 에반스(1989), 설기문(1993) 등의 연구로 이어지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학위논문 중에서 다문화에 관한 연구는 초기연구로 고은정의 석사학위논문(1994)과 황규철(2000)의 박사학위논문⁵⁾을 들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유입과 취업에 대한 설동훈의 연구(1992)와 이해경(1994)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차별을 인권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하고 하였던 최돈길(1995), 박석운(1995)의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유명기(1997), 함한희(1997) 등도 체류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문제를 다룬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에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이미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주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조현상 2012, 222). 2000년대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적응문제를 제기한 홍기혜(2000), 한건수(2006), 김연수(2007) 등의 연구가 있고,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부부간의 갈등문제를 연구한 윤영주(2001), 김오남(2006)의 연구와 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문제를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 조영달(2006), 오성배(2006) 등의 연구도 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중심이 된 다문화연구는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시작한 2005년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2008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국내 다문화담론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을 체류외국인과 달리 새로운 정책적 대상으로 범주화하고, 기존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정부 주도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따라 다문화연구의 대상 또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으로 축소되었다. 정부에서 시행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인력 정책과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5) 다문화 관련연구로 김동훈, 1985,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재일교포, 교포정책자료 23, 해외교포문제 연구소. 에반스, 브라이언 L. 1989, 다문화주의와 캐나다의 아시아정책, 캐나다 연구 1, 75-86. 설기문, 1993, 다문화주의적 입장에서 본 상담의 토착화와 한국적 상담의 가능성, 학생연구 21, 43-61. 고은정, 1994, 다문화 중심주의의 개념 접근에 따른 음악교육의 방법론 시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과 황규철, 2000, David Mamet의 작품에 나타난 유대성과 다문화주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하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다문화’ 및 ‘외국인 인력’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용역 현황

	합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다문화	82	-	-	-	-	-	-	2	5	7	8	7	8	9	4	7	10	5	6	4
외국인인력	91	1	-	-	1	2	2	1	6	5	7	12	8	11	3	8	7	8	5	4
합계	173	1	-	-	1	2	2	3	11	12	15	19	16	20	7	15	17	13	11	8

출처: 온나라정책연구 (2019. 06. 28.).

외국인인력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91건이 진행되었고, 다문화관련 연구용역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82건이 진행되었다. 또한 외국인인력 관련 연구용역은 2000년 이후 점차 증가해서,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다문화관련 연구용역은 2006년 이후 점차 증가해서 201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인력에 대한 연구용역 중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직접 키워드로 하는 연구용역은 2004년 “국내외국인노동자 차별해소방안연구”와 2008년 “외국인노동자관리대책”으로 단 2건에 불과하였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력으로 보고, 이들의 사회정착이 아니라 국내 노동력의 수급상황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정책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표 6〉 ‘다문화’를 제목으로 하는 학술논문 현황

년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다문화	38	110	254	371	435	436	422	387	327	228	196	157	138	3,499
교육	12	23	85	101	146	158	114	122	110	68	69	41	47	1,096
가족	-	14	14	43	59	54	65	47	37	29	17	21	14	414
지원	4	7	11	28	35	34	31	29	23	13	12	9	10	246
여성	9	6	10	16	21	25	29	14	16	10	11	6	6	179
결혼	5	7	9	12	23	22	23	12	11	11	6	6	7	154
통합	2	11	11	21	19	16	19	18	16	8	9	7	7	164
갈등			3	3	6	3	10	12	5	4	2	3	3	54

출처: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 www.kiss.kstudy.com) (검색일: 2019. 06. 28.).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에서 “다문화”를 제목으로 하는 학술논문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가장 많은 편수를 보여주고 이후에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정부가 다문화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시기와 정부용역이 증가하는 시기와의 중복된다. ‘다문화’를 제목으로 하는 학술연구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에 관한 연구는 2006년에서 2018년까지 연구 편수 중 31.32%(3,499편 중 1,096편)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는 2007년에서 2018년까지 연구의 11.83%(3,499편 중 414편)를 차지하는 데, 이는 다문화가족의 동화와 적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지원, 가족, 여성, 결혼을 제목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보인다. 이에 반해 다문화사회의 ‘갈등’에 관한 연구는 2008년에서 2018년까지 54편에 불과해 전체 연구의 1.54%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의 ‘통합’에 대한 연구는 164편으로 ‘갈등’에 관한 연구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관련 연구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유사하게 교육과 지원을 통한 동화와 통합에 주목하고 있으며, 갈등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다문화’를 제목으로 하는 분야별 연구 현황

년도	합계	사회과학	어문학	인문학	예체능	자연과학	의약학	농학	기타
다문화	3,499	2,102	460	395	148	122	59	20	193

출처: KISS (검색일: 2019. 06. 28.).

〈표 8〉 ‘다문화’를 제목으로 하는 사회과학 분야별 연구현황

년도	합계	교육학	사회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인문지리학	법학	정치외교학	심리학	기타
다문화	2,102	853	394	217	206	77	72	61	59	163

출처: KISS (검색일: 2019. 06. 28.).

‘다문화’를 제목으로 하는 학술논문 중에서 사회과학 분야가 2,102편으로 전체의 60.0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 교육학 분야가 853편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40.58%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사회학 분야가 394편으로 18.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치외교학 분야는 61편으로 2.90%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또한 그동안 다문화연구가 동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현상에 관찰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반해 소수 문화공동체를 주체로 보고, 이들과 주류문화공동체 사이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다문화연구가 이들을 객체로서 동화의 대상 혹은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주로 했으며, 이들을 주류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인정과 승인을 위해 투쟁하고 갈등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입장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IV. 다문화연구의 한계

다문화연구의 넓은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연구는 그 대상과 접근이 매우 협소하게 진행되어 왔다. 해외의 이론과 현상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그러하듯이 다문화연구 또한 외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논의로 전개되었지만,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들을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인력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과 함께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다문화정책으로 자리 잡고, 정부에 의해 다문화담론이 주도되면서, 국내 다문화연구의 스펙트럼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과 한국에서의 적응과 동화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여성’적 역할과 지위 부여는 이들을 국내체류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와는 다르게 범주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많은 다문화연구가 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담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문화대상의 범위를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사회적 지위와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른 서열화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다문화담론 내로 투영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재생산하면서, 이들을 정책적 시혜대상으로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면서, 사회기층에 위치시키고, 시혜적 정책과 계층적 시각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이민자에 대한 시혜적인 시각의 다문화 담론의 한계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체류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다문화논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정부는 경제성장과 함께 3D업종에 대한 기피를 외국인노동자를 통한 노동력공급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고, 농촌과 도시의 경제격차로 인한 농촌 인구감소와 결혼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 필요 등에 의해 한국으로 이주를 했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지원 및 보호라는 시혜적 시각에 기초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접근과 달리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장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규범적 시각을 취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다문화논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과잉정책화'와 시민단체의 '과잉규범화'가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만들기라는 국민국가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출산·양육의 관점에서 시혜적 지원정책을 다문화정책으로 추진하였고, 시민단체는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체류외국인의 보편적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다문화담론이 형성되면서 에스닉(Ethnic)의 성장을 막고, 이들을 기존의 주류문화 내로 포섭하고자 하는 정책이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조현상 2012, 237). 정부의 국민국가 프레임과 시민단체의 보편가치 프레임에 기초해 균형 잡힌 다문화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국민국가 프레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최종렬 2012, 101).

이와 더불어 유의미한 논박과정을 거치지 않고 규범성을 획득하고 있는 다문화논의로 인해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도입된 다문화정책이 대다수가 동의하는 이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이용승 2011, 73).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이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논의는 그 대상의 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라는 주제 하에 함께 논의되면서 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국가 관점의 정책들이 시민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 인권 관점의 규범화와 혼동되면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시행을 규범적으로 정당화시키는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사회는 일원적 가치구조를 넘어 다원적 가치구조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담론이 사회적 다문화현실과 격차를 벌이면서 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다문화담론에 따라 일부 언론들이 외국인들의 인권이나 지위문제보다는 다문화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조현상 2012, 222). 이들은 국가경쟁력으로 간주되었고⁶⁾, 이들에 대한 지원은 그들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혹은 그들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시혜로 이해되었다.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정책의 대상이 됨으로서 이들은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머물게 되고, 정부는 다문화담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권력문제'를 회피하였다. 이들의 수동성을

6)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국가경쟁력으로 간주하는 현상은 지금도 여전하다. 2-3개 언어를 구사하는 우리사회를 이끌 인재라는 주장은 이들을 국가에 필요한 유용한 자산으로 보는 도구적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중앙일보 2018/12/12; 한국일보 2018/06/26).

가정하고, 일방적인 시혜를 국가차원에서 베푸는 방식의 다문화정책은 이들의 수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정책적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한다(이용승 2011, 74).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 담론은 다문화사회의 또 다른 주체인 화교, 혼혈인,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성 등이 정부와 주류사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이민자에 대한 도구적·계층적 시각의 다문화 담론의 한계

독일에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이민자가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고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 인종 및 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상태로 규정한다. 우리 정부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사회부적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들을 통칭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이민자의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된 상태를 이민자의 사회통합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최혜지 2017, 219-220).

오늘날 사회는 다양하게 분열되고, 갈등은 점차 심해지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억만장자들의 부는 9천억 달러가 증가한 반면, 38억 명의 극빈층의 재산은 11%로 감소하였다. 빈곤한 38억 명의 극빈층의 자산을 억만장자 26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43명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에서 2016년 사이에 가장 빈곤한 50%가 세계 수입 증가분 1달러당 12센트만을 차지하였는데 반해 상위 1%는 1달러당 27센트를 차지하였다(OXFAM 2019, 11-12). 또한 경제협력기구(OECD 2015)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이는 1.55배 수준으로 조사대상 22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결혼이주여성은 연예결혼과 종교적 이유를 제외하고 결혼정보회사와 개인브로커를 통한 결혼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위해 이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베트남·중국의 경우 약 500만원에서 1,500만원,

7) OECD의 “2015년 고용전망”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외국인의 임금격차의 72%가 기술의 차이에서 나고, 기술의 차이가 없다면 임금격차는 1.36배 수준이며, 기술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을 한다면 그 격차는 1.21배로 낮아진다고 한다. 즉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내국인에 비해 임금이 약 17% 정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2019. 2)의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용직노동자의 임금은 359.2만원, 임시·일용직노동자의 임금은 142.9만원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이 상용직노동자 임금의 39.76%에 불과하고, 근로시간은 상용직 171.2시간, 임시·일용직 98.6시간으로 약 57.59%에 불과했다. 이를 같은 노동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임금은 69.04%에 불과해 결국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이 상용직노동자의 임금보다 30.96% 낮게 나타난다.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임금격차는 내외국인 노동자 임금격차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카자흐스탄의 경우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불되는 비용의 일부는 결혼지참금으로 신부의 가족들에게 지불되고, 이로 인해 금전과 신부가 교환되는 매매혼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은 그들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역량에 아니라 출신국가에 따라 사회적·인종적으로 계층화되고,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서열이 주어진다. 출신국가의 발전수준에 따라 존재하는 차별적 대우는 가난한 국가에 온 이들에 대해 시혜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로 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전영평 외 2006).

이처럼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발표한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인권침해와 차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 지위(직업, 소득)이라는 응답이 33.8%, 학력과 학벌이라는 응답이 16.2%로 낮은 소득과 학벌이 우리나라 차별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낮은 소득으로 노동자의 기저(基底)층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낮은 소득계층에 편입되어 별도의 직업을 가지지 못한 결혼이주여성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은 8.1%, 다문화가정자녀의 인권은 12.3%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인권상황에 대한 응답도 외국인 노동자는 2.1점, 결혼이주여성은 2.4점, 다문화가정자녀는 2.5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방적인 지원정책들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오히려 공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지원정책이든, 비록 그것이 적극적 평등실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조적·제도적 차별의 반대급부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김성운 2018, 115).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라 수동적 객체로서 지원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더구나 동화를 통한 통합을 위해 교육적 공간에 매몰된 연구들을 통해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처해있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열악함을 외면하게 하고, 각종 긍정적이고 따뜻한 윤리적 담론들 속에 묻어버린다(조상식 2009, 149).

또한 다문화정책의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배제하고, 결혼이주여성은 수용하는 선택

8)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6월 20일 개최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실태와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920명이 평균 16.37년을 한국에 거주하였지만, 응답자의 70.7%가 직업이 없었고, 60%는 개인소득이 없다고 답했다.

적 수용·배제는 정책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갈등 이외에 이주민들 사이의 새로운 갈등구조를 만들어 낸다. 또한 주체로서 사회체계 내에서 다른 주체들과 연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자원배분은 권력구조의 갈등을 통해 새로운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다문화정책의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고, 외국인노동자를 배제하는 새로운 국민만들기는 ‘배제를 통한 연대’를 형성한다. ‘배제를 통한 연대’는 연대의 약한 고리가 깨지면, 약한 고리들의 이중배제를 생성하게 된다(이용재 2012, 54). 따라서 지금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을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이민자와 내국인 사이에 고립시키는 새로운 배제를 초래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국민만들기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종족적 민족주의의 단일가치 체계 내로 이들을 편입시키는 계층적 시각의 한계를 가진다.

V. 향후 과제

다문화주의의 등장요인으로 주로 이주민의 유입을 들곤 하지만, 다른 인종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온 역사는 오늘날 다문화주의가 등장한 시기보다 오래되었다. 개체는 다른 개체들과의 차이의 간격을 통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의 간격으로서 다양성이 자연적이다. 오히려 사회적 경계를 통해 개체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 같은 범주로 묶어내는 유사성을 통해 경계와 경계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방식이 인위적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다름이 개체의 자연적 존재방식이라면, 같음은 사회적 존재방식일 수 있다.

다름을 같음으로 묶어내는 사회적 경계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문화적 산물이다. 오늘날 다문화주의는 경계 사이의 차이를 경계 내부로 끌어들이 내적 차이와 외적 차이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따라서 이주민의 유입이라는 외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차이를 바라보는 문화적 인식의 전환이라는 내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인종·언어·문화적 유사성을 같음으로 바라보는 견고한 단일성을 정치적 경계로서 국경과 일치시키면서 등장한 민족국가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다원화로 인한 내적균열에 직면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채택된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전통적 이민국가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처럼 정책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에 대한 논의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논의가 다문화담론을 견인하면서 대상 또한 정주(定住)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고, 새로운 국민인 이들을 위한 시혜적 지원정책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논의 대상은 시민사회의 규범적 논의와 정부의 정책적 논의대상으로 분리되면서,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책개념이 부재하고, 소관부처 또한 불분명하여 체계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설동훈 2017, 103).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문화담론의 영향을 받은 다문화연구들은 동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지향하여 교육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다문화논의는 새로운 갈등구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시혜적 관용의 시각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특권구조를 비판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들이 직면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세계에서 문화 간 소통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연구는 “문화 자체보다는 그들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론에 가장 잘 부합하는 문화개념을 규정”(Scott 2003, 96)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 보다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소통을 위한 다양성은 경계를 통한 개념적 범주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개체들의 상호소통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권력관계는 물질 기반과 관념적 기반의 상호 간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사회의 주류와 비주류, 다수와 소수의 경계는 계속 변해왔다. 따라서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다문화 연구 또한 경험적 검증을 통해 우리 상황에 맞는 모델과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통적 이민국가인 호주·캐나다를 비롯한 서구 유럽의 경험에 기초한 다문화 모델과 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다문화논의에서 제시되는 윤리적 태도와 덕목들이 서구 '근대성'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인식의 밑바탕에는 서구 유럽 문명만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요구하는 관습·규범·관행을 표준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근대성'이라는 가정이 놓여 있다. 근대성은 윤리적 선이자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것이다(조상식 2009, 150). 따라서 우리 현실에 맞는 다문화연구를 위해서는 서구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수용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갈등요소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갈등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종·언어·문화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은 그것들의 차이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별이 그것들의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 2019.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2019. 2.).
- 구정우 외. 2016.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6. 12).
- 김비환. 2007.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통합 :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10(2), 317-348.
- 김상섭. 2017. 문화 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전개 양상, 문화교류연구 6(1), 21-49.
- 김성수. 2018. 문화의 다양성과 현상과 연결되는 다섯 용어에 대한 검토: 혼종문화, 다문화, 상호문화, 크로스문화, 트랜스문화. 글로벌창의문화연구 7(1), 5-21.
- 김성윤. 2018.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 진화된 혐오담론으로서 젠더 이퀄리즘과 반다문화. 문화과학 93, 93-119.
- 김지윤 외. 2014. 달한 대한민국 :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2014. 2. 4.).
- 박정수. 2013. 민족주의와 다문화: 중국식 다문화주의 '다원일체문화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47(3), 5-23.
- 설 한. 2014.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퇴조 원인 분석: 문화개념과 규범성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7(1), 81-106.
- 설동훈. 2017. 한국의 이민자 수용과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문화와 정치 4(3), 85-122.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이내영 · 윤인진. 2016.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 (재)동아시아연구원.
- 이산호 · 김휘택. 2017. 국가 정체성과 다문화주의, 그 위험한 관계-프랑스의 경우. 다문화 콘텐츠연구 24, 39-62.
- 이신동 · 박용한.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발달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1-19.
- 이용승. 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 177-205.
- _____. 2011.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패러다임 연구 및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학술대회(2011.05), 65-80.
- 이용재. 2012. 다문화사회 개념에 대한 고찰-갈등의 양상과 해소를 중심으로. 다문화외인간 1(1), 35-61.
- 이종석. 1984. 미국 다문화교육의 이론적 고찰, 미국학논문집 5, 35-60.
- 장명선 · 이옥경. 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

족재단연구사업보고서.

- 전영평 · 한승주. 2006. 소수자로서 외국인노동자: 정책갈등 분석. 한국행정연구 15(2), 157-184.
- 조상식. 2009.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한계. 한국교육철학학회 44, 139-155.
- 조현상. 2012. '다문화 담론'의 한계상과 유효성에 관한 고찰 : 한국 다문화사회 수렴과정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63(63), 219-246.
- 최종렬. 2012. 탈영토화와 다문화주의 : 연구쟁점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20, 97-159.
- 최혜지. 2017.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간 비교- 이민국가 레짐을 기초로. 한국사회정책 24(2), 217-244.
- Ang, Ien. 2010. Between Nationalism and Transnationalism: Multiculturalism in a Globalising World Institute for Culture and Society Occasional Paper 1(1).
- Ernest Gellner.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민족과 민족주의 :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 최한우 옮김. 2009.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출판부.
- Forrest, James and Kevin Dune. 2006. 'Core' culture hegemony and multiculturalism: Perceptions of the privileged position of Australians with British backgrounds, Ethnicities 6(2), 203-230.
- Martiniello, Marco. 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윤진 옮김. 2002. 한울.
- Negri, Antonio & Hardt, Michael. 2000. Empire. 제국. 윤수중 옮김. 2002. 이학사.
- OECD. 2015. Employment Outlook 2015.(2015. 6.).
- OXFAM. 다보스 불평등보고서 2019 : 공익이냐 개인의 부냐.(2019. 1.).
- Scott, D. 2003. Culture in Political Theory. Political Theory 31(1), 92-115.
- Stephen Castles, Mark J. Miller. 199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옮김. 2013. 일조각.
- United Nations. 2017.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2017. 12.).
- Will Kymlica. 2005. "Liberal Multiculturalism", Will Kymlica-Baogang He ed., Multiculturalism in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2-55.
- 米山リサ, 「多文化主義論」, 綾部恒雄 編, 『文化人類學 20の理論』, 弘文堂, 2006.

● 투고일: 2019.07.06. ● 심사일: 2019.07.26. ● 게재확정일: 2019.08.06.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 of Multicultural Studies: Focused on the Limitations and Overcoming of Government-led Multicultural Discourse

Lee Youngjea (GyeongSangBuk-Do Council)

As Immigrant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increased, Korea needed the new policies for immigration. The multicultural policy for assimilation has been promoted,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enacted in 2008. The target of the government-led 'multicultural policy' is limited to married immigrant women. In spite of the broad spectrum of multiculturalism, domestic research is focused on 'nation building' through 'assimilation'. There are 1,096 studies(31.32%) on education and 414 studies(11.38%) on multicultural families. But there are only 54 studies(1.54%) on conflicts in the multicultural researches. The government's policy interests has changed, so the number of researches is gradually declining. Many researches accepted governmental viewpoints on immigrants, the instrumental and hierarchical perspectives that view them a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rder not to follow the anti-culture phenomenon faced, it is necessary to seek the internal changes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unequal power relations in the society.

<Key word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tudies, Assimilation, Integration, Conflict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의 동향과 과제*

김 용 찬 (대구가톨릭대학교)
(yongchankim@cu.ac.kr)



국문요약

연구는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에 관한 양적 분석보다는 학술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담론과 학문적 제언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담론과 학문적 제언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개념, 이론, 학문적 접근, 분야, 분석, 주장 등을 제시했던 학술논문을 선별해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논문은 국제이주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이주연구의 동향분석은 이론, 정책, 연계연구, 경향 등의 영역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이주연구의 향후 과제를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이주이론연구에서 제시된 통합적,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색을 지속하면서도, 기존 이론에 기초해 한국의 국제이주를 분석하고 비교방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이주정책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연구의 양적 성장과 기존 이론을 통한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이주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주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분화와 경쟁이 촉발되면,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이주의 연계 연구는 '이주의 여성화'에 따른 젠더, 송출국과 수용국의 연계, 개발과 발전, '이주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24268).

산업' 등으로 연구의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 국제이주경향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축적, 비교분석, 유형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주제어 : 국제이주, 국제이주연구, 국제이주이론, 국제이주정책, 국제이주경향

I. 서론

한국의 체류외국인은 2019년 5월 말 기준 2,393,189명으로 집계되었다.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자는 1,258,584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는 450,180명, 단기체류자는 684,425명으로 나타났다. 체류외국인 수는 2009년 약 117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10년 사이 두 배가 증가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2, 13). 서구 학계가 이민국가로 간주하는 기준점은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의 수가 5%이상인 경우이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으로의 대규모 국제이주는 1980년대 후반 재외동포와 1990년대 초 외국인노동자의 이주로 시작되었다. 이후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의 국제이주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한국에서 국제이주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국제이주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분석은 윤인진 외(2009)의 논문 “국제이주, 소수자, 재외한인, 다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와 이혜경(2014)의 논문 “국제이주·다문화연구의 동향과 전망”에서 다루어졌다. 윤인진 외(2009)의 연구는 석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제이주 관련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서는 2003년 15편이었던 국제이주관련 석박사학위논문은 2009년 124편까지 증가했으며,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국제이주에 관한 학위논문이 각각 33.6%와 11.4%를 차지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혜경(2014)의 연구에서는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국제이주연구에 관해 분석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 국제이주에 관한 연구가 학술지와 학위논문에서 공히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국제이주 관련 논문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국제이주를 주제로 설정해 학술지 게재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279개의 논문이 집계되었다. 논문의 학문분야별 수는 사회과학분야 논문 176개, 어문학분야 논문 52개, 인문과학분야 논문 19개로 나타났다. 2005년 3개에 불과했던 논문 수는 2006년 18개로 늘어났고, 2010년 36개, 2011년 33개, 2012년 17개, 2013년 19개, 2014년 15개, 2015년 9개, 2016년 13개, 2017년 11개, 2018년 10개, 2019년 5개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왔다.

다문화를 주제로 한 논문이 5,619개인데 반해, 국제이주를 주제로 한 논문은 현저히 적은 수가 게재되었다.¹⁾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에 관한 양적 분석보다는 학술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담론과 학문적 제언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담론과 학문적 제언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개념, 이론, 학문적 접근, 분야, 분석, 주장 등을 선구적으로 제시했던 학술논문을 선별해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저서나 학위논문이 아닌 학술지 게재논문과 학술회의 발표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저서나 학위논문에 비해 학술논문이 가지는 학문적 주장과 제언의 시론적 특성과 독창성에 주목하기 위해서였다. 분석대상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 시기는 2000년 이후부터 2019년 2월까지로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윤인진 외(2009)와 이해경(2014) 연구의 후속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분석대상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연구담론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논문에서는 전통이민국가와 선발이민국가 학계의 국제이주연구에서 제시된 연구제언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한국의 국제이주연구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주와 이민에 관한 엄격한 개념정의보다는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해 분석하고 있다. 실제 기존 연구에서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이주와 이민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이 논문은 국제이주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이주연구의 동향분석은 이론, 정책, 연계연구, 경향 등의 영역을 검토하며, 이를 기초로 국제이주연구의 향후 과제를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II.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의 동향

1. 한국의 국제이주이론연구

1) 비판적 분석과 대안적 접근

한국의 국제이주이론에 관한 연구 중에는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1) 출처: <http://www.kiss.kstudy.com> (검색일: 2019. 06. 25.). 여타 학술DB들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 논문 제목과 본문에 국제 또는 이주 등의 주제가 등장하는 경우 모두를 검색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떨어지는 논문도 상당수 표시된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학술DB는 논문 제목에 국제이주가 주제로 표출된 경우에 한정되어 제시된 형태로 주제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제이주 주제어 검색은 다문화에 비해 국제이주 연구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다른 학술DB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안적 접근 또는 이론을 모색했던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왔다. 국제이주이론에 관한 초기 연구인 석현호(2000)의 논문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에서는 기존 국제이주이론을 발생론, 영속화론, 적응론 등으로 구분하고, 선행이론들이 국제이주에 관한 ‘총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행위체계론적 접근’을 제시했다. 행위자의 이주상황에 주목하는 ‘행위체계론적 접근’을 통해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 구조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석을 위한 이주행위의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으로 설정했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이주분석을 위해 김용찬(2006)은 논문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 국제이주이론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을 주장했다. ‘이주체계접근법’은 국제이주의 포괄적 분석을 위한 접근법 또는 분석틀로 제시되었다. 또한 국제이주의 행위자분석에서 국가와 이주민에 관한 고찰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특히 정치학의 국제이주연구에서는 이들 행위자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제이주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이론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되었다. 전형권(2007)은 “국제이주이론의 관점에서 본 노동디아스포라의 성격”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기존 국제이주이론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주의 발생, 영속, 적응의 전 과정을 구조적 요소와 행위적 원인으로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다차원적 이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논문에서는 노동이주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즉 노동이주민은 정체성의 재구성을 통해 모국에서의 정체성과 차별화되는 ‘디아스포라’의 특성을 가진 존재로 변화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국제이주도 ‘디아스포라’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이주분석의 대안적 연구방법론으로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을 최병두(2017)는 “관계이론에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으로: 초국적 이주 분석을 위한 대안적 연구방법론”이라는 논문을 통해 제시했다. 논문에서는 기존 국제이주이론을 행위이론, 구조이론, 관계이론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이주체계이론 등을 관계이론에 포함시켰다. 관계이론은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행위 대 구조와 미시 대 거시라는 이분법의 극복을 시도했지만, 개념사용의 혼란과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관계이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연구방법으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을 제기했다. 저자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서는 행위자-네트워크, 번역과 동맹, 위상학적 공간 등의 개념을 활용해 국제이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관계이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학문분야별 접근

정치학분야에서 김용찬(2006)은 정치학의 국제이주연구에서는 국가와 이주민을 주요 행위자로 간주해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 간 관계와 수용국과 송출국의 국내 상황을 함께 고찰할 수 있는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을 주장했다. 한편 이병하(2017)는 논문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 접근과 방법론적 쟁점”을 통해 국제이주에 관한 정치학적 분석을 위한 개념으로 이익, 권리, 제도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모델로 정치경제학, 국제규범, 신제도주의 등을 언급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방법론적 민족주의’에서 탈피해 도시 간 비교연구, ‘지표 기반 접근법’과 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민자에 대한 심층조사를 포함한 ‘혼합 연구 방법’ 등을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국제정치학의 주요 주제와 국제이주와의 연계연구를 시도한 논문도 제시되었다. 이용승(2014)은 논문 “국제이주와 인간안보”를 통해 국제이주를 인간안보의 시각에서 고찰함으로써 국제정치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에서는 ‘이주의 안보화’ 경향을 출입국, 체류, 사회통합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국제이주와 안보문제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후속연구를 위해 저자는 국가안보의 관점보다는 국제이주를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이주동기와 수용국에서의 이주민의 인간안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회학분야에서는 기존 다문화가정에 집중된 연구를 탈피해 연구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연구가 제시되었다. 이혜경(2014)은 논문 “국제이주 · 다문화연구의 동향과 전망”을 통해 사회학의 국제이주와 다문화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논문에서는 다양한 종족소수자의 국제이주, 노동이주와 결혼이주의 연계, 국제이주와 다문화의 연계, 국제이주와 민족연구의 연계 등을 새로운 연구주제로 제기했다. 또한 사회학영역에서는 한국의 국제이주와 다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한국적 브랜드’의 모색과 초국가주의 연구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문분야별로 국제이주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이 제안되었던 한편,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시론적 연구도 제시되었다. 최병두(2011)는 논문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 · 통합적 연구를 위하여”에서 학제적 연구를 위해 학제간 비교분석, 공동연구, 방법론과 개념의 통합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미시와 거시적 차원을 결합한 통합적 이론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학제적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비교분석이 진행되어야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특정 주제를 선정해 학문분야별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시행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문분야의 개념과 방법론의 체계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제이주이론에서 제시된 개념을 활용해 사례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이소영(2011)의 논문 “광주·전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 분석 연구: 국제이주와 적응의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 개념을 활용해 광주와 전남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국제이주와 적응을 분석했다. 이주와 적응 과정에서 형성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했다. 논문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은 가족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 민족문화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이주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3) 국제이주이론연구의 특징

국제이주이론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이민국가와 선발이민국가의 학계에서 제시된 이론에 대한 설명과 평가가 제시되었다. 기존 이론에 대한 유형화와 설명은 대체로 매시 외(Massey 외 1998)와 카슬과 밀러(Castle & Miller 2018)의 이론 구분을 활용했다. 둘째, 기존 국제이주이론이 국제이주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이주의 형성, 유지, 정착 등에 관한 포괄적 연구와 구조와 행위자의 역할에 관한 통합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대안적 접근으로 ‘행위체계접근’, ‘이주체계접근법’, ‘행위자-네트워크이론’ 등이 제안되었다. 포괄적이고 통합적 연구의 필요성 제기는 서구 학계에서도 있어왔지만 대안 제시가 미약했던 것을 보면, 한국 학계의 다양한 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국제이주이론에 관한 학문분과별 연구의 분화와 영역의 확대가 진행되었다. 초기 사회학에서 활성화된 국제이주이론연구는 정치학과 지리학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학문분과별 접근법과 방법론, 학문영역의 주제와의 연계 등에 관한 고민들이 논문으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정치학은 국제이주에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으며, 사회학은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해 이주민의 선택과 이에 영향을 미친 상황, 네트워크의 구축과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했다. 또한 학문분과별로 분절화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제간 연구에 관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넷째, 기존 이론의 개념과 분석틀을 활용해 한국의 국제이주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2. 한국의 국제이주정책연구

1) 사례고찰과 비교분석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연구는 한국과 외국의 이주정책에 관한 사례검토와 비교분석

등이 주를 이루어왔다. 김윤식(2008)의 논문 “국제 이주노동정책과 이민노동자에 대한 연구: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을 사례로 비교분석했다. 사례국가 이민정책의 비교기준으로 강제퇴거, 불법고용주 처벌, 자발적 귀환지원, 합법화 조치 등을 제시했다.

한국의 국제이주정책의 특징을 규정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병렬·김희자(2011)의 논문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에서는 ‘차별배제’와 ‘동화’의 유형 구분을 활용해,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외국국적 동포노동자, 비동포 이주노동자, 화교, 난민 등에 대한 정책을 분석했다. 저자들은 한국의 이주정책을 ‘차별배제모형’으로 간주하면서, 세부적으로는 민족 내부와 민족과 비민족 간의 차별과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층화적 차별배제 모형’으로 규정지었다.

한국의 국제이주정책을 노동이주에 초점을 두어 현안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이규용(2014)의 논문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에서는 이주민의 유입정책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인구변동과 이주정책, 노동시장과 외국인력정책 등으로 쟁점영역을 구분했다. 또한 개별 쟁점영역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해결방안으로 이민정책의 선별기능 강화, 이주 수요의 분석과 해외사례의 평가, 국내 노동시장의 유희인력 분석 등을 제기했다.

국제이주정책을 영주권의 측면에서 조망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김희강·류지혜(2015)의 논문 “다문화시대의 이민정책: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는 영주권제도의 규범적 논의를 토대로 영주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버마스의 정치공동체 개념을 영주권제도 개선의 규범적 근거로 삼아, 취득자격의 보편성, 사회적 권리 보장, 귀화제도와의 연계 등을 개편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논의를 적용하면 한국의 정치, 문화, 헌법 등의 원리에 대한 공유가 사회통합을 위한 구속력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이주민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이주정책의 사례와 비교분석에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에서 탈피해 국제이주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설동훈·전진영(2016)의 논문 “국회의 이민정책 결정과 정당정치: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는 18대 국회에서 다루어진 이민정책관련 법안을 사례로, 국회의 이민정책 결정과정과 정당의 정책차별성 등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서구에서는 이민정책을 둘러싼 정당 간 차별성이 표출된 이후, 최근 이민정책에 관한 입장에 있어 수렴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정을 제외하고 한국의 18대 국회의 경우 정당 간 이민정책에 관한 입장이 차별화과정 없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원인을 저자들은 이주민을 위한 기초적 제도개선에 따른 정책차이의 여지 부족,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정당이념의 중도로의 수렴 등으로 제시했다. 이주민의 규모증가에 따른 이슈 발생

과 극우정치세력의 성장 가능성 등이 정당 간 정책경쟁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기존 주장을 한국사례에 적용해 분석하고자 시도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사득환(2018)의 논문 “이민정책의 패러독스: 한국적 적실성과 가능성”은 ‘원하지 않는 이민을 수용’하는 ‘정책 패러독스’(policy paradox) 또는 ‘간격 가정’(gap hypothesis)에 기초해 한국의 이민정책을 사례로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합법이민과 불법이민 사이의 패러독스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이민정책의 명확화, ‘이민청’의 설립, ‘이민법’ 제정과 통합교육 등을 제시했다.

위의 연구들이 국가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제이주정책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반해 지방정부의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제기되었다. 김혜순(2016)의 논문 “이민현상에서 정책과 지역: 지자체 이민정책의 분석”은 국제이주연구에서 정책과 지역연구가 미비한 상황을 지적하고, 정책과 지역을 연계한 지방정부의 이민정책 분석을 시도했다. 이주현상에 선행하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주현상의 공간인 지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문에서는 경북과 전남을 비교사례로,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2) 국제이주정책연구의 특징

국제이주정책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분석과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을 진행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한국의 노동이주를 포함한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해외사례와의 비교연구는 주로 한국의 국제이주정책과 전통이민국가 또는 선발이민국가의 정책을 비교검토한 후 한국사회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둘째, 기존 개념 또는 이론의 적용을 통해 한국의 국제이주정책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김희강·류지혜(2015)와 사득환(2018)의 연구는 각각 하버마스의 개념과 ‘간격 가정’개념을 활용해 한국의 국제이주정책을 분석했다. 셋째, 국제이주정책의 결정과정과 지역수준의 이주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가 논문으로 제시되었다. 이주정책의 결정과정은 블랙박스처럼 간주되어 서구와 한국 학계에서 연구가 미진한 영역으로, 시론적 연구의 제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서구에 비해 중앙집중화된 한국에서 지방정부의 이민정책에 관한 분석시도는 새로운 연구영역의 개발과 지역 간 또는 도시 간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3. 한국의 국제이주와 개발, 발전, 젠더, 국제협력 연구

1) 국제이주와 개발, 발전, 젠더, 국제협력 연계연구

한국 학계에서 국제이주와 개발, 발전, 젠더, 국제협력 등의 문제를 연계하여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국제이주와 국제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을 연계한 연구는 정책, 거버넌스, 행위자, 원조 등에 초점을 두었다. 조영희(2015)의 논문 “국제이주와 개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과 이민정책의 변화”에서는 국제이주와 개발에 관한 논의가 ‘촉진적 다자주의’(facilitative multilateralism)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과 개별국가의 이민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Post-2015 개발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주를 통한 개발’ 관점과 ‘개발계획에서의 이주의 주류화’ 등의 제시를 통해 이주가 개발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제시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개발 친화적’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발 친화적’ 정책으로 송금지원과 노동력순환 장려 등이 포함되었다.

국제이주의 행위자인 이주민이 개발원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제시되었다. 김은미·정현주(2016)의 논문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가 이민송출국으로의 원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에서는 한국의 원조배분에는 유입된 이주민의 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주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개발원조와 관련해 공여국 내 특정 송출국 출신 이주민의 수가 늘어날수록, 해당국가에 대한 원조가 증가한다는 가설을 한국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가설은 한국의 경우에도 적실성을 가지며, 결혼이주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중 결혼이주자의 수가 원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국제이주와 발전 관련해서는 행위자인 이주민이 송출국과 수용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신지원(2015)의 논문 “국제이주와 발전의 연계 담론에서 ‘diaspora’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는 ‘diaspora에 의한 발전’을 인도, 아프리카, 멕시코 출신 diaspora의 초국가 네트워크와 활동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diaspora에 의한 발전’을 두뇌순환, 공동발전, 초국적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례로 인도인 diaspora의 IT 지식교류 네트워크, 두뇌순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이주’ 프로그램, 멕시코 diaspora의 재외향우회 등을 검토했다. ‘diaspora에 의한 발전’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diaspora의 동기와 송출국과 수용국의 역할과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인도 출신 IT기술자를 사례로 이주민에 의한 경제발전 연구가 발표되었다. 김지송(2017)

의 논문 “고숙련 노동자의 국제이주와 경제발전의 이론적 접근: 실리콘밸리 인도 엔지니어들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에 취업했거나 취업하고 있는 인도 IT기술자의 국제이주와 네트워크 구축을 분석했다. 인도 이주민은 미국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도로 귀국하여 지식과 기술을 확산시키는 행위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귀국한 인도 IT기술자는 투자유치, 지사 설립, 기술이전 등으로 모국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이주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이주노동자를 사례로 분석한 연구가 제기되었다. 박범중(2017)의 논문 “국제이주와 지역발전에 대한 함의: 한국의 국제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면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주노동자는 노동인력확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3D업종과 1차 산업 종사, 지역경제 활성화, 다문화인식 제고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저숙련노동력 임금하락, 불법체류자 문제, 사회적 혼란 야기 가능성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이주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도 최근에 제시되었다. 황정미(2018)의 논문 “개발국가의 해외이주 정책과 젠더”에서는 1962년부터 1987년까지 한국인의 해외이주를 젠더의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민족주의와 결합된 개발 프레임과 젠더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석시기를 ‘개발국가’의 시대로 규정하고, ‘개발국가’의 해외이주정책에 내재되어있는 ‘젠더 위계’에 관해 고찰했다. 저자는 ‘개발국가’ 초기 한국여성의 해외취업이 주는 ‘생존의 여성화’(feminization of survival)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국가 민족주의와 결합된 개발 프레임에서 탈피해 한국의 국제이주를 분석할 것을 주장했다.

국제이주의 원인, 경험, 정체성 등을 젠더의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문경희(2018)의 논문 “젠더와 국제이주: 호주 한인 ‘1세대’ 여성의 이민 과정과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에서는 젠더의 시각에서 호주에 정착한 한인 여성의 이주 원인, 과정과 경험, 젠더 정체성 등을 분석했다. 호주의 이민정책과 여성 노동정책으로 인해 이주할 수 있었던 한인 ‘1세대’ 여성들은 가부장적 가족과 젠더 관계가 유지되고 강화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한인 여성의 경제활동이 임파워먼트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이주에 관한 국가 간 협력과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미우라 히로키(2011)의 논문 “이주노동자문제와 동아시아 다층 거버넌스: 연성법 관점에 기반한 분석과 함의”에서는 동아시아 이주노동자사례를 연성법(soft law)과 다층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저자는 연성법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행위규칙’이라고 정의했다. 동아시아 이주노동자문제의 경향을 ‘지역화’, ‘지방화’, ‘국제법 비준과 지역기구 구축에 대한 주요 수용국의 소극성’으로 제시하면서, 지역적 다층 거버넌스로서 동아시아 이주노동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연성법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하(2019)의 논문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에서는 글로벌 수준과 지역 단위에서의 국제이주 관련 국제협력을 진단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 국제이주 거버넌스의 형성 방안을 제안했다. 논문에서는 국제이주분야에서 국제협력이 어려운 원인으로 주권영역, 동기부족, 이익조정 어려움, 국가 간 힘의 불균형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저지는 지역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로 확대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다층 거버넌스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거버넌스의 국제사례 검토를 기초로, 동아시아지역 이주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정합성에 기반을 둔 다층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동아시아 이주 네트워크’의 구축, 의제와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 국제이주와 개발, 발전, 젠더, 국제협력 연계연구의 특징

국제이주와 개발, 발전, 젠더, 국제협력 등을 연계한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이주와 이들 분야와 연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계연구는 국제이주연구의 발전과 한국사회의 국제이주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이 발전하면서 원조의 공여국이면서 국제이주의 수용국인 한국으로서는 국제개발을 국제이주와의 연관 속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국제이주와 개발을 연계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셋째, 국제이주가 이주 수용국과 송출국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도 제기되었다. 국제이주로 인한 송출국의 발전을 국제개발의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와 달리, 신지원(2015)의 연구에서는 행위자인 이주민의 역할에 주목했다. 한편 국제이주가 수용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박범중(2017)의 연구는 국가수준이 아닌 지역차원에 미치는 국제이주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했던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경향의 강화로 국제이주에서 여성의 역할과 변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를 반영해 국제이주를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제시되었다. 기존 연구가 여성이주자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에만 집중되었던 반면, 국제이주에 관한 젠더관점의 제시는 이주, 정착, 통합의 과정에서 여성의 성역할과 이의 변화에 주목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섯째, 국제이주에 관한 협력과 거버넌스의 구축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국제이주를 둘러싼 국제협력이 글로벌 수준과 유럽지역에서 발전해오면서, 지역 내 협력이 부재하다시피 한 동아시아지역에서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제시되기 시작했다. 연성법의 관점, 다층 거버넌스, 네트워크, 점진적 접근방법 등 동아시아 이주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시론적 제언이 제출되었다.

4. 한국의 국제이주경향연구

1) 비교분석과 연계연구

국제이주의 경향과 유형 등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왔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 국제이주에 관한 분석과 국제이주와 국내이주의 연계분석을 시도한 연구를 고찰하고 있다. 동아시아 노동이주의 현황, 유형, 특성 등에 관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최영진(2010)의 논문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이주의 동학: 경향, 유형 및 개발과의 연계”에서는 동아시아 국제이주를 거시 구조적 조건, 미시적 요인, 사회적 연결망, 송금과 발전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동아시아 노동이주의 경향을 합법, 불법, 강제와 비정규 등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노동이주의 원인을 동아시아국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했다. 또한 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의 송금이 개발에 미친 영향을 사례국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찰했다. 송금의 대부분은 생산적 투자가 아닌 소비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송출국과 출신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 노동이주의 과정과 특성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최병두(2012)의 논문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국제이주를 관계요인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검토한 후, 동아시아 노동이주의 과정과 특징을 분석했다. 동아시아의 국제이주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중동국가로의 이주와 1990년대 이후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의 이주로 구분해 분석했다. 지역 내 노동이주의 특성을 이주의 증가, 이주형태와 경로의 다양화와 복잡화, 저숙련노동력 중심 이주, ‘이주의 여성화’와 임시이주, 미등록이주의 확대 등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연계를 분석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주의 연계성을 규명하려는 논문이 제시되었다. 김정학(2010)의 논문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접목: 인도 뽀잡의 사회·경제적 양상에 관한 시론적 연구”에서는 인도의 뽀잡 주의 도압(Doab)지방에서 외국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자,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노동자가 해당지역으로 이주하는 사회적, 경제적 양상을 고찰했다. 뽀잡 출신 이주노동자의 송금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확산으로 노동력과 농업인력 수요가 발생하자, 타 지역 노동자와 계절노동자 자격으로 네팔 출신 노동력이 이주해온 상황을 심층면접 등을 통해 분석했다.

2) 국제이주경향연구의 특징

한국의 해외이주와 국내로의 이주를 설명하는 연구와 특정국가의 국제이주를 고찰하는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왔다. 기존 연구가 개별국가 중심의 분석에 국한된 것과 달리 위에서 제시된 연구는 지역차원의 국제이주를 분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동아시아지역을 분석대상으로 국제이주의 경향을 진단하고 유형화를 제시했으며, 국제이주의 원인을 이주이론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개별 사례분석에 국한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탈피해, 지역차원의 국제이주에 주목하면서 수용국과 송출국의 거시적 요인과 이주민의 행위와 네트워크 등의 미시적 요인 등을 원인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한편 국제이주와 국내이주의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가 미비했던 상황에서, 김경학(2010)의 연구는 인도사례에 관한 시론적 분석을 통해 국내이주와 국제이주 연구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함의를 제공해주었다.

Ⅲ.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의 과제

1. 국제이주이론연구의 과제

국제이주이론연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한 이론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국제이주이론의 개념과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 사례분석이 늘어나야 한다. 한국 국제이주의 양적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서구의 경험에 기초한 국제이주이론의 적용 및 검증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개인, 가계, 공동체의 선택과 결정, 분절화된 노동시장, 세계자본주의체제, 이주체제,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이론의 접근법을 통해 한국의 국제이주를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증가했다. 기존 이론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지적하는 매시 외(Massey 외 1998)와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2018) 같은 서구 학계의 연구가 유입되면서, 한국의 국제이주이론연구는 기존 이론의 한국사례 분석을 위한 활용 가능성과 적실성의 정도를 검토하기 전에 선행이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 제시에 집중할 측면이 있다. 기존 이론을 활용한 한국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이론의 수정과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위한 제안이 제시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이주사례를 이론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서구 학계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사례를 발굴해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는 이론화 과정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재외동포의 이주, 노동시장 편입, 정착, 재이주,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동반 재이주, 한류에 영향을 받은 국제이주 등은 기존 이론들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들 사례의 분석을 통해 개념과 분석틀을 새롭게 정립하는 이론화가 진행될 수 있고, 국제이주이론에 관한 담론을 서구 학계에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단일사례 분석보다는 한국과 해외사례 또는 한국 사례를 비교분

석하여 고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비교분석은 이론의 적실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방법인 동시에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도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포르테스와 드윈(Portes and Dewind 2010)은 편저에서 비교연구와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미와 유럽 사례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유사성과 차이점을 평가하는 것이 편저의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 가령 한국의 경우 베트남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국제이주를 비교분석해 유사와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추가적인 사례분석을 더해 유형화하거나 개념화할 수 있다면 이론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이주이론의 새로운 영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이해경(2014)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초국가주의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초국가주의 개념의 모호성에 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주민에 의해 구축되고 있는 초국가적 활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이주민의 초국가적 활동은 미래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된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다. 한국의 경우 재외동포연구에서 초국가주의에 주목하는 연구가 제시되었다. 재외동포 이외에 이주민공동체의 초국가주의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버토벵(Vertovec 2010)의 연구에서처럼 초국가주의의 영향에 관한 연구도 시도되어야 한다. 초국가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변환(transformation)에 주목한 그의 연구는 한국의 초국가주의 연구에도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 재외동포 초국가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종교적 영향에 관한 연구로 시작해, 다른 이주민공동체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제간 연구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제간 연구를 위해서는 최병두(2011)가 언급한 것처럼 사례를 선정해 학문분야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의 국제이주를 이주동기, 노동력정책,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해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공동 연구하는 방식이다. 공동연구는 논문보다는 저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학제간 연구과정을 거쳐 개념과 분석틀, 방법론 등에서 통합 또는 학제간에 공유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카슬과 밀러(Castle and Miller 2018)가 언급한 것처럼 국제이주의 거시, 중위, 미시구조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이주체계와 네트워크 분석은 학제간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국제이주연구에 관심이 부족했던 경제학과 같은 학문분야의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국제이주정책연구의 과제

기존 연구의 분석을 기초로 한 국제이주정책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이주정

책에 관한 연구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김혜순(2016)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에서 정책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재외동포 등 이주민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미비한 편이다. 후발이민국가인 한국에서 이주정책의 국제이주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기여,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연구가 증가해야 한다.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연구도 단일사례 분석보다는 다른 사례와의 비교분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지평의 확장은 이병하(2017)가 방법론으로 제시한 도시 간 비교분석을 위한 유용한 기초가 될 것이다.

둘째, 국제이주정책과 관련된 이론을 활용해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이주정책에 대한 대표적 이론적 접근은 홀리필드 외(Hollifield 외 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간격’(gap)과 ‘수렴’(convergence)가정이다. 저서에서는 ‘이주통제의 딜레마’(dilemmas of immigration control)를 지적하면서 국제이주정책의 목표와 결과 사이의 ‘간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노동력을 총원하는 정책에서는 ‘수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국가별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있다. 사득환(2018)의 연구는 ‘간격 가정’을 한국의 국제이주를 분석하는데 활용한 시도로 의미를 가진다. 국제이주정책의 ‘간격’과 ‘수렴’가정을 통해 한국 사례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국제이주정책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로 심화되어야 한다. 이주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정당 간의 차이와 수렴에 주목한 설동훈·전진영(2016)의 연구는 시론적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향후 정당 간 정책의 분화가 진행된다면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이주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 분석을 위해 프리만(Freeman 1995)이 제시한 국제이주를 둘러싼 이익정치(interest politics)와 바트램(Batram 2005)이 언급한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등에 관한 연구도 한국사례에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누가 어떠한 인식에 기초해 결정하며 누구의 이익이 반영되고 있는지 등 국제이주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 과정, 행위자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카슬(Castles 2010)이 지적한 것처럼 선거와 통상정책 등 그동안 간과되었던 국제이주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분석이 요구된다.

3. 국제이주와 연계연구의 과제

국제이주와 연계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언급된 주제 이외에 국제이주와 여타 연구주제와의 영향 또는 연계에 주목해야한다. 이혜경(2014)의 논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외국인노동자 이주와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등 다양한 국제이주의

상호연계성, 국제이주와 정착, 국제이주와 시민권, 국제이주와 이주민공동체, 국제이주와 '이주 산업'(migration industry), 국제이주와 인구부족 등의 연계와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주 산업'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으로 앞으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국제이주와 문화·종교의 연계에 관한 연구도 요구된다. 한류의 영향과 이슬람에 대한 국민적 인식, 문화적 차이 등도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이주와 인구문제와의 연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처럼 인구부족의 문제를 국제이주가 해결해주었던 사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의 국제이주와 인구부족에 관한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카슬과 밀러(Castle and Miller 2018)의 지적처럼 국제이주가 한국과 송출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야 한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국제이주가 송출국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주안점을 두는 최근 연구가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과 같은 수용국에 미친 국제이주의 영향을 국가와 지방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국제이주가 한국과 송출국의 새로운 연계를 창출하고 있는지도 분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이주와 개발 관련 연계연구가 시론적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젠더 관점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는 수준을 탈피해 가족, 지방, 국가, 국제 수준에서 국제이주와 관련된 젠더 문제의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이주의 여성화'가 야기하고 있는 송출국과 한국에서의 문제에 관해 면밀한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주여성의 한국으로의 국제이주의 동기와 과정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주여성의 정착, 노동시장 편입, 가사와 육아, 송출국에서의 사회적 지위 변화 등을 젠더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증가해야 한다.

4. 국제이주경향연구의 과제

국제이주경향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이주경향에 관한 비교분석과 유형화가 증가해야 한다. 최영진(2010)과 최병두(2012)의 연구에서처럼 국제이주의 경향과 특성을 고찰하고,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가 늘어나야 한다. 비교분석을 통한 특성의 도출과 유형화 과정은 국제이주의 새로운 개념과 이론 제시를 위한 후속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동아시아지역과 같이 특정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하거나, 다양한 한국으로의 국제이주경향을 비교분석하고 유형화하는 연구 또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으로의 국제이주경향에 관한 비교와 유형화 분석 이후, 다른 국가사례와 비교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론화에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재이주와 '이주의 여성화'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최근 이주민의 재이주

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이 모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재이주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를 두뇌순환 또는 이주변천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 내 이주민 중 재외동포,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등이 모국으로 재이주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주민의 재이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한국으로의 국제이주도 ‘이주의 여성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된 재외동포 등은 ‘이주의 여성화’ 흐름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의 추이와 원인을 규명하고, 위에서 언급한 젠더 관점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연계경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서구 학계에서도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연계경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인 것을 고려한다면 김경학(2010)의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이주와 국내이주를 송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와 수용국의 국제이주와 국내이주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것 모두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국제이주와 국내이주의 연계경향에 관한 연구는 한국으로의 국제이주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낮지만 송출국의 노동력구성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과 이주민의 증가가 국내인의 국내이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넷째, 국제이주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 요구된다. 국제이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후발이민국가인 한국으로의 국제이주를 사례로 역사적 분석이 진행되기에는 자료의 축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향후 연구를 위해 국제이주의 역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검토,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이주의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이주의 동기, 원인,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 등에 관한 자료의 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자료의 수집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등의 정성분석을 통한 자료의 축적과정을 거쳐야 한다.

IV. 결론

한국의 국제이주연구는 국제이주의 증가와 더불어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발전해왔다.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국제이주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탈피해 국제이주연구는 이론, 정책, 연계연구, 이주경향의 비교연구 등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다문화 관련 연구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자의 수도 제한적이다. 서구 학계에서 국제이주가 주요 학문영역으로 발전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국제이주연구 발전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국제이주역사가 짧은

후발이민국가라는 점과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된 연구의 제한성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으로의 국제이주가 급속히 증가해온 점과 노동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등에 의해 국제이주연구의 발전을 위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이주연구의 발전을 위해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연구과제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연구를 준비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논문은 2000년 이후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와 관련된 논문 중 새로운 학문적 함의를 제공해준 연구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분석하였고, 기존 연구의 검토결과와 서구 학계의 연구현황을 분석해 학문적 함의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이주연구는 국제이주의 시작, 과정, 정착과 함께 적응 또는 통합과 국제이주와 연계될 수 있는 주제들로부터 연구영역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연구영역의 확대를 추구하면서도 중심적 연구는 국제이주의 거시, 미시, 중위 원인, 국제이주의 지속, 중단, 재이주의 과정, 이주민의 정착과 편입, 국제이주의 송출국과 수용국에 대한 영향, 국제이주와 이주민공동체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비교분석을 통해 개념화와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이론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이주와 사회통합의 연계는 언급한 연구의 축적과 함께 시도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즉 국제이주의 수용국에 대한 영향과 이주민공동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발전과 함께, 수용국의 사회통합정책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이슈를 연계해 다루게 되면 연구의 적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

국제이주이론연구에서 제시된 통합적,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색을 지속하면서도, 기존 이론에 기초해 한국의 국제이주를 분석하고 비교방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이주정책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연구의 양적 성장과 기존 이론을 통한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이주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주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분화와 경쟁이 촉발되면,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이주의 연계연구는 ‘이주의 여성화’에 따른 젠더, 송출국과 수용국의 연계, 개발과 발전, ‘이주 산업’ 등으로 연구가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 국제이주경향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축적, 비교분석, 유형화 등의 지속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국제이주와 관련된 모든 학술논문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또한 논문 선별의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나 실수로 인한 누락 등의 오류로 중요한 학문적 성과를 담고 있는 논문을 검토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에 관한 저서,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발이민국가로서 국제이주에 관한 데이터 축적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제이주연구에 매진해온 연구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 김경학. 2010.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접목: 인도 번잡의 사회·경제적 양상에 관한 시론적 연구. 남아시아연구 16(2), 1-37.
- 김용찬. 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3), 81-107.
- 김윤식. 2008. 국제 이주노동정책과 이민노동자에 대한 연구: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2008년 10월, 35-52.
- 김은미·정현주. 2016.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가 이민생 출국으로의 원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6(2), 289-325.
- 김지송. 2017. 고숙련 노동자의 국제이주와 경제발전의 이론적 접근. 현상과 인식 41(1/2), 138-173.
- 김혜순. 2016. 이민현상에서 정책과 지역: 지자체 이민정책의 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6년 6월, 313-327.
- 김희강·류지혜. 2015. 다문화시대의 이민정책: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 학보 49(1), 223-244.
- 문경희. 2018. 젠더와 국제이주: 호주 한인 '1세대' 여성의 이민 과정과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7(1), 49-102.
- 미우라 히로키. 2011. 이주노동자문제와 동아시아 다층 거버넌스: 연성법 관점에 기반한 분석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51(3), 153-185.
- 박범중. 2017. 국제이주와 지역발전에 대한 함의. 국제정치연구 20(2), 107-131.
- 사득환. 2018. 이민정책의 패러독스(Paradox): 한국적 적실성과 가능성. 한국공공관리 학보 32(2), 295-318.
- 석현호. 2000.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23(2), 5-37.
- 설동훈·전진영. 2016. 국회의 이민정책 결정과 정당정치: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1(2), 137-172.
- 신지원. 2015. 국제이주와 발전의 연계 담론에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디아스포라연구 9(2), 7-36.
- 윤인진·유태범·양대영. 2009. 국제이주, 소수자, 재외한인, 다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년 12월, 237-248.

- 이규용. 2014.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노동리뷰 2014년 11월, 7-31.
- 이병렬 · 김희자. 2011.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경제와사회 90, 320-362.
- 이병하. 2017.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 접근과 방법론적 쟁점. 연구방법논총 2(1), 23-51.
- _____. 2019.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 담론 201 22(1), 7-43.
- 이소영. 2011. 광주 · 전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 분석 연구: 국제이주와 적응의 네트워크 관점에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2011년 6월, 25-61.
- 이용승. 2014. 국제이주와 인간안보. 국제관계연구 19(2), 137-169.
- 이해경. 2014. 국제이주 · 다문화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15(1), 129-161.
- 전형권. 2007. 국제이주이론의 관점에서 본 노동디아스포라의 성격.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07년 11월, 95-130.
- 조영희. 2015. 국제이주와 개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과 이민정책의 변화. 국제정치연구 18(1), 151-173.
- 최병두. 201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 · 통합적 연구를 위하여. 현대사회와 다문화 1, 1-33.
- _____. 2012.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362-395.
- _____. 2017. 관계이론에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으로: 초국적 이주 분석을 위한 대안적 연구방법론. 현대사회와 다문화 7(1), 1-47.
- 최영진. 2010.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이주의 동학: 경향, 유형 및 개발과의 연계. 신아세아 17(4), 191-221.
- 황정미. 2018. 개발국가의 해외이주 정책과 젠더. 페미니즘 연구 18(1), 3-46.
- Bartram, David. 2005.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Foreign Workers and Public Policy. Palgrave Macmillan.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한국이민학회 옮김. 2018. 이주의 시대. 일조각.
- Castles, Stephen. 2010. The Factors that Make and Unmake Migration Policies. Alejandro Portes and Josh DeWind, eds. Rethinking Migration: New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Berghahn Books, 29-61.
- Freeman, Gary P. 1995. Modes of immigration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 881-902.
- Hollifield, James F., Philip L. Martin and Pia M. Orrenius. 201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ssey, Douglas S., Joaquin Arango, Graeme Hugo, Ali Kouaouci, Adela Pellegrino and J. Edward Taylor. 1998. Worlds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ium. Clarendon Press.
- Portes, Alejandro and Josh DeWind. 2010. A Cross-Atlantic Dialogue: The Progress of Research and Theory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Migration. Alejandro Portes and Josh DeWind, eds. Rethinking Migration: New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Berghahn Books, 3-26.
- Vertovec, Steven. 2010. Transnationalism. Routledge.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9.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5월호.

● 투고일: 2019.07.23. ● 심사일: 2019.07.25. ● 게재확정일: 2019.08.06.

| Abstract |

The Review and Suggestions of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in Korea

Kim Yongchan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nd mak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Korea. It examines selected academic articles that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near future and focuses on the analysis of academic discourses and arguments in the articles. This research introduces the review of articles in relation to the theories, policies, related studies and trend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Korea and proposes several comments o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It presents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as follows. First, there will be a need for more analysis of immigration to Korea on the basis of established theories such as economic theories, social network and immigration system with the pursuit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comparative analysis. Second, the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in Korea require to focus on formation and decision making of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and to increase of the quantity in research on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Third, the related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need to extend the range of subjects like linkages between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and migration industry in addition to gender and development. Fourth, the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demand the collection of historical data, comparative research and typology.

〈Key words〉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y,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재외한인 연구의 성찰과 과제*

송 석 원 (경희대학교)
(j60w0178@khu.ac.kr)



국문요약

한국인의 해외 이민은 이미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19년 7월 현재 740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재외한인(Overseas Koreans)은 각각 다양한 이민 배경을 갖고 있으며 거주 국가별로 상이한 일상생활을 영위해왔다. 오늘날까지 이들의 이민 역사와 현재적 삶의 양상에 대해서는 실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 때때로 그동안의 연구 및 조사 성과를 총괄한 것도 이미 수차례 있었다. 재외한인에 관해 연구하는 연구자는 스스로도 재외한인인 연구자도 포함해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연구자의 증가에 비해 연구주제는 그다지 확장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재외한인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민 배경 요인, 이민자 특성, 이민자의 모국 정체성, 이민자의 문화변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트랜스내셔널한 행위로서 국경을 넘는 행위 그 자체에는 국가 혹은 민족의 경계에 고집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목표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외한인 가운데도 이러한 인식의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한인 연구는 아직도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의 재외한인 연구가 한 단계 발전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주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재외한인, 내셔널리즘, 트랜스내셔널리즘, 모국 정체성

“내 짧은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나는 조선이 아리랑고개를 몇 고개나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죽음뿐이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조선은 러일전쟁의 와중에서 외국군에게 한창 유린당하고 있었다. 1907년 조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된 뒤에는 7만의 조선군대가 해체되어 어쩔 수 없이 국경 밖으로 퇴각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1910년 조국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도 보았고, 해마다 1백만 명 이상이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시베리아로, 중국으로 유랑하는 것도 보았다. 지금 조선 유랑민의 수는 2백만 명을 넘고 있는데, 이 중 만주에 1백만 명, 시베리아에 80만 명, 일본에 30만 명이 있고 나머지는 중국, 멕시코, 하와이, 미국 기타 지역에 흩어져 있다(김산 외 1997, 46).”

I. 머리말

재외한인(Overseas Koreans, Korean Abroad)은 말 그대로 한국 이외의 지역으로 분산, 이민하여 삶을 영위하는 한민족을 가리킨다. 이들 가운데 여전히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구별하여 이미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특정해서 재외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외국민까지도 재외한인의 범주에 넣어 논의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재외한인과 재외국민 관계를 병렬관계로 볼 것인가, 포괄관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의 성격과 연구 주제가 연동한 결과이기도 하다. 재외한인과 재외국민의 용어 사용법에 대해 본인 자신이 재외한인인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물론,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양자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동일한 네이션(nation), 즉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의 유지, 지속,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논의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외선거와 같이 재외한인의 속성을 일률적이기보다는 재외국민과의 분리가 불가피한 주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재외한인과 재외국민은 병렬관계 혹은 대항관계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인의 해외 이민은 이미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영환의 말대로 “조선(한반도)의 근대는 '이산의 시대'였다(鄭榮桓 2011, 200)”고 할만하다. 김산이 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7만의 조선군대’와 ‘백 만을 넘는 유랑민’이 만주로, 시베리아로, 중국으로 ‘쫓겨’ 갔다. 해방 이후에도 곧 이은 한국전쟁 등의 영향으로 역시 ‘쫓기듯이’ 한국의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남미로 이민해갔다. 지난 150년 이상의 이민 역사를 돌이켜 보며 다소 거칠게 정리하면, 앞의 100여 년 동안에는

쫓기거나 쫓기는 듯한 비자발적 이민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뒤의 50여 년 동안에는 대체로 자발적 이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최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경향이라 할만하다. 쫓기는 이민에서 자유로운 이민으로의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그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 강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트랜스내셔널한 행위로서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 그 자체에는 국가 혹은 민족의 경계에 고집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목표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소유자는 100여 전에 쫓기거나 쫓기듯이 이민을 간 사람들의 후손보다는 지난 50여 전 사이에 자유 의지로 국경을 넘어 해외로 이민을 간 재외한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더욱이 이른바 ‘글로벌 마인드’로 더 한층 무장하게 될 앞으로의 이민 예비군들 역시 국가 혹은 민족 경계에서 대단히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재외한인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모국 정체성이 발견되고 국가 역시 이들의 모국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재외한인의 다수가 ‘쫓기거나 쫓기듯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후손이어서 국가 및 사회가 다소 일종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점¹⁾과 글로벌 마인드 소유 이민자 사이에서도 모국 정체성이 거주국에서의 자신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 모국 정체성을 강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모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김산은 조선인 유랑민수를 2백만 명으로 추측하고 있다. 1914년의 조선인수가 1,582만 명²⁾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백만 명에 이르는 유랑민수는 당시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이렇게 자의(자유의지)든 타의(쫓기듯이)든,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한반도의 국경을 넘어 해외로 이주한 한인은 2019년 7월 현재 740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재외한인은 수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들의 생활사가 민족사 및 세계사와 연동되면서 인문사회과학자들 사이에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재외한인을 연구하기 위한 대표적인 연구조직은 1964년에 발족한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88년 발족한 재외한인학회(1990년부터 학술지 『재외한인연구』 발간), 1998년 발족한 한국민족연구원(발족과 동시에 학술지 『민족연구』 발간), 2002년 발족한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2007년부터 『디아스포라연구』 발간)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민족연구원은 “새로운 시대환경의 도래와 함께 전 세계적으

1) 최근 재외한인학회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재외한인과 보훈’이라는 점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대표적으로, 2018년 6월 4일 국가보훈처가 후원하고 (사)재외한인학회가 주최한 「재외한인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현황과 전수 방안」이라는 학술대회를 들 수 있다.

2)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1914년).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 (검색일: 2019. 07. 20.).

로 부상하고 있는 인종과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등의 문제를 실제적이면서도 학문적인 연구조사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족과 민족주의를 이슈로 한 보편적인 문제 전반을 시야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단 재외한인연구에 특화된 연구소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재외한인을 소재로 한 연구 업적이 다수 학술지에 게재돼 온 것은 사실이다. 전남대의 세계한상문화연구단도 2019년부터 글로벌 디아스포라연구소로 개명한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외한인뿐만 아니라, 국내 다문화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디아스포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재외한인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해왔다. 여하튼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들 연구조직을 중심으로 연구와 토론을 거듭해왔으며 교포정책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동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국내에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차세대 연구자들을 배출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재외한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1997년에 재외동포재단을 발족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미션(mission)과 ‘국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계의 재외한인학회·한국민족연구원·글로벌 디아스포라연구소, 정부기관으로서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한인 연구와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타 다수의 연구소와 연구자의 활동이 재외한인연구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그동안의 재외한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재외한인 연구의 성과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학계에서 논의되었고 이미 출판물로도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단한 정리에 머무르고자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어느 한 시기에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수년 후 다시 그 후의 성과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또 다시 그 후의 성과를 추가하는 정도의 정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양하고자 한다. 오히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문헌 그 자체를 바탕으로 하면서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해내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재외한인 연구의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연구 주제의 확장 문제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개별 국가별 재외한인의 구성 내역을 이민 시기와의 연계 속에 정리해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별 재외한인 구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해당 국가 재외한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 국가별 재외한인 구성과 이주 시기

근대 시기의 쫓기는 이민, 유랑민으로서의 이민에서 현대의 자유 의지의 이민에 이르기까지에는 어떠한 경과가 있었을까? 이 문제는 재외한인 이민사의 단계 설정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 재외한인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몇 단계의 이민시기를 제시하고 있는바, 대체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 기점과 연동되어 시기구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구분은 연구자들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그 자체가 논쟁적인 것은 아닌데, 1910년의 한일합방, 1945년의 해방, 1962년의 해외이주법 제정, 1989년 전후의 탈냉전 등이 시기구분의 주요 기점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4-5단계로 시기를 나누게 되는데 윤인진(2004)의 시기구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860년대부터 1910년(한일합방이 일어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구한 말의 농민, 노동자들이 기근, 빈곤, 압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중국, 러시아, 하와리로 이주하였다. … 두 번째 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한국이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일제 통치시기에 토지와 생산수단을 빼앗긴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정치적 난민들과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2년의 만주국 건설을 계기로 만주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인들의 대규모 집단이주를 실시하였다. …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경제호황을 맞아 한인들이 노동자의 신분으로 도입하였으며, 1937년의 중일전쟁과 1941년의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대규모의 한인들이 광산, 전장터로 끌려갔다. … 세 번째 시기는 1945년부터 1962년(남한 정부가 이민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발생한 전쟁고아, 미군과 결혼한 여성, 혼혈아, 학생 등이 입양, 가족재회, 유학 등의 목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했다. … 네 번째 시기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이때부터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민이 시작되었다.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외한인 이민자와 그 후손은 이 시기에 이주하여 정착했다. 1962년에 남한 정부는 남미, 서유럽, 중동, 북미로 집단이민과 계약이민을 시작하였다(윤인진 2004, 8-10).”

주요 국가로의 한인들의 이민은 이와 같은 이민시기와 대체로 겹치면서도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민 시기는 이민 배경(동기) 및 이민자 특성 등과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바, 국가별로 그 동기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차이는 거주국의 민족정책이나 문화변용수준 등에 따라 한층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민자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될 터이다. 윤인진은 독립국가연합,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이민 시기, 세대 구성, 출신 지역, 이민 동기, 계층 배경, 거주국의 민족정책, 문화변용수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1〉 재외한인의 이민 배경요인, 이민자 특성, 거주국의 민족정책, 문화변용수준

	독립국가연합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이민 시기					
1단계	1863-1904	1863-1910	1910년 이전	1903-1905	1967년 이전
2단계	1905-1937	1910-1930	1910-1937	1906-1945	1967년 이후
3단계	1937-1945	1930-1945	1937-1945	1945-1964	
4단계	1945-1991	1945-1992	1945-1989	1965년 이후	
5단계	1991년 이후	1992년 이후	1989년 이후		
세대 구성	3, 4세가 주류	2, 3세가 주류	2, 3세가 주류	1세가 주류	1세가 주류
출신 지역	현재의 북한 지역(함경도, 평안도)	1930년 이전 : 현재의 북한 지역(함경도, 평안도) 1930년 이후 : 한반도 내 지역으로 다양화	현재의 남한 지역(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대부분 남한 출신과 소수의 북한 실향민	대부분 남한 출신
이주 동기	주로 경제적 이유(경제유민)/정치적 동기(독립운동)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경제유민)/정치적 동기(독립운동)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노동이민)/1937-1945년에는 강제징집	주로 경제적 이유(초기의 노동이민과 후기의 중산층 이민)/사회문화적 이유(자녀교육)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사회문화적 이유(자녀교육과 사회복지)도 작용
계층 배경	다수가 기근과 압제에 떠밀린 가난한 농민·유민(流民)의 성격이 강했음	다수가 기근과 압제에 떠밀린 가난한 농민·유민(流民)의 성격이 강했음	다수가 농민과 노동자·체류자(Sojourner)와 강제이주자의 성격이 강했음	초기 : 농민, 노동자 중기 : 국제결혼 여성, 전쟁고아, 유학생 후기 : 고학력 중산층 초기에는 체류자 성격이 강했으나 이후 정착이민의 성격이 강함	고학력, 전문직, 중산층 정착이민의 성격이 강함
거주국의 민족정책	동화주의	다원주의 (민족자치 허용)	동화주의	동화주의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문화변용 수준	러시아문화로의 동화	민족문화 유지	일본문화로의 동화	미국문화로의 동화와 민족문화유지	캐나다문화로의 동화와 민족문화유지
호칭	고려사람	조선족	재일(在日)한인	코리아-아메리칸	캐나다한인

출처: 윤인진(2004, 13-14).

거듭 말하는 바와 같이, 윤인진은 국가별 재외한인의 이민시기를 <표 1>과 같이 4·5단계로 나누고 이어서 ‘세대구성’, ‘출신지역’, ‘이주동기’, ‘계층배경’, ‘거주국의 민족정책’, ‘문화변용수준’, ‘호칭’ 등에 대해 국가별 재외한인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있다. 정리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 참고할만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의 정리가 몇 가지 점에서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거주국의 민족정책’, ‘문화변용수준’ 등은 기본적으로 ‘이민시기’와 관계없이 거주국의 국내정치사회문화 맥락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세대구성’, ‘출신지역’, ‘이주동기’, ‘계층배경’, ‘호칭’ 등에 대한 정리된 내용은 한결같이 1단계나 2단계 등 이민 초기의 특성만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의 이민 시기에 이민을 간 사람들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세대구성’의 경우에도 개별 국가별 현존 재외한인의 수가 비록 1단계 이민자의 후손이 압도적으로 많을지라도, 그 이후의 이민 단계에 이민을 간 사람들의 수나 그들의 후손들까지를 망라한 입체적 접근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출신지역’, ‘이주동기’, ‘계층배경’ 등도 마찬가지이다. <표 1>에 언급된 내용은 이민 1단계 시기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타당할 수 있지만, 예컨대, 4단계 혹은 5단계 이민자들의 경우 해당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민 1세, 2세, 3세 따위의 용어도 이민 시기가 서로 다른 사람(과 그들의 후손)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용어는 아닌듯하다. 예컨대, 이민 1단계시기에 이민을 간 사람의 3세 혹은 4세가 이민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이민 1세는 거의 없어졌다고 말할 경우, 이민 2단계 혹은 3, 4단계에 이민을 가서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호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이민을 떠난 당사자가 1세대라고 한다면, 각 단계의 1세대와 다른 단계의 2세대, 3세대, 4세대의 공존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열려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1세, 2세, 3세 따위의 용어가 1단계 이민시기에 이민을 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 그 이후 시기에 이민을 간 사람들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윤인진의 정리는 편리함은 있으나, 국가별 재외한인을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국가별, 이민시기별, 내용별 등과 같이 입체적 정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Ⅲ. 재외한인 연구의 성찰적 회고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는 현재 20년 혹은 30년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재외한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의

재외한인 연구의 성과와 현재를 점검하면서 향후의 과제와 전망을 내놓는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이민 ××년사』 등과 같이 각 국가별 재외한인의 역사와 현재 생활상을 정리한 저서가 출판³⁾되었으며, 연구자들도 ‘재외한인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단행본의 연구서를 발간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윤인진 이외에 다수 연구자가 공동 참여한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와 윤인진이 편저자로 펴낸 『재외동포 사회의 현황과 정책과제』 등을 들 수 있다. 전자는 대표 집필자인 윤인진이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재외한인학회가 설립된 지 2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윤인진 외 2011, 9)하기 위한 작업의 결과물로서 재외한인학회총서 1호로 출판된 것이었다. 학술지 『재외한인학회』에 그동안 게재된 논문의 내용분석을 포함해서 주로 중국조선족, 고려인, 재일코리안, 재미교포만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재외한인연구 문헌을 분석하였다.⁴⁾ 후자의 경우에는 이들 이외에 캐나다, 브라질, 독일, 뉴질랜드와 호주 등의 한인이 추가되었으나, 각 국가별 재외한인사회를 바라보는 앵글은 원칙적으로 각 연구자들의 관심에 맡겨져 다소 체계성을 결여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재외한인을 다루고 있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주로 윤인진 외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재외한인연구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거듭 말하는 바와 같이, 윤인진 외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는 주로 중국조선족, 고려인, 재일코리안,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연구논문, 단행본, 학위논문 등을 정리하고 있다. 각 장의 말미에 관련 서지목록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을 정도로 문헌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조선족을 다룬 장에서는 『재외한인연구』 학술지, 단행본, 학위논문, 전국학술지 등으로 나누고, 다시 『재외한인연구』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으며, 단행본에 대해서는 연도별, 주제별, 저자별, 발행처별로 나누어 재정리하고 있다. 학위논문에 대해서는 연도별, 대학별, 학문 분야별 분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전국학술지에 대해서는 학술지별 중국조선족 관련 게재 논문수를 정리하고 있다. 고려인, 재일코리안, 재미교포 등에 관한 장에서도 중국조선족과 큰 차이 없이 연도별, 주제별, 학문 분야별로 정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분석적이기보다는 소규모의 데이터베이스화의 측면이 강한 느낌이다. 그동안 축적된 다량의 재외한인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하면서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재외한인연구 성과를 국가별로 나누고, 다시 연구논문, 단행본, 학위논문 등으로 나눈 후, 각각에

3) 대표적으로 손정수 외(2005), 정하원 외(2011), 토론토한인회(2013) 등을 들 수 있다.

4) 흥미로운 사실은 재외한인학회가 그로부터 7년 후인 2018년 12월 15일에 『재외한인연구 30년의 성과와 향후 연구 과제』를 주제로 연례학술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중국 조선족, 고려인의 발표자는 윤인진 외(2011)에 집필자로 참여한 바 있었다.

대해 연도별로 정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더욱이 지난 20여 년간의 재외한인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총정리 형태의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재외한인연구에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주 국가를 막론하고 재외한인연구의 대부분이 한국 혹은 거주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연계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독립국가연합, 중국, 일본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에 한국 및 이들 거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연계가 적절히 고려된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연구 성과는 대체로 이민 초기를 다룬 연구서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앞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민 시기는 몇 개의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체로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연계 설명이 현저하지만, 그들의 후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채 단지 현상을 드라이하게 서술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어 학습, 한반도 통일관, 한국문화 이해 등과 모국 정체성을 드러내는 주제를 다룬 연구일수록 한국이나 거주국의 정치사회적 맥락은 전적으로 무시되기 일췌이다.

한편, 현재의 인구학적 통계를 보면, 재외한인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민 1단계시기의 1세대보다는 그들의 후손인 이민 2세, 3세, 4세 혹은 다른 단계시기의 1세대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비교적 최근에 이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을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재외한인연구가 이들 1단계 이민자의 2세, 3세, 4세 및 다른 단계 이민자 1세대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준다. 특히 1단계 이민자의 2세, 3세, 4세의 경우 거주국에서의 출생과 교육으로 인해 한국어 및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한국의 문화전통 이해 등을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이 다수 발표되고 있기는 하다. 더불어 각 단계 이민 시조(始祖)에 대한 기억을 드러내는 연구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민 시조에 대한 기억 연구 성과도 분량은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이민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루트를 확인하는 것은 분명 의미도 있고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재외한인연구에서의 새로운 주류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 채 보조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각 단계별 이민 시조의 이민 동기, 루트, 삶의 환경 등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재외한인 연구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정작 재외한인연구에서 ‘재외한인’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수동적이고 대상화된 존재로 묘사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특히 재외한인을

그들의 형성과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다수가 전 세계 도처’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왓치 모를 ‘국가적 자산’⁵⁾이라는 감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자와 정부 당국자의 지적(知的) 공모의 결과 현저해진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재외한인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아니라 재외한인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재외한인에게 ‘주체’의 지위를 확립시키는 것은 그들이 낙엽귀근(落葉歸根)을 하든, 낙지생근(落地生根)(조정남 1998, 55)을 하든,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정치·사회·문화·경제적 맥락 속에 결정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1단계 이민자의 2세, 3세, 4세 등이 수적 우위를 배경으로 재외한인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역시 이들을 ‘주체’로 해서 이들의 생활세계를 한국 혹은 거주국의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연계 속에 보다 분석적인 연구를 전개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연구가 최우길의 연구이다. 최우길은 윤인진 외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에 ‘국내 중국조선족 연구의 경향추이 분석과 향후 과제’를 맡아 집필하였다. 연구서의 전체적인 틀에 맞춘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최우길은 중국조선족에 대한 그동안 학계에 제출된 연구논문, 단행본, 학위논문 등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2월의 재외한인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의 발표문 ‘조선족 연구 30년: 회고, 과제, 그리고 전망’⁶⁾에서는 ‘학문영역으로서의 조선족연구의 등장,’ ‘조선족의 역사 : 기원, 독립운동, 한국전쟁, 구술사,’ ‘한국과의 만남 : 외국인노동자, 재외동포법, 재한조선족사회의 형성,’ ‘조선족 정체성 : 중국공민, 재외동포, 동아시아인,’ ‘글로벌 도시의 조선족,’ ‘문학과 예술 : 새로운 조선족의 등장’ 등 주제 중심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물론, 각각의 주제에 관한 문헌 자료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최우길의 두 논문 사이에는 분명 연장의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서술 방식의 변화에 의해 한층 더 분석적으로 중국조선족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실히 최우길의 2018년의 발표문 역시 각 주제들 사이에는 연도별 분류의 측면도 내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 및 중국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 중국조선족을 분류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재외한인 스스로를 ‘주체’로 하여 그들의 생활세계에 보다 주목하면서 이를 한국 및 거주국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 도출해내는 것이 향후 재외한인 연구의 새로운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5) 이러한 관점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문헌으로 尹京媛(2011)은 이광규(1997), 윤인진(2004) 등을 들고 있다.

6) 이 발표문은 후에 재외한인학회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최우길(2019, 29-54).

IV. 재외한인 연구의 새로운 과제 : 연구 주제의 확장

윤인진은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의 ‘머리말’에서 세계 170여 개국에 거주하는 700만 명(당시-집필자 주)의 재외한인의 존재와 2012년 총선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되게 된 점을 재외한인연구의 기회요인으로, 연구자의 수가 적고 학문 분야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의 구심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위험요인으로 각각 언급하고 있다(윤인진 외 2011, 7-8). 이어서 그는 재외한인연구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①재외한인연구의 잠재적 자원을 결집하고, ②재외한인 연구자들 간의 소통과 학계 간 연구를 활성화하며, ③상당한 수준의 재외한인 관련 연구를 축적해온 한국어 교육, 문학, 재외동포 교육, 선교 등과 같은 학문 분야 연구자들을 재외한인학회와 같은 학문공동체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④지역 간, 국가 간 연구 성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선형연구가 미진한 지역과 국가(예컨대,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등)에 거주하는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의 적극적 추진, ⑤재외한인사회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과정에서 재외한인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윤인진 2004, 8)고 제언하고 있다. 재외한인연구의 과제를 적절히 지적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연구의 기회요인으로서의 재외동포의 압도적 수의 존재 이유나 연구 주제의 확장성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다. 뿐만 아니라, 재외한인연구에서의 여전한 연구자 중심 시점이 극복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외한인연구의 연구 주제 확장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1. 재외한인 인구 증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국경을 넘은 이민의 보편적 가능성은 증대 일로에 있다. 그런데 국제이민이 이루어지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되는데, 예컨대 배출요인과 흡인요인이 그것이다. 배출요인은 이민자 소속 국가의 요인인 바, 정치적 위기, 경제적 빈곤, 사회적 혼란 등이 주된 요인이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독재정지체제에서의 탄압, 박해, 내전 등을 들 수 있다(스티븐 카슬 외 2013). 보다 큰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이다. 경제적 빈곤도 이민의 주요 원인이 된다. 물론 선진 국가의 고도전문기술인력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월경할 수 있으나, 빈곤이 일상화되어 있는 저개발국가 출신의 이러한 정도의 고급 인력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월경할 수 있다. 이들은 고급전문기술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다중언어 구사 능력 보유자이기 때문에 이민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편이다. 문제는 저개발 국가 출신의 비숙련노동자이다.

이들은 대부분 특화된 기술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국어 이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곤궁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이민을 택할 수 있다. 언어상의 불편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의 경제적 빈곤 타개가 우선순위가 되면 국경을 넘는 선택을 하게 된다(木村雅昭 2012, 8). 사회적인 혼란은 정치적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자유의 위축, 사회적 성장 혹은 성공 가능성의 축소, 자존감의 하락 등이 원인이 되어 국제이민을 단행케 하는 것이다. 재외한인 역시 이와 같은 이민 배경을 갖고 있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 7월 현재 재외한인은 약 74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발표한 재외한인의 대륙별 인원은 아주지역 약 392만 명, 미주지역 약 284만 명, 유럽지역 63만 명, 중동지역 약 2만 명, 아프리카지역 약 1만 명 등이다.⁷⁾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⁸⁾”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이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내세워도 좋은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이 말은 그야말로 5대양 6대주에 한민족이 이민해서 살고 있다는 점을 과거 ‘해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표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용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표현은 영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자국 식민지의 광대함을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가 대영제국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대영제국의 전개가 팽창(膨脹)적 식민지 확장을 ‘백인의 의무(white man's burden)’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자기합리화 하였음은 익히 아는 바와 같다. 따라서 ‘해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해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표현은 영국에서 스스로의 영광을 과시하는 용어일 수 있으나,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용어이다.

따라서 단지 세계 도처에 다수의 재외한인이 존재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이민 제국주의’라도 목표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점, 나아가 표현 자체가 여전히 재외한인을 ‘주체’로 보지 않고 ‘국가적 자산’으로서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도 윤경원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왜 한 세기 사이에 인구의 10%나 되는 재외한인(코리안 디아스포라)이 생겼는지, 무엇이 해방 후에도 이산을 계속시키고 있는지 등과 같은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尹京媛 2011, 226). 윤인진이 <표 1>에서도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같이 1단계 이민자들은 경제유민, 정치적

7)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출처: <http://www.okf.or.kr/homepage/index.do> (검색일: 2019. 07. 20.).

8)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출처: <http://www.okf.or.kr/homepage/index.do> (검색일: 2019. 07. 20.).

난민과도 같은 처지에서 김산이 표현하는 ‘유랑’으로 국경을 넘어갔다. 자유의지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빨라야 해외이주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전까지의 압도적 다수의 이민자와 그들의 후손은 대체로 ‘유랑민’이었고,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의 이민이었을 것이다.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의 이민자들 역시 국경을 넘어가는 자만의 이유를 갖고 있을 터이다. 재외한인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가 배출요인이 되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한 이민자의 개별 이민 원인이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은 적어도 윤경원의 질문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쫓겨서’ 혹은 ‘쫓기듯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것이 왜 국가가 사랑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는 재외한인을 ‘국가적 자산’ 운운할 수 있는가. 국가가 재외한인에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더욱이 재외선거 실시에 즈음해서 재외한인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거듭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외한인연구는 재외한인 당사자를 ‘주체’로 이해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윤경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외한인 증가 원인에 대한 윤경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일대사이기도 하다.

2. 이민자사회에 대한 종합적 접근

〈표 1〉에서도 정리된 바와 같이, 이민 시기는 최대 5단계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각 단계별 이민자의 출신지역, 이민동기, 계층배경 등이 상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재외한인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민시기별 인적 구성의 차이를 무시한 채, 1단계 이민자와 그들의 후손을 중심으로 논의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이민 세대를 가리키는 호칭의 불충분성도 이러한 이민 시기별 인적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 결과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재외한인들은 다양한 이민시기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이민시기의 차이가 다른 요소의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재외한인을 반드시 낙엽귀근의 측면만이 아니라 낙지생근의 측면에서 거주국에서의 생활자로서의 모습을 보다 다양한 주제로 분석해내는 일이 될 것이다.

낙지생근의 측면에서 재외한인을 연구할 때, 이민자를 이민자로 보고 그들의 일상적 삶의 축적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견지할 자세가 될 것이다. 아마도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재외한인의 거주국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들이 거주국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연유하는 제반 문제들일 것이다. 일찍이 유고슬라비아의

이론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에드발드 카델리(Edvard Kardelj)는 “다민족사회에서는 사회의 모순은 항상 민족문제를 야기하는데, 그것은 민족정책이 잘못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단일민족국가에서는 사회의 대립은 직접 정치의 장에 등장하지만, 다민족국가에서는 그것은 언제나 민족 간 분쟁이 되어 나타난다(エドヴァルド 1986, 52)”고 지적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이 지적은 약 50년 후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이민 선진국에서도 이민과 반이민의 격한 대립이 표출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재외한인 역시 거주국 이민자 마이너리티의 하나이다. 따라서 마이너리티로서의 삶의 제한 요인과 기회 요인 등이 거주국 사회와의 맥락 속에서 그려질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거주국 내 재외한인 및 재외한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수차례에 걸친 이민단계에서 각 단계 이민 시조는 연령적으로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의 고령화가 거주국 국민 및 다른 마이너리티들의 그것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거주국 마이너리티로서의 재외한인의 입지 및 그것이 갖는 의미를 추적하는 것은 우리사회 내부의 다문화 배경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현대사가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반공포로 출신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김환기 2019, 85-94)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필요도 있다. 반공포로 출신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는 문학과 역사학의 영역에서는 일부 있지만, 다른 학문 영역,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쟁’과 ‘사상’에 치쳐 남미로 이민해간 반공포로 출신자의 이민생활을 정리하는 작업은 재외한인연구의 중요한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이민선 및 이민루트 연구

네가와 사치오(根川幸男)는 2019년 6월 21일 개최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1920년 「남미·세계일주항로」 개발의 의미와 식민지기 조선의 모더니즘 (1920年「南米・世界一周航路」開設の意味と植民地期朝鮮のモダニズム)”를 발표하였다. 이민선의 항로에 관한 내용이다. 이민 항로에서 이민선이 교육·문명화의 기능, ‘국민’의 식 형성이 시공간, 동식물·문화교환의 미디어 등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히고 있다(根川幸男 2019, 63-68). 이민선연구는 곧 이민과정연구라 할만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재외한인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민과정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민과정연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이민으로, 김산이 언급하는 바와 같은 “아리랑고개 꼭대기에서 기다리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이민과정이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민선과 관련해서도 이민선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을 뿐, 이민과정 설명은 거의 없다. 즉, 한국이민사박물관이 2010년에 발행한 자료집에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보관 문서 기록을 토대로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약 7,415명의 한인들이 갤릭호(Gaelic), 아메리카 마루(America Maru), 차이나(China), 콕틱(Coptic), 도릭(Doric), 홍콩 마루(Hongkong Maru), 코리아(Korea), 만추리아(Manchuria), 몽고리아(Mongolia), 니혼 마루(Nippon Maru), 시베리아(Siberia) 등 모두 11척의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다고 기술되어 있다(한국이민사박물관 2010, 46-47). 호놀룰루 항 도착날짜, 선박명, 승선 한인수 등이 간결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을 뿐이다. “아리랑고개 꼭대기에서 기다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유랑민으로 하와이를 건너가는 한인 이민자들이 이민선 안에서 어떠한 생각과 생활을 했는지 등이 보다 더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 연구 역시 재외한인 연구의 큰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될 것임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V. 맺음말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트랜스내셔널한 행위로서 국경을 넘는 행위 그 자체에는 국가 혹은 민족의 경계에 고집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목표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외한인 가운데도 이러한 인식의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한인연구는 아직도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재외한인연구의 대부분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여하히 유지, 강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한인을 ‘국가적 자산’으로 보는 시점에서 벗어나 그들 자신을 ‘주체’로 하는 연구 방향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온 몇몇 용어들에 대한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외한인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연구방향과 주제 다양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재외한인연구는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산·님 웨일즈. 조우화 역. 1997. 아리랑. 동녘.
- 김환기. 2019. 남미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고향/조국의 기억 : 한국전쟁/근대산업화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 사람의 이동과 기억.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집.
- 손정수·장영철. 2005. 아르헨티나 한인이민40년사. 아르헨티나 한인이민문화연구원.
-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한국이민학회 역. 2013. 이주의 시대. 일조각.
- 윤인진. 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 _____ 외. 2011.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 _____ 편. 2018. 재외동포 사회의 현황과 정책과제. 북코리아.
- 이광규. 1997. 국제화 시대의 한민족의 진로. 서울대학교출판부.
- 재외한인학회. 2018. 재외한인연구 30년의 성과와 향후 연구 과제, 2018 재외한인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집.
- 정하원·안경자·최금좌. 2011. 브라질 한인이민 50년사. 브라질 한인이민사편찬위원회.
- 조정남. 1998. 중국인의 민족상황과 화교집단. 민족연구 1.
- 토론토한인회. 2013. 캐나다한인사. 토론토한인회.
- 한국이민사박물관. 2010. 한국이민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 사람의 이동과 기억.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집.
- エドヴァルド・カルデリ(高屋定国・定形衛訳). 1986. 民族と国際関係の理論. ミネルヴァ書房.
- 木村雅昭. 2012. EUと東アジア共同体. 徐興慶·陳永峰編. 轉換中のEUと「東アジア共同体」 : 台湾から世界を考える. 台湾大学出版中心.
- 鄭榮桓. 2011. 解放前における在外朝鮮人の形成と離散. 駒井洋·陳天璽·小林知子編. 東アジアのディアスポラ. 明石書店.
- 根川幸男. 2019. 1920年「南米・世界一周航路」開設の意味と植民地期朝鮮のモダニズム.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 사람의 이동과 기억.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집.

- 尹京媛. 2011.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植民主義と離散. 駒井洋・陳天璽・小林知子編. 東アジアのディアスポラ. 明石書店.

-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재외동포재단 www.okf.or.kr

● 투고일: 2019.08.04. ● 심사일: 2019.08.05. ● 게재확정일: 2019.08.11.

| Abstract |

Introspect and Prospect of Studies on Overseas Koreans

Song Seokwon (Kyung Hee University)

Korean emigration already has a history of over 150 years, and at present, July 2019, the counts are as high as 7.4 million. Overseas Koreans each have various emigration backgrounds and they have been leading different lives according to the country they moved to. Up to this day, there has been numerous studies conducted on their emigration history and present living conditions, and from time to time there has been studies that summed up the researches and inquiries conducted up until then. The number of researchers studying about Overseas Korean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including researchers who are Overseas Koreans themselves. However, it is true that the subjects of study haven't been expensive compare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searchers. In fact, when one looks into the subjects of the studies conducted up to this day, one can summarize them as: background reason for emigration, characteristics of emigrants, emigrants' motherland identity, and emigrants' acculturation. Commonly, one can assume that the explicit objective of not insisting on the borders of countries or races is inherent in emigration as today's transnational act itself. It is true that people with such awareness is increasing within Overseas Koreans. Nevertheless, studies on Overseas Koreans haven't been able to fully cross the borders between countries or races. Such aspects suggest that in order for studies on Overseas Koreans to develop further, the researchers need to ensure the diversity of the topics being studied.

<Key words> Overseas Koreans, nationalism, trans-nationalism, motherland identity

특집 Ⅱ

국제이주와 인간안보

신남방정책을 위한 對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의 안보위협 분석: 불법체류자 증가를 중심으로	오정은
제주 예멘 난민사태와 인간안보: 사회통합방안을 중심으로	석인선 · 황기식
다문화인권교육을 통한 증오범죄 대응방안: 프랑스의 이민 2,3세의 증오범죄 사례 중심으로	정은정 · 김대중



신남방정책을 위한 對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의 안보위협 분석: 불법체류자 증가를 중심으로

오 정 은 (한성대학교)
(mouton3@hansung.ac.kr)



국문요약

현재 한국은 주변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외교 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신남방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에 활발한 인적교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한-아세안 상호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아세안 사증면제로 인적교류가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 증가는 범법자 증가 문제를 넘어, 불법노동을 통한 노동시장 교란, 외국인에 대한 반감 증가 및 여론 분열을 초래하는 안보위협 요인이다.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 간 사증면제가 항상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크게 낮은 경우가 많고, 이미 국내에 아세안 출신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사증면제가 일부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불법체류를 계획하고 한국에 오는 상황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사증면제 추진이 필요하지만, 사증면제 시행 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여행자 사전전자정보등록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한시적으로 사증면제를 실험해 보고, 부작용에 대응하면서 점진적으로 사증면제를 진행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주제어: 신남방정책, 불법체류자, 사증면제, 안보, 아세안

I. 서론

탈냉전 이전에는 국가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안보를 논했다. 여기서 안보의 주체는 국가, 안보의 수단은 군사력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등장한 신안보 개념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위협들을 모두 안보의 문제로 다룬다. 기후변화, 감염병, 사이버 테러, 식량과 인구, 에너지 등이 모두 안보의 주제가 된다. 주요 이민국가에서는 이민도 중요한 안보의 주제로 취급한다.¹⁾ 이민과 관련하여, 외국인 범법자 증가로 인한 수용국의 법질서 혼란, 외국인에 대한 반감 증가에 따른 사회 분열, 국제테러 조직원의 입국과 국내활동에 따른 테러발생 가능성 등이 주로 안보문제로 다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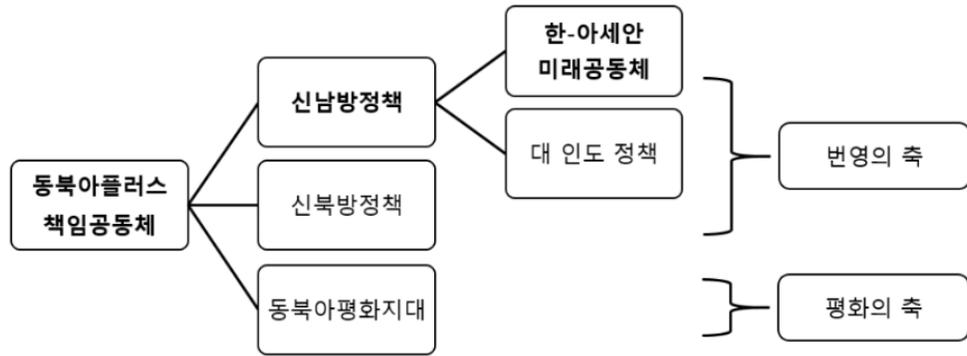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민과 안보를 연계한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민자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이민을 안보 측면에서 검토하는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정부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對아세안 이민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안보 문제를 함께 고려하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주변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생존의 공간을 확대할 목적으로, 동북아에 더해 북방과 남방의 공동번영 준비한다는 의미로 발표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차원에서 추진되는 외교 전략이다. 동북아플러스 하부 정책구도에 신북방정책, 동북아평화지대와 함께 신남방정책이 설정되어 있다(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은 크게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과 대 인도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은 한국 제2의 교역대상이자,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아세안 국가와의

1) 일례로, 미국에서 이민정책의 핵심이 되는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사증프로그램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서 담당한다.

관계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국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아시아경제 2018/05/09)²⁾

〈그림 1〉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도와 신남방정책의 위치



출처: 이재현(2018).

정부는 2017년 11월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임을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에 신남방정책을 전담하는 공식 조직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³⁾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부기관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에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를 구체화시킨 한-아세안미래공동체 구상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라는 3P 원칙이 등장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 상품 교역을 넘어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 등 다방면의 관계 증진이 요구되고 있다. 인적 교류 증진은 한-아세안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 사이에 신남방정책 성공을 위해 한국의 對아세안 이민정책을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오정은 외 2019).

2) KOTRA가 2018년 3~4월에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9개 국가(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거주자 1,7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93.8%에 달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915401662959>(검색일: 2019.07.11.).

3)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제3차 전체회의는 2019년 7월 16일에 개최되었다.

현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는 국가에 따라 상이한 이민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민정책을 개방성 정도에 초점을 두고 비교하면 크게 두 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상호간에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가 시행되는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단기방문을 위해서도 사증이 요구되는 그룹이다. 아세안의 10개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은 전자의 경우로, 한국과 해당 4개국 사이에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들이 무사증으로 서로 상대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나머지 6개국은 한국과 사증면제 상태가 아니고, 한국 방문을 위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목할 점은 아세안 쪽 보다는 한국이 폐쇄적인 이민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캄보디아와 한국 사이에는 양쪽 모두 단기 방문객에게까지 방문사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캄보디아를 제외한 5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과의 관계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인 단기방문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상대국에게 단기방문객도 사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의 해당 5개국에게 더욱 폐쇄적인 이민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 국민들이 무사증으로 한국에 오면 불법체류를 비롯한 각종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주된 근거는 한국과 해당 국가 사이의 경제력과 인건비 격차이다. 즉,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아세안 국가 사람들이 인건비가 높은 한국에 오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불법체류와 불법노동 목적으로 여행객을 가장하여 무사증으로 입국하기 쉽다는 우려가 있다(오정은 외 2019). 하지만 최근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나머지 6개국에 대해서 과감하게 국경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부처별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인지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수적 입장을 넘어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고, 양자 관계 증진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사증 없이 상호 방문이 가능해진다면, 한-아세안 사이의 인적교류 확대와 이로 인한 한-아세안 경제교류 증대, 아세안 출신 관광객의 한국 방문 증가, 아세안 국가에서의 한국 위상 강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아세안 국가 출신 외국인의 국내 유입 증가가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적지 않다. 부정적 전망의 대표적인 이유는 불법체류자 증가로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사증없이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가 반드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반문의 여지도

있다. 불법체류자가 대부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가 국내 경제 발전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불법체류자는 사소한 잘못으로도 추방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다른 외국인보다 오히려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경향도 있다는 점에서(강동관 2015), 불법체류자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체류라는 행위가 국내 법질서를 교란시킨 것이고,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 인권침해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증가는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불법체류자들이 불법 신분으로도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장소 주변이나, 국내체류 외국인들과 정보 교환이 유리한 장소에 집중 거주하면서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밀집지역이 도시 낙후화를 야기하거나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여 사회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한국의 對아세안 회원국 이민정책 변화 요구가 등장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을 향한 개방적 이민정책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개방적 이민정책을 상징하는 한-아세안 상호 단기방문 사증면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불법체류자 증가를 통해 한국에 미치는 안보위협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은 제 II장에서는 경험적 분석에 근거하여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증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제 III장에서는 현행 이민정책 하에서 국내체류 불법체류자 실태를 살펴보고, 제 IV장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단기방문객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가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불법체류자 증감 정도와 한국의 수용 가능성을 진단한다. 이를 토대로 제 V장에서는 신남방정책 성공을 위해 추진하는 對아세안 이민정책의 적절한 변화 방식을 제안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II. 일반여권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증감의 상관관계: 경험적 분석

일반적으로 국가 간 사증면제는 인적교류를 증대시키는 반면에,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사이의 증감 사이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다양한 변수를 완전히 통제할 채,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사증제도와 불법체류자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충분히 많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국내에서 사증제도와 불법체류자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이원식·윤문길(2009)이 중국동포 방문사증과 불법체류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 최은하(2016)가 무사증제도가 운영되는 제주지역에서, 무사증입국자 증가와 불법체류자 증감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한 연구 정도가 있는데, 두 연구 모두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증감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증감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였기에, 본 연구는 한국과 외국 사이의 사증면제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가 예로 든 경험 사례는 한-일 사증면제와 한-태국 사증면제 사례이다. 한-일 사증면제는 추진 과정에서 불법체류 증가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었던 경우라는 점에서, 한-태국 사증면제는 현재 한국의 對아세안 사증면제 추진에서 불법체류자 증가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증면제와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짐작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두 사례는 일반여권 사증면제가 필연적으로 불법체류자 증가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일 사증면제

한-일 일반여권 사증면제는 한국 측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가 확정된 이후에 한국이 한·일 외무장관회담 등에서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오정은 외 2016).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의견이 나뉘었다. 외무성과 관광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성은 찬성했던 반면에, 법무성과 경찰청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오정은 외 2016).

일본 법무성이 반대했던 주된 이유는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였다. 일본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일 사증면제가 이루어지면 일본에서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일본 경찰청도 국내 치안유지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반대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도 한-일 사증면제의 반대자들의 논리가 되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1인당 GDP를 살펴보면, 2000년에 한국의 경우 11,947달러인 반면에 일본은 37,302달러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찬반 논의 끝에 결국 한·일 일반여권 사증면제 조치가 결정되었다(오정은 외 2016).

사증면제 이후,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법무성과 경찰청의 우려와 달리,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표 1>은 사증면제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를 보여준다. 여전히 일본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한국인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인 불법체류자 절대 수와 전체 불법체류자 가운데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수는 2005년에는 43,151명이었는데, 사증면제조치가 시행된 2006년에는 40,203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 변화(2006-2019)

(단위: 명)

연도	전체	한국인	한국인 비율	연도	전체	한국	한국인 비율
2006	193,745	40,203	20.8%	2013	62,009	15,607	25.2%
2007	170,839	36,321	21.3%	2014	59,061	14,233	24.1%
2008	149,785	31,758	21.2%	2015	60,007	13,634	22.7%
2009	113,072	24,198	21.4%	2016	62,818	13,412	21.4%
2010	91,778	21,660	23.6%	2017	65,270	13,265	20.3%
2011	78,488	19,271	24.6%	2018	66,498	12,876	19.4%
2012	67,065	16,927	25.2%	2019	74,167	12,766	17.2%

주: 매년 1월 1일 기준.

출처: 일본법무성 홈페이지 불법체류자통계

(<http://www.moj.go.jp/content/000109294.pdf>; <http://www.moj.go.jp/content/001289212.pdf>).

이처럼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일본정부가 추진한 ‘불법체류자 5년 반감 계획’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란 평가가 있다(오정은 외 2016). 일본 정부의 불법체류자 반감 계획은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사이에 개입된 외부변수로,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증감 사이의 상관관계 파악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일반여권 사증면제가 반드시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안보위협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적 보완을 통해 부정적 효과의 완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한-태국 사증면제

한국과 태국은 1981년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상호 사증면제를 하였다. 이후 오랫동안 불법체류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법체류자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오정은 외 2019).

〈표 2〉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의 연도별 불법체류 현황을 보여준다. 불법체류자 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특히 2014년에 신규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연도의 신규 불법체류자 수는 전년대비 3.6배 증가하였고, 전체 입국자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6.7%로 상승했다.

2014년은 우리나라가 태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다소 완화한 시기였다. 당시 한국정부가 태국인의 입국심사를 완화한 배경에는 태국정부와의 마찰과 타협이 있었다(오정은 외 2019). 2000년대 중반부터 무사증으로 입국한 태국인들이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정부가 출입국 항에서 태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했었다. 이 과정에서 태국인의 한국 입국 거부사례가 증가하였고, 태국정부는 이를 문제 삼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태국에서 관광사증으로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인에 대한 체류심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태국인에 대한 입국거부가 양국 간 외교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은 태국인에 대해 엄격하게 실시하던 입국심사를 다소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태국인의 국내 입국은 이듬해인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잠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연평균 20,000명을 상회하는 수준의 높은 신규불법체류자가 발생하고 있다.

〈표 2〉 태국인 입국자의 국내 불법체류 현황

(단위: 명, %)

유형 \ 연도	1997	2002	2007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태국인 입국자	62,653	74,843	148,194	311,291	389,773	375,270	469,619	375,021	474,262	503,777
신규불체율 ¹⁾	3.0	3.5	1.6	1.8	2.1	2.3	6.7	6.2	4.2	5.5
신규불체자	1,865	2,604	2,392	5,879	8,318	8,596	31,237	23,226	19,997	27,717

주: 1) 신규불체율은 당해년도 해당국가 불법체류 발생자 수/당해년도 해당국가 입국자 수 의미.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

불법체류 태국인이 장기체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태국인의 누적불체율도 높은 수준이 되었다. 〈표 3〉은 국내체류 태국인의 누적불체율을 보여준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체류 태국인 수는 153,259명인데,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 수가 68,449명에 달해, 누적불체율이 44.6%에 이르렀다.

〈표 3〉 국내체류 태국인 누적불체율(2002-2017)

(단위: 명)

유형 \ 연도	2002	200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체류인원	27,027	47,813	45,945	55,110	94,314	93,348	100,860	153,259
불법체류자	20,020	14,887	17,591	20,665	44,283	52,519	56,099	68,449
누적불체율 ¹⁾	74.1%	31.1%	38.3%	37.5%	47.0%	56.3%	55.6%	44.6%

주: 1) 누적불체율은 당해연도의 불법체류자 수/전체 체류인원 수 의미.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

태국인들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이유는 태국이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태국 마사지업소와 같이 태국인이 취업하기에 유리한 노동시장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언하면, 태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태국에서보다 빨리 큰돈을 벌수 있고, 불법 신분으로도 일자리를 찾기 쉬운 상황에 있다. 그 결과, 현재 국내에서 태국인들의 불법체류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

태국인의 높은 불법체류율은 개방적 이민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입장을 견지하는 정책입안자들이 일반여권 사증면제 신증론을 펼치며 제시하는 근거로 종종 인용되어 왔다. 신남방정책을 이유로 아세안 국가들과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할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높은 불법체류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태국의 사례에서 관찰되는 높은 불법체류율이 사증면제의 직접적 효과라고 단정하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1981년 한-태국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된 이래 오랫동안 불법체류는 양국간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태국의 불법체류 문제는 일반여권 사증면제가 시작되고 약 20년이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부각되었다. 사증면제 그 자체가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 함께 결합되어 작용할 때 불법체류 문제가 부상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Ⅲ. 국내체류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새로이 일반여권 사증면제에 들어갈 경우,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남방정책을 위한 사증면제 고려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증면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를 감수하고 과감하게 사증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체류자 수가 국내 안보의 측면에서 감당할 수준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기존의 국내 불법체류자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생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국내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불법체류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취하면서, 2008년 이후 4년 동안은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012년에 다시 증가하여 현재까지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3년 불법체류자 수는 183,10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355,126명으로 5년 전보다 93.9% 증가하였다. <표 4>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연도별 불법체류자 수를 보여준다.

<표 4> 연도별 불법체류자 증감 추이(2008-2018)

(단위: 명)

연 도	총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소 계	등 록	거 소	단 기	
2008	1,158,866	200,489	93,461	542	106,486	17.3%
2009	1,168,477	177,955	83,729	613	93,613	15.2%
2010	1,261,415	168,515	78,545	732	89,238	13.4%
2011	1,395,077	167,780	82,848	578	84,354	12.0%
2012	1,445,103	177,854	92,562	1,579	83,713	12.3%
2013	1,576,034	183,106	95,637	1,533	85,936	11.6%
2014	1,797,618	208,778	93,924	2,066	112,788	11.6%
2015	1,899,519	214,168	84,969	1,114	128,085	11.3%
2016	2,049,441	208,971	75,241	941	132,789	10.2%
2017	2,180,498	251,041	82,837	1,064	167,140	11.5%
2018	2,367,607	355,126	90,067	1,015	264,044	15.0%

주: 불법체류율(%) = 불법체류자(합계) ÷ 총체류자 × 100.

출처: 법무부(2019b).

국내에서의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한을 넘기면서 출국하지 않는 사례가 주를 이룬다. 지리적 조건상 외국인이 밀입국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육로 등을 통한 외국인의 밀입국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한국은 비교적 정확하게 불법체류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입국기록은 있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출국한 기록이 없는 자를 과도체류 불법체류자로 집계하면 된다.

외국인 불법체류는 사증면제나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에서 많이 나타난다. <표 5>는 최근 5년간 연도별·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외국인에게 36가지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3개월 미만의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표 5> 연도별·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2014-2018)

(단위: 명)

체류자격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구성비 ¹⁾
사증면제(B-1)	46,117	56,307	63,319	85,196	162,083	45.6%
관광통과(B-2)	15,899	19,658	19,038	20,662	30,028	8.5%
단기방문(C-3)	45,746	47,373	46,041	56,331	67,157	18.9%
유학(D-2)	2,157	1,585	1,034	1,112	1,419	0.4%
기술연수(D-3)	2,083	1,876	1,536	1,448	1,373	0.4%
일반연수(D-4)	4,816	4,425	4,687	7,209	12,613	3.6%
비전문취업(E-9)	52,760	49,272	45,567	46,618	47,373	13.3%
선원취업(E-10)	4,974	5,240	5,480	5,993	6,174	1.7%
방문동거(F-1)	3,992	3,373	2,440	2,774	3,134	0.9%
거주(F-2)	7,838	5,967	3,660	3,063	2,631	0.7%
기타(G-1)	3,078	2,709	3,607	6,916	7,893	2.2%
방문취업(H-2)	6,773	5,090	2,315	2,415	2,320	0.7%
기타	12,545	11,293	10,247	11,304	10,928	3.1%
총계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55,126	100.0%

주: 1) 2018년 기준.

출처: 법무부(2019a).

외국인이 사증면제로 국내에 오는 경우는 제주도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일방적 조치로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와, 국가 간 상호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국가 사이에 사증면제를 합의하고 해당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다. 사증면제 허가는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 목적 입국자에게 한해 주어지며, 그 주목적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이다. 그런데, 사증면제로 입국한 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서, 신남방정책을 위해 아세안 6개국과 사증면제를 할 경우에도 불법체류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게 된다.

현재도 국내에서 아세안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사례가 적지 않다. <표 6>은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수를 국가별로 나타낸 것이다. 아세안 국가인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태국은 한국과 상호 사증면제 상태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사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신남방정책 추진이란 미명하에 아세안 6개국과 상호 사증면제를 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크게 증가할지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표 6> 국가별 불법체류자 현황(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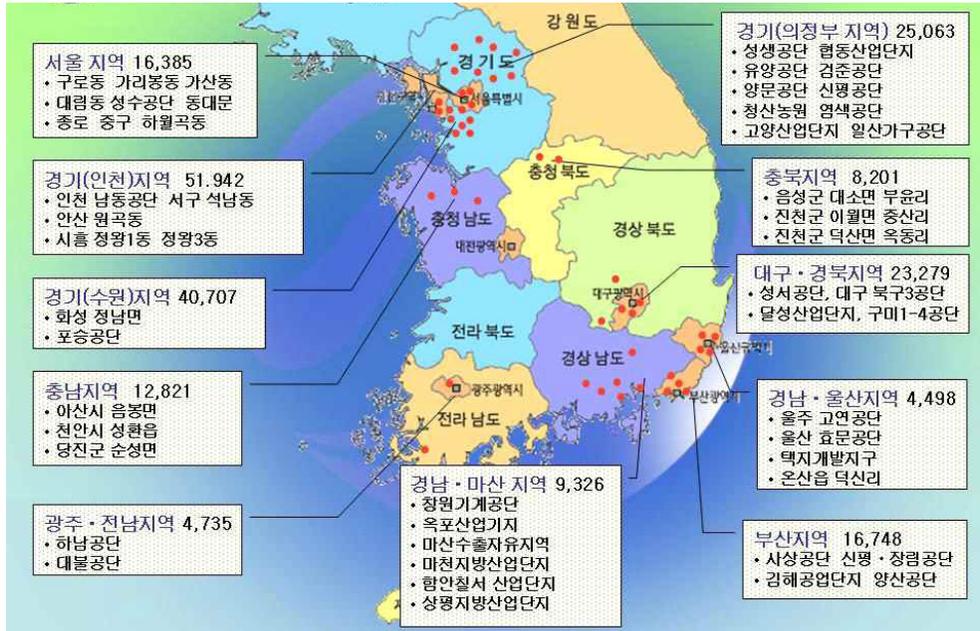
(단위: 명)

국가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구성비 ¹⁾
태국		44,283	52,519	56,099	68,449	138,591	39.0%
중국		70,311	67,333	55,831	62,827	71,070	20.0%
베트남		26,932	26,563	27,862	31,691	42,056	11.8%
몽골		7,407	8,274	10,146	12,719	15,919	4.5%
필리핀		12,814	12,358	11,295	11,954	13,020	3.7%
카자흐스탄		359	1,337	2,914	7,214	11,413	3.2%
러시아(연방)		1,165	1,600	3,849	8,533	10,906	3.1%
인도네시아		7,237	7,267	7,181	7,626	8,110	2.3%
우즈베키스탄		4,627	4,680	4,452	5,241	6,162	1.7%
캄보디아		3,115	3,556	3,886	4,715	5,897	1.7%
스리랑카		4,232	4,460	4,580	4,823	5100	1.4%
기타		26,294	24,219	20,876	25,249	26882	7.6%
총계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55,126	100.0%

주: 1) 2018년 기준.
출처: 법무부(2019a).

불법체류자는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처지가 비슷한 불법체류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생활하는 밀집지역이 전국 곳곳에 형성되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을 조사하고 다수의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이 확인한 적이 있다. <그림 2>는 10년 전인 2008년 법무부가 파악한 전국의 주요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을 보여준다.

〈그림 2〉 국내 불법체류자 밀집지역 분포도(2008)



출처: 차용호(2015, 103).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에 대한 최근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10년 전에 비해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도 곳곳에 불법체류자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공간이 전국 각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IV. 아세안 국가 출신의 불법체류 현황

현행 제도 하에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향후 보다 완화된 사증제도를 도입할 때 더 많은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예에서도, 한-일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반대하였던 일본 기관들은 당시의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많다는 사실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불법체류자 수로 향후 완화된 사증제도 시행 이후의 불법체류자 증감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가 반문의 여지가 있다. 사증면제 이후에 불법체류자 수가 큰 변화 없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불법체류자 수와 비율은 일반국민들 사이에 개방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반대분위기 형성의 원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이 사증면제와 같이 과감한 개방적 이민정책 추진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도 아세안 국가 출신의 국내 불법체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일반여권 사증면제 추진의 타당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이미 한국과 사증면제 상태에 있는 4개국과, 현재 사증이 필요하지만 향후 사증면제가 검토되는 6개국을 구분하여, 해당 국가 출신 국민들의 국내 불법체류 현황 통계를 분석하였다.

〈표 7〉은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의 아세안 국가 출신 외국인의 국적별 불법체류율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반여권 사증면제가 이루어진 아세안 4개국은 평균 40%의 불법체류율을 보이고, 아세안 6개국은 평균 18%의 불법체류율을 보여, 아세안 10개국 평균 24%의 불법체류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아세안 4개국의 높은 불법체류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법체류율 수치가 높은 이유는 태국의 지나치게 높은 불법체류율의 영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아세안 4개국 가운데 태국을 제외한 3개국의 불법체류율은 모두 한자리수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세안 6개국 사이에도 국가별로 불법체류율에 적잖은 편차가 존재한다. 캄보디아는 전체 국내체류자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율이 평균 9% 정도인 반면, 필리핀은 24%, 라오스는 23%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법체류율을 기록하였다.

〈표 7〉 아세안 국가 출신 외국인 국적별 불법체류율¹⁾(2010-2018)

국적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²⁾
10개국 전체	19%	19%	23%	22%	25%	26%	25%	25%	36%	24%
6개국 전체	17%	17%	21%	20%	18%	17%	16%	17%	19%	18%
베트남	15%	16%	21%	23%	21%	19%	19%	19%	21%	19%
필리핀	24%	25%	32%	27%	24%	22%	20%	20%	22%	24%
인도네시아	15%	15%	16%	16%	15%	16%	15%	17%	17%	16%
캄보디아	9%	8%	7%	7%	8%	8%	8%	10%	13%	9%
라오스	7%	18%	22%	25%	37%	30%	24%	26%	22%	23%
미얀마	28%	18%	14%	10%	10%	8%	8%	8%	9%	13%
4개국 전체	25%	27%	34%	32%	42%	50%	48%	41%	65%	40%
태국	28%	31%	28%	37%	47%	56%	56%	45%	70%	44%
말레이시아	7%	7%	6%	5%	4%	4%	5%	11%	17%	7%
싱가포르	1%	1%	1%	1%	1%	1%	0%	1%	1%	1%
브루나이	1%	5%	1%	1%	2%	2%	1%	1%	4%	2%

주: 1)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수/국적별 국내 체류자수.

2) 2010~2018년 평균.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

이번에는 향후 새로이 한국과 상호 사증면제를 고려하는 아세안 6개국 국민들의 불법체류율을 전체 외국인의 불법체류율과 비교하였다. <표 8>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의 국내체류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을 전체 외국인과 아세안 6개국 출신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전체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11%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 6개국 출신 불법체류자 비율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기준으로 16.8%를 기록하여 아세안 6개국 출신 불법체류자 비율이 전체 외국인의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6개국 국민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미얀마(8.3%)와 캄보디아(10.0%)는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낮은 불법체류율을 보였지만, 라오스(26.2%)와 필리핀(20.4%)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불법체류율을 보여, 아세안 6개국 사이에도 편차가 큰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국의 불법체류자가 전에 불법체류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국가간에 더욱 큰 편차를 보였다.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2.6%인 반면, 라오스(0.1%)나 미얀마(0.8%) 출신 불법체류자 비율은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1% 미만을 보였다.

<표 8> 아세안 6개국 국민의 국내 불법체류 현황(2013-2017)

(단위 : 명, %)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체류외국인 수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A)			183,106	208,778	214,168	208,971	251,041
- 불법체류 외국인 비율			11.6	11.6	11.3	10.2	11.5
아세안 6개국 불법체류자 (B)			50,819	52,029	51,634	52,344	58,366
국내체류 아세안 6개국적자 (C)			254,681	285,670	301,695	323,403	346,774
- B/A			27.8	24.9	24.1	25.0	23.2
- B/C			20.0	18.2	17.1	16.2	16.8
캄 보 디 아	불법체류자(D)		2,330	3,115	3,556	3,886	4,715
	국내체류 캄보디아인(E)		31,986	38,395	43,209	45,832	47,105
	- D/A		1.3	1.5	1.7	1.9	1.9
	- D/E		7.3	8.1	8.2	8.5	10.0
인 도 네 시 아	불법체류자(F)		6,723	7,237	7,269	7,181	7,626
	국내체류 인도네시아인(G)		41,599	46,945	46,538	47,606	45,328
	- F/A		3.7	3.5	3.4	3.4	3.0
	- F/G		16.2	15.4	15.6	15.1	16.8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라 오 스	불법체류자(H)		212	328	297	279	320
	국내체류 라오스인(I)		835	898	1,004	1,146	1,221
	- H/A		0.1	0.2	0.1	0.1	0.1
	- H/I		25.4	36.5	29.6	24.3	26.2
미 얀 마	불법체류자(J)		1,285	1,603	1,591	1,841	2,060
	국내체류 미얀마인(K)		12,678	15,921	19,209	22,455	24,902
	- J/A		0.7	0.8	0.7	0.9	0.8
	- J/K		10.1	10.1	8.3	8.2	8.3
필 리 핀	불법체류자(L)		13,029	12,814	12,358	11,295	11,954
	국내체류 필리핀인(M)		47,514	53,538	54,977	56,980	58,480
	- L/A		7.2	6.1	5.8	5.4	4.8
	- L/M		27.4	23.9	22.5	19.8	20.4
베 트 남	불법체류자(N)		27,240	26,932	26,563	27,862	31,691
	국내체류 베트남인(O)		120,069	129,973	136,758	149,384	169,738
	- N/A		14.9	12.9	12.4	13.3	12.6
	- N/O		22.7	20.7	19.4	18.7	18.7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2014년 이후 국적별 불법체류자 수).

요약하면, 현재 아세안 국가 출신의 국내 불법체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미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사실은 향후 해당 국가로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기존의 동향인 국내 불법체류자와 정보를 교환하며 새로운 불법체류자로 정착할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향후 아세안 6개국과 사증면제를 추진하면서 우려와 반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비록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더라도, 아세안 6개국과의 사증면제가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보장하고, 이것이 사증면제로 인한 불법체류자 증가보다 더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 예상된다면, 對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향해 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증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불법체류자 증가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국가가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을 확신시키는 대응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이 불법체류자 증가를 우려하면서 안보위협을 호소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사증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V. 결론: 신남방정책을 위한 이민정책 개선 방향

신남방정책의 성공은 인적교류 활성화가 전제되어 있으며, 인적교류 활성화는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 사증완화를 필요로 한다. 사증완화에는 사증서류 간소화나 복수국적 확대와 같이 사증을 유지한 상태에서 편리성을 도모하는 방식도 포함되지만, 현재 정부의 논의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단기방문객에게 아예 사증을 면제해주는 과감한 방식 도입까지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아세안과의 일반여권 사증면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불법체류자 증가와 같은 부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오늘날 불법체류자 증가는 범죄자 혼란, 국민여론 분열, 인권유린, 불법체류자 밀집지역 형성을 통한 사회 불안 가중 등의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의 문제와 결부된다. 사증면제로 인해 불법체류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증면제 추진은 신중해야만 한다.

과거 국가 간 사증면제 사례를 분석하면, 사증면제 이후 항상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아세안 국가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법체류율을 보이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의 일반여권 사증면제는 불법체류자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對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 추진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증면제가 추진이 과연 타당한지, 사증면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을 통해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 사증면제는 추진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증면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안전장치는 함께 고안되어야 한다. 불법체류자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안보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對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사안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사전전자정보등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은 사증면제로 인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입국하는 사태를 예방할 목적으로 전자정보시스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을 구축하여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게 사전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사증 없이도 입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미국의 ESTA를 모델로 하여 2016년부터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유럽여행정보승인제도(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ETIAS)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에게 편리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면서

국가의 안보 보장하기 위해 개방적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형 사전전자정보등록시스템을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사전전자정보등록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제로 시스템이 구축되고 실용단계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의 세부 내용에는 2020년까지 한-아세안 상호방문객을 연간 1,5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된다(이재현 2018). 사전전자정보등록시스템 도입과 같은 고난도 과제가 2020년까지 완성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신남방정책의 조속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차선책으로, 국가 간 완전한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기 앞서, 한시적으로 양국 간 사증면제를 실험해 보는 것도 신중한 접근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019년에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기념하여 6개국과 한시적으로 상호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시행한다거나, 2019년 한-필리핀 수교 70주년, 2020년 한-캄보디아 수교 50주년 등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의 특별한 기념연도를 기회로 부분적 사증면제를 실험해 보고, 이 시기에 관찰되는 부작용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한-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 추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남방정책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이 모두 큰 관심을 기울이며 기대하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많은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민정책적 측면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민정책은 외국인의 유입을 통제하는 방어적 기제를 넘어,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을 위한 이민정책 변화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의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추진한다면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부작용을 마주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 강동관. 2015.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15-14.
- 법무부. 2018. 2018교정통계연보.
- _____. 2019a. 2018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
- _____. 2019b.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 _____.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0~2018년 각연도.
- 오정은·강동관·김경미·이기현·이원웅·조경엽·황진영. 2016. 한·중 일반여권 사증면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對중국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전략 연구. 외교부.
- 오정은·강동관·신지원·이상림·이승복·정기선. 2011.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 IOM이민정책연구원.
- 오정은·김석호·백용훈·이원웅·정정훈. 2019. 아세안 6개국과의 일반여권 사증면제 추진 필요성 및 구체 시행방안. 외교부.
- 이원식·윤문길. 2009. 방한 사증제도 개선과 중국인 불법체류 파급 효과분석. 서비스마케팅저널 2(2), 41-55.
- 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8.01.24.
- 차용호. 2015.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최은하. 2016.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에 관한 연구: 외국인 범죄율, 무사증 제도,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0(3), 227-25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
-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
- 통계청 kostat.go.kr.

● 투고일: 2019.07.30. ● 심사일: 2019.07.30. ● 게재확정일: 2019.08.08.

A Study on Security Threats due to the Visa Waiver for Citizens from ASEAN Countries as Part of New Southern Policy of South Korean Government: Focusing on the Increase of Irregular Immigrants in Korea.

Oh Jungeun (Hansung University)

These days,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the ROK) is pushing a new diplomatic policy called the New Southern Policy,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reliance on four powerful countries surrounding the ROK-the United States, China, the Russian Federation and Japan. As part of this new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implementing the visa waiver between the ROK and ASEAN countries, expecting to multiply human mobility between the two parties. However, it is apprehended that the visa waiver increase irregular immigrant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irregular immigrants may threaten the Korean security as disturbing the labor market order by illegal foreign workers and/or as arousing anti-immigration sentiments among the general public.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is, the visa waiver does not always increase irregular immigrants. Nevertheless, Korea-ASEAN visa waiver need to be careful when we consider the wage gaps between the ROK and some ASEAN countries. As progressing visa waiver, the Korea government needs to prepare security measures such as Advanced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or to advance it step by step, testing and responding visa waiver program temporarily.

<Key words> New Southern Policy, Irregular Immigrant, Visa Waiver, Security,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제주 예멘 난민사태와 인간안보: 사회통합방안을 중심으로*



석인선

주저자 동아대학교
(sis2491@dau.ac.kr)



황기식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kshwang@dau.ac.kr)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제주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촉발된 난민관련 논쟁과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통합의 방향을 인간안보 차원에서 제시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사태가 야기되었다. 예멘 난민사태는 '난민문제'로 파악됨으로써, 심사결과는 난민 신청자 484명 중에서 2명만 난민 인정이 되었다. 정부 입장은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가 아닌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국내 내부적으로도 난민 인정과 관련한 찬반 입장이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멘난민문제에 있어 우리 사회는 '난민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고,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제주 난민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와 유사한 난민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다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안보 개념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난민문제는 일시적인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법·제도와 정책을 미연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전제는 ‘난민의 문제’ 입장에서 인간안보차원에서의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인간안보, 제주 예멘난민사태, 난민법, 난민협약, 사회통합

I. 문제 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제주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촉발된 난민관련 논쟁과 갈등을 인간안보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려는데 있다.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예멘인 500여 명이 들어와 난민신청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난민문제가 이슈화 되었다. 2018년 12월 말 난민신청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국내 난민과 관련된 문제로 한 동안 사회적 의제화가 진행되었다.¹⁾ 대표적인 의제로 예멘 난민 수용과 관련된 ‘찬반논쟁’과 더불어 ‘진짜 난민’ vs ‘가짜 난민’ 진위논쟁 등을 들 수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난민 수용과 관련해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3.4%는 난민신청자들은 취업 등 다른 의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라고 답하였다(오승진 2018, 391). 이렇듯 제주 예멘 난민사태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2018.6)에 ‘난민법 폐지’ 청원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은 1992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내적인 이행조치로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때부터 한국은 국내법상 난민을 수용하게 되는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²⁾ 난민의 점진적인

1) 최종적인 결정은 예멘난민 신청자 484명 중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출국자) 1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민신청자 가운데 0.41%만이 난민으로 인정된 것이며, 다행스러운 것은 출국자 14명을 제외하고 전체의 87.7%에 일단 체류를 허가하는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484명 중 인정률 ‘0.41%’.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4426.html>.

증가세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2012년 2월 10일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였다.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을 통해 난민심사 및 난민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이전까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조항을 추가해 난민을 심사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석인선 2019), ‘난민법’을 통해서 난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난민신청자의 개념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체류에 관한 일정한 보호를 부여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였으며, 난민의 처우를 개선한 것이었다(오승진 2018, 390).

난민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멘 난민사태로 빚어진 사회적 여론의 갈등은 정치화 과정으로 발전하였다. 2018년 6월 말에서 7월 25일까지 국회에서는 그 당시 여론에 편승하여 난민의 수용을 제한하는 8개의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한편 법무부에서도 2018년 6월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난민법의 개정 계획을 밝히고 추진해 왔다. 2019년 발표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심사의 기회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등 관계기관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³⁾ 이렇듯 예멘 난민사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난민 반대여론)가 정치화로 진행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⁴⁾

예멘 난민에 대한 수용성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에 민족공동체라는 의식과 논리가 지배적인 담론으로 아직까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난민이라는 ‘낯선 타자’에 대해 차별과 배제의 매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은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난민문제가 되면서 사회적 갈등의 존재로 피동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 표출된 논쟁과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통합 방향을 인간안보의 차원에서 모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난민에 대한 정의 및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난민과 인간안보의 상관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예멘난민사태의 진행과정과 쟁점들을

2) 당시에 난민에 관한 제도가 있었을 뿐 실제로 그때부터 난민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96건의 난민신청이 있었으나 신청자들은 모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그 신청이 거부되어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으며, 일부는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2001년에 처음으로 1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후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오승진 2012, 92).

3) 난민 심사 받을 기회·자격 축소... 유관기관 “헌법·국제협약 위배.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4582&code=11131800&cp=du>

4)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난민심사 제도가 난민들의 입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불신을 가지고 있고,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적인 난민신청을 유발하고 있다는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불신이 서로를 강화시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진 것이다(송영훈 2018, 194).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예멘 난민과 관련된 논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난민문제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인간안보 차원의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현재 난민문제는 국제법상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⁵⁾ 1951년의 난민협약은 2차 대전으로 본국을 떠난 난민이 강제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으며, 1967년의 난민의정서는 난민협약의 난민 정의에서 규정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의 결과라는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난민의정서는 난민협약이 지녔던 시간적·공간적 제약성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난민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국적국을 떠난 자”로 규정하고 있다(오승진 2018, 393-394).⁶⁾

한국은 1990년대 국가경쟁력 강화와 맞물려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1993년 12월 출입국 관리법상 난민조항의 신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난민보호의 의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5)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른다. 난민협약에서는 조약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간적 제한은 1967년에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로 보완되었다. ‘난민의정서’는 독립적인 문서로 1951년 협약 당사국이 아니라도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의정서의 체결국은 협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난민에게 협약의 시간적, 지리적 제한 없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된다. 한국은 1992년 11월 11일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여 1992년 12월 3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1993년 3월 3일에 조약 제1166호로 국내적으로 시행하였다. 출처: 유엔난민기구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3004.html>

6) 난민협약은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체결국이 난민을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 없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제3조), 종교의 자유(제4조), 난민이 체결국에서 3년간 거주 후 상호주의 면제(제7조)를 규정함은 물론, 난민의 사법상의 권리, 난민의 직업(제3장) 및 복지(제4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난민협약이 난민에게 부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보호는 체결국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오승진 2018, 394).

나타났다.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환경 하에서 국가주권보다는 보편적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우리 사회는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아시아 최초 독립된 난민법을 2012년 2월 제정하면서, 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진척되어 왔다. 그러나 난민법이 제정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현실적으로 난민에 대한 적극적 수용보다는 방어적 수용의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1994년 7월부터 시행되었지만, 2001년에 와서 처음으로 1명의 난민이 인정되었고 2018년 7월까지 현재 855명만이 난민인정을 받았다.⁷⁾ 한국은 2018년 누적 난민 인정률이 4.0%에 머물고 있어 OECD 평균 30%의 난민 인정률에 비하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예멘 난민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난민에 대한 정의 및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간안보와 난민 간 상관성을 통해 인간안보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난민의 정의와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난민(refugee)은 전쟁, 기아, 재해 등으로 곤경에 빠진 이재민 또는 곤경을 피하여 원래의 거주지를 떠나 대피하는 피난민으로서 거처와 식량 등 구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난민’이란 일반적 의미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구호 등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권지윤 2018, 83).

난민협약 제1조 A(2)에서는 난민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은 단순히 개인적 사유나 경제적인 문제 등의 이유가 아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하였거나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손주희 2017, 238).

우리나라 난민법에서는 유엔의 난민협약에서 제시된 정의를 직접 인용하면서 ‘난민’을

7) 2018년 6월 말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는 4만 470명이다. 이 가운데 2만 361명에 대한 심사를 끝냈는데 849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률이 4%로 극히 낮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심사대상자의 약 7.6%인 1550명에 지나지 않는다(권지윤 2018, 84).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난민법 제2조 1호)”으로 비교적 자세히 정의하고 있다(오승진 2018, 396). 이로써 난민법은 난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난민신청자의 개념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체류에 관한 일정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였으며, 난민의 처우를 개선하였다(오승진 2018, 390). 다만 난민지위 인정을 위하여 어떠한 국내 절차를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개별 체약국은 자국의 행정과 법적 구조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절차는 난민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인정 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받게 된다. 신청은 출입국장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입국 후 체류 중에 할 수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 난민 인정 심사 회부 결정을 받아야 일반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⁸⁾ 1차 난민인정 심사 결과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바로 관할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하면 관할법원에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위 재판에서 난민신청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난민신청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난민신청자(비호신청자)와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먼저, 난민신청자(비호신청자: Asylum seeker)는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지만 그에 대해 결정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 난민 인정자(Recognized Refugees)는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비호국으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셋째, 인도적 체류자(Humanitarian Status Holder)⁹⁾는 난민은 아니라고 불인정처분을 받았지

8) 난민인정심사는 난민 협약 상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는 ‘난민’에 대해 면접과 사실조사를 거쳐 진술의 신뢰성 박해가능성 대안적 피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난민법 제8조에 따라 난민인정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난민협약에서 정하는 보호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약국이 협약 상 난민요건의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형식이나 절차는 각국의 국내법으로 정할 문제라는 의미다(정금심 2018, 652).

만, 인도적 사유로 공식적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2. 난민 문제와 인간 안보의 상관성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난민의 발생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활동의 역사도 오래되었다.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제네바협약(난민협약) 체결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 채택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의 보완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난민위기는 해결되기 어려운가? 지금도 난민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난민이 처한 인도적 위기는 더욱 암울해져 가는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의 체계적 지원과 보호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난민은 ‘정착(거주) 공간의 상실’을 의미한다. 난민은 난민협약이 규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부터 자유를 찾아 떠도는 ‘이방인’이라 할 수 있다. 자의든 타의든 자신이 직면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을 탈출한 사람이 난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난민은 태생적으로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난민의 문제’와 ‘난민문제’로 형상화되어 표출되고 있다. ‘난민의 문제’는 난민의 인간존엄과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자연인으로서 난민 개인의 실존적 문제다. 난민은 그들이 기존 공동체로부터 이탈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간존엄은 인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정착지원을 하는 것까지 난민 개인이 인간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난민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반면, ‘난민문제’는 난민의 발생과 이동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난민이 더 이상 피동적 존재가 아닌 행위자로서 정치과정에 영향을 받고 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난민문제’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포용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회의 문제인 것이다(송영훈 2018, 191-192). 국제사회에서 ‘난민의 문제’와 ‘난민문제’는 난민위기의 해결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문제’보다는 ‘난민문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난민을 국가 내 새로운 안보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9) 인도적 체류자란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체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김예경 외 2018, 10).

난민문제가 정치화 과정에서 고려해야하는 안보화는 ‘사회안보’와 ‘인간안보’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사회안보’와 ‘인간안보’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도 어떠한 방향성을 지닐 것인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사회안보’는 난민문제를 개념화하기에 적절하며, ‘인간안보’는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제시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보’는 “한 사회가 변화하는 조건과 실재적·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예컨대 언어, 문화, 조직, 종교적·민족적 정체성, 관습 등 전통적 양식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사회안보 개념은 이주와 난민과 같은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 내부의 변화 및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협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이병하 2018, 39). 이에 비해 유엔개발계획 199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안보란 ‘지속적인 기아, 질병, 범죄, 억압으로부터의 안전이며, 가정이나 직장 등 사람들의 일상을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라고 규정하였다(이혜정 외 2013, 7). 확대된 안보 개념 중 하나인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안보의 결핍’ 그 자체가 난민의 원인이 되며, 난민의 불안정성 역시 안보의 부재 상태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마스타트(Hammerstadt, 2014)¹⁰⁾는 ‘포용적 안보화(inclusive securitization)’라는 개념을 통해 난민 문제의 근원을 인간 안보로 접근하면서 난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인간 안보 개념을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병하 2018, 38).

2001년 유엔 인간안보위원회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안보는 모든 인간 생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을 보호하는 것으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개선하고 인간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인간안보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심각하고 개별적인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개인에게 생존과 존재 또는 존엄성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치·사회·환경·경제·역사·문화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전학선 2016, 70).

인간안보의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에서 제기한 이래, 국제사회의 국가주권과 양립하면서 전이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초기 국제사회는 인도적 개입을 활용하여 국가주권의 약화를 도모하였으나, 2001년 9·11테러는 국가주권의 강화로 선회하면서 인간안보의 개념 역시 변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초기 유엔개발계획이 제기한 인간안보는 보편성의 견지에서 전 세계 모든 인간을 안보대상으로 경제안보(결핍으로부터 자유)와 정치안보(박해로부터 자유) 등에 중점이 있었지만, 차츰 인간안보는 저개발국가의 국민들 중 취약계층에 주목하고 이들을 최우선 안보 대상으로 간주하는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후기 인간안보 개념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인간안보가 국가주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10) Anne, Hammerstadt 2014 참조.

의제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이혜정 외 2013).

인간안보는 1990년대 국제사회에 내전과 난민문제가 증가하면서 빈곤과 기아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면서 부각되었다. 21세기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인간안보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난민 문제의 경우 취약한 생존권에 직면한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해 주는 국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안보에 근거해 난민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이상주의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및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에도 방기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빚어진 유럽의 난민위기는 급증하는 난민 문제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이후 유럽사회는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면서 이로 인한 유럽적 정체성이 영국의 브렉시트로 훼손되었으며, 유럽 내부적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충돌하며 사회문제로 일상화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8년 제주 예멘난민사태로 인해 난민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등장하면서,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난민 보호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인간안보는 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난민문제는 주권적 문제가 아닌 인도주의에 바탕한 최소한의 인권문제에서 바라 봐야 할 것이다. 인간안보에 근거한 최소한 난민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상호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배려의 공간을 확대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Ⅲ. 제주 예멘 난민사태의 현황과 문제점

1. 제주 예멘 난민사태의 진행과 결과

2017년 12월부터 대부분이 미혼 남성인 약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관광 목적일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의 가장 큰 섬인 제주도에 도착했다. 2017년 12월 제주-쿠알라룸푸르 직항 노선이 생긴 뒤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했다. 이들 예멘 난민은 같은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체류 기간이 지나자,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사증(무비자)¹¹⁾ 지역인 제

11) 무사증제도란 2002년부터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한 제도이다. 다른 말로 무비자 입국 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권지윤

주로 관심을 돌린 것이다.

2018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예멘인 561명이 무비자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찾았으며, 549명(남성 504명, 여성 45명)이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 4월 30일 이들에게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 바 출도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제주를 떠나거나 가족재결합 및 치료 등의 사유로 출도가 허용되어 최종적으로 484명의 예멘인이 제주도에서 난민심사를 받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예멘인이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자 정부는 2018년 6월 예멘인에 대해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중지시켰다(오승진 2018, 390).

2018년 여름 예멘인 500여 명의 난민신청은 우리 사회 난민 이슈를 부각시켰으며, 이는 난민과 관련된 수용 여부 논쟁과 더불어 ‘진짜 난민’ vs ‘가짜 난민’ 논쟁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였다. 예멘인 난민의 수용여부와 관련해 국민 여론은 대다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난민 진위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 조사 응답자의 43.4%는 이들이 취업 등 다른 의도를 지니고 들어 왔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라고 응답한 것이다. 응답자의 70.2%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하였다.¹²⁾ 이러한 예멘 난민 이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까지 등장하면서, 7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난민법 폐지 청원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 난민문제가 정치화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와 동시에 2018년 7월 국회에서는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난민 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난민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를 반영한 난민법 개정안을 2019년 법무부에서 발표하면서 난민 심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예멘 난민사태로 빚어진 난민 문제는 난민심사 판정이 종결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20여 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인 다문화정책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2012년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난민법을 도입하며, 2013년 효력이 개시된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 난민 이슈가 이렇듯 뜨겁게 떠오른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난민 문제는 아프리카 난민촌에 거주하는 먼 나라의 이야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과 밀접한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³⁾

2018, 86).

12) [예멘 난민 인식 ‘난민 아니다’ 43.4% vs ‘난민이다’ 32.8%]. 출처: <http://www.news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54>

13)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UN 협약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국제적 조약으로서의 구속력을

예멘은 4년 가까이 지속된 내전으로 수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국민의 2/3 가량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고, 이 중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올해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하였지만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만 양산한 것이다.¹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에 집단으로 들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결과는 난민 인정에 있어 소극적, 혹은 보수적인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취재·보도와 관련해 본국에서 납치·살해 협박을 받은 언론인 2명이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됐고, 412명은 1년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불인정’으로 결정된 56명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이 언론인 출신으로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보도해 후티 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 협박 등을 당했고,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9월14일 1차 결정 때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 10월17일 2차 결정 때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 불인정 34명 등을 포함해 지난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가 끝났다. 최종적으로는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출국자) 14명이다. 결국 예멘인 난민신청자 가운데 0.41%만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¹⁵⁾

출국자 등 14명을 제외하고 전체의 87.7%에 일단 체류를 허가하는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취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이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가지게 되었다. 난민법은 난민 지위를 신청할 권리는 보장하지만, 그렇다고 망명 허가를 받는 것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난민법은 ‘농르폴망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록 정부가 난민 지위 신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송환되었을 때 실질적인 신변의 위협이 따를 경우에는 송환 조치를 할 수 없다.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서 지낼 곳을 찾지 못하다라도, 앞서 언급한 예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강제 송환할 수는 없다.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14) 예멘은 1990년 5월 이전까지만 해도 북예멘과 남예멘으로 나누어진 나라였다. 북예멘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오스만 제국에서 1918년 독립했다. 남예멘은 영국 통치하에 있다가 1967년 소련의 도움을 받아 독립했다. 남예멘과 북예멘은 국경 문제로 잦은 무력 분쟁을 벌이다 20세기 말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상호 합의 하에 협상에 의한 통일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치적 갈등은 이어졌고 국가는 여러 세력에 의해 분열되어 현재까지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현재 예멘에서는 알카에다와 IS 등이 잦은 내전으로 불안해진 치안을 이용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남예멘 분리주의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군 등도 이 비극적이고도 치열한 싸움에 합세했다. 2014년 내전으로 국가 불안정 가속화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세가 개입하면서 곳곳에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다.

15) 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484명 중 인정률 '0.41%'.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4426.html>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난민인정자가 2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했듯이, 법무부 등 관련 당국은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5년 4월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을 발표해,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고 강제 귀환을 중단해줄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언론인 2명 외에 ‘내전이나 강제징집을 피해’ 입국한 사람들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 5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유엔 기준에 비춰보면 너무 좁은 해석으로 보인다.¹⁶⁾

이로써 지난해 말 집단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었다. 그러나 유례없던 예멘인 대거 입국 사례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당혹해 했으며,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난민문제에 대해 분열된 입장을 보였다. 또한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우리나라 난민정책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제주도는 무시중(무비자) 지역인 데다 국제 관광지로서 항공·해상 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앞으로 계속 난민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반드시 제주도만이 아니라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는 한 난민신청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제주 예멘 사태를 둘러싸고 전개된 여러 논란과 혼란을 되짚어 보면서 향후 난민법과 난민판정절차, 난민(인정자,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 등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국민들이 난민과 난민문제 및 난민의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주 예멘 난민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

예멘인들의 제주로의 유입은 난민문제를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는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인들이 난민자 개인 및 난민 문제, 난민법·제도적

16) 예멘 난민 ‘2명’뿐, 국제기준 맞게 더 열린 자세로.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74481.html>

올해의 난민인정률 0.4%에 대해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인정률 0.4%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밝힌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38%)에 비하면 크게 낮고, 한국의 누적 난민 인정률인 3.9%(2018년 10월 기준)와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가 아닌 이들에게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즉 예멘인들의 주요 사유인 내전과 징집 회피는 난민 지위인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장은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면서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률 0.4%, “너무 보수적” vs “가짜 난민” 논란 가열.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GNQD3U8/GK0109?utm_source=dable

장치와 난민 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난민의 대량 유입에 따라 우리 사회가 그 당시 및 이후 직면하게 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 입국에 대한 찬반 논란은 제주도민과 일반 국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 것이다.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 입국을 반대하는 집회뿐만 아니라, 입국을 찬성하는 집회들이 도시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난민 입국 문제를 둘러싼 찬반집회는 제주도를 넘어서 서울에서도 개최되었다. 난민 입국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안전이 최고다”, “무사증을 폐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들은 제주로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이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테러의 위험성”이 염려된다며,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선 재사회화 교육이 필요한데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난민법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폐기하는 것이 맞다”며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반면 ‘난민 반대 시위’를 반대하는 집회, 즉 난민 입국에 찬성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종차별을 반대 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난민 보호를 주장했다. 찬성측에서는 한국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의해 난민신청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⁷⁾

〈표 2〉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리

난민 수용 : 찬성	난민 수용 :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입 있는데 보호율은 EU 6분의 1에 불과(한국 11.5%/EU 60.8%)* • 외국인 범죄율 우려하지만 내국인 절반 수준(2016년 기준 2.14%로 내국인 3.9%) • 부정적 인식개선-사회통합 관점에서 논의 필요(다문화 사회통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차별, 일자리 경쟁 등 갈등 소지 뚜렷 • 유럽 소요사태 반발-감성에 호소할 일 아나(유럽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 불법체류자 관리시스템 등 충분한 보완 필요**

* 난민보호율 =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전세계 난민보호율 41.3%)¹⁸⁾

** 난민 수용 반대 입장에서는 난민 및 이주문제를 인본주의적 사회통합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보건, 사회, 안보정책의 범부에서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¹⁹⁾

17) 제주 예멘: 난민 둘러싼 찬·반 여론 갈등으로 확대 우려. 출처: <https://www.bbc.com/korean/news-44672142/>, 70m 사이로...‘예멘 난민’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가 열렸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336.html

18) 제주 예멘 난민 수용-찬성.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S22237IU4>

둘째, 국내 난민(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둘러싼 논란이 야기되었다.

한국에서 발생한 ‘이슬람 혐오(이슬라모포비아: Islamophobia)’ 현상은 유럽 등 서방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우선 유럽과 다르게 한국은 지금까지 테러의 직접적인 위협에 처한 적이 없다. 하지만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이슬람 혐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예멘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슬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도 급속히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제주난민 문제와 더불어 이슬람에 대한 공포 내지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 기사들과 인터넷 기사 및 댓글들이 확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8년 12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밝혔다(11월 8일). 국내의 인종차별 현황에 대한 20개의 쟁점이 담긴 이번 보고서는 특히 지난 4~5월에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 500여 명을 두고 한국 사회가 ‘인종주의적 혐오’와 ‘인종차별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혐오’ 여론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²⁰⁾ 실례로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한 제주도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멘인과 무슬림을 비판하는 게시 글이 쏟아졌다. 또한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원 글에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기도 했다.²¹⁾

셋째, 난민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지난 12월 14일 제주 예멘난민들에 대한 심사에서 난민인정은 불과 2명 만 받았다. 인정률이 너무 낮다는 논란이 야기되었다. 난민인정률이 OECD국가의 평균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아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 인도주의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낮게 나온 인정률은 제주도민과 일반 국민들의 난민수용 반대 정서에 맞춘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문제는 낮은 인정률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난민인정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해당 여부의 심사는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오기 전까지 처한 구체적 상황에 관한 사실의 확정, 그리고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한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사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난민신청시기, 입국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19) 제주 예멘 난민 수용-반대.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S22261V72>

20) 제주도의 예멘 난민.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7711

21) 제주 예멘: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현실. 출처: <https://www.bbc.com/korean/news-44632261>

가능하지만 난민신청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에 지나친 무게가 부여되거나, 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불분명한 사유로 배척되기도 한다. 난민인정의 명확한 기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박영아 2015, 14).

넷째, 난민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도출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별도의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했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 뿐만 아니라 심사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주거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현재 난민신청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 난민지원센터가 유일하다. 제주도에는 난민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없어 모텔과 여관방 하나에 3~4명이 함께 지내는 실정이다. 또 숙박비를 더는 감당하지 못해 곧 거리에 나올 상황에 놓인 이들도 있다. 또 예멘 난민신청자 중에는 여성(45명)과 7세 미만 아동(9명)도 있으며, 곧 출산을 앞둔 산모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제주의 시민, 천주교 단체의 도움으로 임시로 머물 곳은 찾았지만 앞으로 장기간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섯째, 생계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소장은 예멘인들은 난민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생계지원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난민지원법은 난민신청자들에게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정부가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43만 원가량이다. 난민인권센터가 조사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난민신청자 1만 3295명 중 3.2%인 436명만이 생계비를 받았다. BBC 코리아가 법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 6월 27일 기준으로 제주도 예멘인 중 생계비를 받은 난민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²²⁾ 난민법 시행령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신청일부턴 6개월 동안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보 부족과 서류 구비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는 이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난민심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난민신청자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난민심사를 위한 인력부족으로 재빠른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예멘인 1명을 대상으로 난민심사관 1명, 보조 인력 1명, 전문 통역인 1명 등 총 4명이 매달려 6시간가량 난민심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지난 6월 법무부는 직원 6명을 추가 배치했으며 법무부 소속 아랍어 전문 통역직원 2명도 추가 배치했다. 인력 추가 배치로 제주출입국청 난민 담당자는 기존 4명에서 총 10명(심사 업무 5명, 아랍어 통역 4명, 심사 지원 업무 1명)으로 늘었다.

22) 제주 예멘: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현실. 출처: <https://www.bbc.com/korean/news-44632261>

이렇게 난민심사에 속도를 높였으나 그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는 데에는 6개월이 걸렸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심사 결과를 지난 9월과 10월, 12월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눠서 발표했다. 난민 유입에 따른 법제도,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들과의 행정처리에 있어 통역의 문제도 제기되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대규모 집단적으로 유입되어 오는 난민들의 일상적 필요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리를 함에 있어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위장난민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난민임을 파악, 조사하는데 있어서 통역 담당관의 부족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²³⁾

이러한 여섯 가지 문제점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우리 사회 ‘낮선 타자’에 대한 인권 실종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난민 문제가 난민의 문제를 압도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IV.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방안

1. 인간안보의 확대 적용

제주 예멘 난민사태는 우리 사회 내 배타적 민족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게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낮선 타자’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행동도 보였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인 ‘집단사고(group thinking)’를 표출한 것이다.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난민이 유입되지 않았다거나 난민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별다른 통제 없이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낮은 난민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유입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의 전원이 무슬림인 탓에 유럽의 난민 사태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반이슬람, 반난민 여론을 불러일으켰다(서윤호 2018, 36). 이러한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선입견은 빈약한 정보 탐색과 유리한 정보만을 섭취하려는 선택적 편견으로 인한 집단사고와 문제정의 오류에서 야기된 것이다.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선택된 정보를 보면,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 담론부터 취업을 위한 경제적 난민으로 가짜 난민 담론 및 이슬람의 과격주의와 테러주의 담론 확장되고 있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멘 난민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이들 난민은 예멘의 내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23) 난민인정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이다. 현행 면담 절차에 있어서 통역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옥영혜 2015, 192).

경제적 결핍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 국적국을 떠난 최악의 인권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난민의 수용 여부 판단에 이들의 인권적 가치보다는 취업이나 징집을 피해 이동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난민 문제에 문제정의 오류가 선행된 것으로 보인다.

난민이 안보의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안보의 관점에서는 인간안보의 결핍 그 자체가 난민의 원인이 되고 있다. 1994년 유엔개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안보는 첫째, 인간 개개인이 기아·질병·억압과 같은 고질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둘째, 가정·직장·사회에서의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고통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정의되어져 있다. 즉 인간안보는 전쟁, 박해, 질병, 기아, 빈곤 등으로부터 인간 개개인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이러한 인간에 대한 제반 위협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인간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²⁴⁾

이러한 인간안보 내용의 확대 적용은 '난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인간안보의 대부분이 인권과 연계되어 있어 보편적 인권개념은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인간안보는 난민으로 신청하려는 자에 대해 인권차원에서 수용국의 법과 제도적 장치에 부합되는 절차로 공정한 난민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쟁과 폭력 및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 자신이 속한 국가를 떠날 권리와 자유가 있는 반면, 새로운 국가에 정착할 권리까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경쟁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택할 권리는 주권국가의 문제로 간주되며 인간안보의 영역으로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인간안보는 난민이 기존의 공동체를 이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해 차별과 배제로 대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간존엄과 인권보호라는 명제는 인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송영훈 2016, 60).

따라서 난민 문제 해결의 선행 요인은 인간안보의 인간존엄성과 인권보호라는 인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의 권리를 난민에게 부여할 때 시작할 것이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통한 인간 본연의 선택적 권리와 주권국가의 인권보호라는 사명이 결합할 때 난민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24) 이에 따라 동보고서는 7가지의 인간안보 범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제안보, ②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식량안보, ③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건강안보, ④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환경안보, ⑤ 폭력·범죄·마약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개인안보, ⑥ 자신이 속한 가정·인종·조직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공동체안보, ⑦ 인간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정치안보 등이다(전학선 2016, 76-77).

2. 사회통합정책의 확대 적용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척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멘인들이 난민으로 정착하게 될 경우 이질적인 종교, 문화 등으로 인해 빚어질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상당한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난민법’을 제 정비하면서 사회통합문제를 위한 방안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법무부 박상기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예멘인들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지원 및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만을 받는 존재로만 남지 않고 그들의 역량을 발휘해 자립을 마련하여 재정 및 사회질서 안전 면에서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권지윤 2018, 103).

이러한 사회통합 노력은 이주자에 있어서 정당하지 못한 요구사항일수 있지만, 난민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는 상호성에 따른 수용의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리이자 존재가치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난민들의 사회통합이 빠를수록 경제적인 도움과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통합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는 특히 종교적 신념에 있어서는 존중될 수 있지만, 체재국의 사회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에의 편입에 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통합정책의 목표는 사회 혹은 국가의 모든 부분영역과 지역에서 주류사회의 정주민과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 사이의 기회 균등을 확보하고 보장하는 데 놓여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난민들의 개인적 역량을 주류사회와 대등한 수준으로 높여 주는 것이 관건이다. 즉 사회통합정책의 목표는 정주민과 이주민을 위한 지역적 생활조건을 가능하면 균등하게 하는 데 놓여 있는 것이다(허영식 외 2018, 8-9).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예멘 난민사태에서 보여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주거지원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기본적인 생계비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난민에 대한 이러한 사회통합정책은 역차별 논란을 낳을 수도 있지만, 난민들의 사회적·구조적·문화적 통합이 빠를수록 경제적 도움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통합정책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우리와 남을 나누는 차별과 배제, 배타적 의식에서 벗어나 난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여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권지윤 2018, 104). 나아가 우리사회는 2010년 이후 난민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난민문제가 단순히 인권 보호적 접근을 넘어

한국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을 시사한다(손주희 2017, 237).

V. 결 론

우리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들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전략들도 추진하여 왔다.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유럽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겠지만, 선제적인 정책적 노력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제주 예멘 난민사태와 같은 난민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부처들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추가되었다.

난민문제는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제도와 정책을 미연에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으며, 향후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도와 전략이 필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예멘 난민사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난민문제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은 난민문제를 회피할 수 없으며, 유입되어 오는 난민을 차단하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 예멘 난민사태는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은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난민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어떠한 제도적,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때이라는 것이다.

제주 예멘 난민사태는 우리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이 깊지 못하고 이해의 폭이 좁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제주 행정당국과 국민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였으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라졌다는 점은 아직 우리사회가 난민문제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프랑스나 독일 등과 같은 난민보호의 선두주자로 여겨지는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각국이 처한 행정현실과 사회인식에 차이가 있어 난민제도와 정책의 운영에 있어 다른 나라의 제도와 정책을 모방할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보호의 장기인 실효성 확보를 해서는 인적·물적으로는 난민심사 절차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보강, 난민신청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인 뒷받침과 함께 사회·문화·정책적으로는 단일민족국가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폐쇄성과 배타주의를 벗어나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강지은 2016, 154).

비록 제주 예멘 사태에서 보듯, 당장에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고, 법제도적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난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중·장기적 정책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난민 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지 못할 때, 그때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부터라도 세계적 이슈인 난민문제에 대해 법제도적 장치를 가다듬고, 난민의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포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무를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권지윤. 2018. 한국 내 예멘 난민이슈에 대한 이해. Muslim-Christian Encounter 11(2).
- 김예경 외. 2018. 난민유입대응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NARS현안분석 20.
- 박영아. 2015. 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월간 복지동향 204.
- 서유희. 2018. 존재/사건으로서의 ‘난민’. 오늘의 문예비평 11.
- 석인선. 2019. 한국사회 다문화현상의 이해. 부산: 석당.
- 손주희. 2017. 한국 체류 난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7년 공동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송영훈. 2018. 제주 예멘 난민 위기. 문화와 과학 96.
- 오승진. 2012.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57(2).
- _____. 2018. 한국의 난민 수용 관행과 방향에 대한 연구. 경희법학 53(3).
- 옥영혜. 2015. 한국의 난민정책, 재정착난민제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이병하. 2018. 한국난민 이슈의 정치화. 문화와 정치 5(4).
- 이혜정 · 박지범. 2013.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현형과 확산. 국제 · 지역연구 22(1).
- 전학선. 2016. 인간안보를 통한 인권보장 강화. 서울법학 24(1).
- 정금심. 2018.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 연구. 법조 729.
- 허영식 · 강현석. 2018. 난민문제와 난민정책에 관한 연구동향과 함의 :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8(1).
- Hammerstadt, Anne. 2014. The Securitization of Forced Migration. Qamiyeh, Elena Fiddian, Gil Loescher, Katy Long and Nando Sigona eds. The Oxford Handbook of Refugee and Forced Migration Stud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국민일보 www.kmib.co.kr
- 뉴스N제주 www.newsjeju.com
- 서울경제 www.sedaily.com

-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 유엔난민기구 www.unhcr.or.kr
- 한겨레 www.hani.co.kr
- BBC www.bbc.com

● 투고일: 2019.07.22. ● 심사일: 2019.07.26. ● 게재확정일: 2019.08.05.

Yemeni Refugees on Jeju Island and Human Security **- Focused on Social Integration -**

Suk Insun (Dong-A University)

Hwang Kisik (Dong-A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how to realize social integration at a human security dimension by grasping causes of controversies and conflicts in relation to Yemeni refugees who claimed asylum on Jeju Island throughout the year 2018. Though the Republic of Korea has an institutional apparatus for refugees as it legislated a refugee act in 2012 for the first time in Asia, Yemeni refugee predicament happened on Jeju Island in June, 2018. After screening Yemeni refugees as they were classified as “a refugee case”, only 2 of 484 asylum applicants were accepted as refugees. To those without 5 reasons of persecution in accordance to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refugee act, it is difficult to give refugee status, the government explained. This situation has led to internal controversy in South Korea as pros and cons caused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In this issue of Yemeni refugees, Korean society took a passive attitude towards ‘refugees’ problems’ only to reveal a ‘refugee issue.’ With this occasion of Jeju refugee case, it is understood that exclusive nationalism is rooted deep in the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similar refugee situations will be likely to occur. Therefore, ways of social integration to solve such refugee problems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an extended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is necessary. Second, divers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should extensively be applied. The refugee case is not a temporary issue but a

long-term task for law, institution and policy to be systematically prepared for to get rid of social conflicts. Here, in this matter, a prerequisite is an approach at a human security dimension for ‘refugees’ problem.’

〈Key words〉 human security, Yemeni refugees on Jeju Island, refugee act,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ocial integration

다문화인권교육을 통한 증오범죄 대응방안: 프랑스의 이민 2,3세의 증오범죄 사례 중심으로*



정은정

제1저자 동아대학교
(eunch72@naver.com)



김대중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daejungkim@dau.ac.kr)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이민사회가 정착된 유럽의 증오범죄 사례를 통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인권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오범죄는 일반범죄보다 피해의 정도가 크고 회복기간 또한 길다.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사회도 증오범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 이민배경 2,3세에 의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나게 했다. 평등에 집착한 프랑스식 다문화주의는 이민자를 경제적 소외계층으로 만들었고 마그레브 국가를 향한 식민지 프레임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게 했다. 범죄자 대다수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에 집중된 보도는 '이슬람포비아'를 생성했다. 이민자와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은 탈정치이념의 시민윤리가 실천될 수 있는 인권교육으로 발전해야한다. 이민자들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사회를 향한 분노를 가지지 않을 때 증오범죄는 예방될 것이다.

주제어 : 증오범죄, 다문화인권교육, 다문화정책, 인권, 차별과 편견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지구라는 물리적 공간은 세계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생물로 진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국가 간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고유문화 수호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된 오늘날은 다양한 인종, 종교, 이념의 충돌을 피해갈 수 없으며 이민 사회의 통합을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국가의 정책이 개인의 이념과 자유를 외면하더라도 국민은 국가를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다. 국가의 정책과 사회 환경은 모두에게 안락함을 제공할 수 없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개인과 집단은 테리라는 증오범죄의 형태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범죄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 유럽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테러리즘은 정치학, 경제학, 종교학, 심리학 및 미디어와 과학기술의 '메가 컨셉션'(mega conception)으로 볼 수 있으며 거대 문명의 '문명 콤플렉스'와 '실패한 근대화'라는 패배주의에서 나타난 야만적 폭력현상이다. 문명 간 충돌로 인해 '자기 파괴'를 행하는 것으로 문명 간 충분한 답론이 테러리즘의 종식을 가져올 수 있다(윤민우 2016). 또한 메가테러리즘¹⁾은 지구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 불평등, 사회적 균열, 문화적 획일화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등장한 종교적 근본주의 회귀로 인해 발생한다. 메가테러리즘을 촉발하는 종교적 근본주의는 '적'이 존재하고 '적'에 대한 승리로 종교적 구원을 얻고자 하기에 투쟁, 순교로 이어질 수 있다(구춘권 2005). 이슬람 근본주의는 반(反)서구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식민세력에 대한 과거 역사에서 이어진 현재의 투쟁이라 볼 수 있다.

테리는 단순한 범죄사건이 아니며 사건의 동기와 해결과정에서 인종, 종교, 국제관계 등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증오범죄를 대응하는 방안은 사건 이후 처벌이 주요하며 그 예로 중형주의(Severe Punishment Principle)를 들 수 있다. 중형주의는 '형벌의 강화 현상'으로 강벌주의(Punitivism)라고도하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벌의 포퓰리즘(Penal Populism), 형벌의 정치화(Politisierung des Strafrechts) 등으로 명명하기도 한다(안나현 2016). 이는 간편한 대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강한 법으로 구성원을 견제하고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테러리즘으로 이어지는 증오범죄 혹은 편견과 차별로 인한 범죄는 인식변화가 핵심이며 정책적 차원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1) 인명피해가 테러작전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최대한의 인명희생을 목표로 설정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로부터 자립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을 말한다(Muller 2003, 구춘권 2005 재인용).

테러리즘으로 확산되고 있는 증오범죄는 사회 안전과 다문화사회의 인종, 종교 등의 조화의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 다양한 편견 요소로 인한 차별을 막는 것이 우선이며, 이는 캠페인과 교육을 통한 '다름'에 대한 인식변화가 중요하다(이정주 2013).

김진희(2014)는 다문화정책의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 프랑스 등이 오늘날 겪고 있는 다문화주의 갈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 갈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교육의 방향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 실패론 선언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문화정책 회의론은 반(反)이민주의 정책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국가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동화와 통합, 타자화라는 측면에서 갈등을 촉발하고 있어 다문화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진희 2014).

2005년 프랑스 '방리유 소요사태'와 같이 이주민과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갈등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한다.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은 공화주의적 동화 모델의 기초를 유지하며 다문화적 인식과 시민 윤리의 결여로 문화갈등을 안고 있기에 다문화와 동화를 시민 윤리적으로 수용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장정애 2008).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집착이 다문화 사회통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정주하고자하는 이주민을 주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이민자에게 차별과 소외감을 갖게 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한국사회 또한 이민배경 2,3세의 증오범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 프랑스의 증오범죄는 이주민 1세대보다 자녀세대에서 범죄율이 높아진다. 이주민이 증가하고 자녀세대가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도 범죄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문화교육을 통한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정도희 2017).

국민과 사회에 차별 의식이 남아 있다면 혐오범죄(hate crime)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교육과 함께 소수집단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보장에 목적을 둔 시민단체와 민간부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인권교육은 차별로 인한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다(김수원 2009).

증오범죄와 관련한 앞선 연구는 증오범죄 발생에 따른 형사적 대응방안과 이슬람 종교 갈등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리즘으로 이어지고 있는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증오범죄의 용의자 대다수가 이민 배경 2,3세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들이 이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국가에 테러라는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원인을 이민사회의 '차별과 배제'에서 오는 소외감으로 보았다. 이민 2,3세의 성장과정에서 사회로부터 경험하는 소외감을 줄일 수 있다면 증오범죄의 발생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증오범죄 대응방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희생을 동반하는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증오범죄라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의 필수 요소로 교육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질화된 문화의 수용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보편적 시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으로 자리 잡아야할 것이다.

II. 증오범죄 이론과 프랑스 증오범죄 사례

1. 증오범죄의 개념과 원인

증오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으로 ‘아주 사무치게 미워하는 것’이며 테러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 감정이 표출될 때 나타난다. 증오범죄의 피해는 일반적인 범죄 피해보다 심리적 충격이 심각하여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사후(事後)에 그 증상이 악화된다. 회복기간 또한 적어도 5년 이상이 소요되어 일반범죄 피해자의 약 2배 이상이 걸린다(M. G. Herek et al 1997). 또한 ‘불특정한 사람’에 의한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증오범죄의 증가는 피해자를 사적 혼란과 공황 상태로 만들 수 있다(양문승 외 2008).

미국은 ‘증오범죄방지법’²⁾ 제정으로 증오범죄를 별도의 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증오범죄의 성립여부는 편견과의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판단하는데 첫째는 증오범죄의 확실한 성립조건으로 편견이 심하고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편견이 심하고 인과관계가 경한 경우로 편견과 범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증오범죄로 볼 수 있다. 셋째는 편견의 정도가 약하고 인과관계가 긴밀한 경우로 대부분의 증오범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넷째는 편견의 정도가 강하고 인과관계의 입증이 약한 경우로 사건의 상황에 따라 증오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진다. 이처럼 까다롭게 성립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증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기 때문이다(James B. Jacobs 외 1997).

미국의 증오범죄 개념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면, 인종, 종교, 피부색, 나이, 장애, 성적 지향, 출생지, 결혼 상태,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갖는 ‘일차 편견에 의한 범죄’와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 피해자가 증오의 감정으로 행하는 ‘이차편견에 의한 범죄’로 정의할 수 있다. 증오범죄는 개인적 원인과 가정적 원인, 사회적 원인으로 나타나며 자기혐오와 삶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고 이 감정이 ‘증오’의 이차적 감정으로 전이되었을 때 해소되지

2) 미국은 인종차별로 인한 폭력성을 방지하기 위해 1968년 ‘증오범죄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09년에는 증오의 범위를 종교, 신체, 정신적 장애, 성적체성, 성적 취향을 포함하는 법안으로 개정하였다.

못한 감정이 외부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양문승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여러 원인 중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증오범죄의 발생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 문화적 측면의 원인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는 사회적 불평등이다.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불평등,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불평등이 있다. 둘째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다. 미국이 편견의 정도에 따라 증오범죄를 규정하는 것에 나타나 있듯이 편견은 증오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는 대중 매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폭력성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증오범죄 소재 영화는 수용자인 대중에게 증오범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김혜정 외 2013).

또한 증오범죄의 피의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사회를 향해 공격행동을 하는 원인으로 신체활동의 어려움, 직업상실, 경제적 어려움, 사회활동과 대인관계가 위축된 상황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효과를 들 수 있다(박순진 2003). 무엇보다 사회관계망에서 고립된 개인은 사회와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없어 부정적 감정의 적재현상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민배경 2, 3세에 의한 증오범죄

2005년 프랑스 방리유(Banlieue)에서는 아프리카 이민 2세 청소년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다 감전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사회로부터 억압받고 소외받던 이주 배경 청년들의 폭동으로 이어지고 주변 지역까지 소요가 확산되었다. 프랑스 경찰은 소요사태로 인해 2명의 이주 배경 청년이 사망하고 3000명의 시위자가 체포되었으며, 2억 유로의 재산상 피해가 났다고 발표했다. 방리유의 소요사태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사회 혼란을 야기하였다. 거리의 상점과 자동차가 불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소요사태를 접한 프랑스 정주민은 이주민에 대한 공포와 부정적 감정이 더욱 강해졌다. 이로 인해 이주민을 향한 정주민의 공포와 불만이 증폭되어 이분화된 사회갈등이 가속화되었다.

프랑스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민 배경 2,3세의 증오범죄는 방리유 사건 전후에도 수차례 발생하였다.

〈표 1〉의 이민 배경 2, 3세의 프랑스 내 증오범죄(폭동)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 1월 7일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에서 발생한 범죄용의자 3명 모두 프랑스 국적으로 알제리 이민자 2세이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타종교의 존중'에 대한 논쟁을 가져왔다. 이민 1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차별을 견뎌냈지만, 태어날 때부터 국민인 이민 2, 3세대들은 국민 대접이 아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자랄 경우 분노와 좌절이 커질 수 있다.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상대가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공존이라

말하는 것에 대해 온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신문 15/01/08).

2012년 아미앵에서 발생한 이민 청년들의 폭동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청년의 사망이 촉발원인이 되어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며 150여 명의 청년들이 도심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저항했다. 당시 아미앵은 프랑스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12%를 넘었고, 15~24세의 청년 실업률은 23.3%에 달했다. 아미앵 북부지역은 가난한 이민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정부에서 관심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원 대상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프레시안 12/08/16).

2005년 방리유 사태를 비롯한 소요들은 차별받고 억압받은 이민 2세 청년들의 한 단계 증폭된 저항이다. 이러한 소요는 끝나지 않은 투쟁이며 단순히 치안 강화로만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이기라 외 2007). 주변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이민 2세에게는 시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정부 대응 방안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정주민의 편에 서있는 불공정한 대처로 여겨질 수 있고 또 다른 증오범죄 발생의 트리거(Trigger)로 작용할 수 있다.

〈표 1〉 이민 배경 2,3세의 프랑스 내 증오범죄(폭동) 발생 현황

날짜	도시	촉발요인	피해상황
2005년 10월27일	방리유	아프리카계 이민 2세 청년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려다 감전사한 사건에 불만을 가진 이민 청년들이 폭동을 일으킴	이민배경 청년 2명 사망, 3000명의 시위자 체포, 2억 유로의 재산상 피해
2012년 8월13일	아미앵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이민배경 청년의 사망으로 분노한 북아프리카계 이민 2세가 폭동을 일으킴. 높은 실업률도 중요한 원인이 됨.	경찰 16명 부상, 학교와 공공건물이 불에 탐. 600만유로 재산피해
2015년 11월13일	파리 (동시다발)	벨기에 태생 프랑스인, 튀니지 태생 프랑스인, 프랑스인 등 IS 추정 범죄	130여명 사망, 300여명의 부상자 발생
2015년 1월7일	파리	튀니지계, 알제리계 이민 2세 청년, 샤를리 에브도의 이슬람 풍자에 불만을 품고 총기난사	12명 사망, 11명 부상
2016년 7월14일	니스	튀니지계 프랑스 국적 이민자, IS 추정 범죄	84명 사망
2018년 5월12일	몽시니가	체첸공화국 출신 프랑스국적 청년, 도심 흥기난동, IS 추정 범죄	1명 사망, 4명 부상

※ 문헌정보와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한 것으로 프랑스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중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범죄는 제외됨.

Ⅲ. 프랑스 증오범죄가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주는 시사점

미국과 캐나다는 출범초기부터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문화사회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변화한 경우이다. 다문화사회는 타문화와 타민족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한국과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다문화사회로 변화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타문화와의 갈등은 상호 이해 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받은 집단의 사회 불만의 표출로 발생하게 된다. 우리 사회도 프랑스의 증오범죄와 같은 억압되고 소외된 집단의 공격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표 2〉는 전문가 집단 설문을 통해 국내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가진 우리 사회는 북한의 위협을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고 이어서 사회 불만세력, 급진주의 세력의 테러와 이슬람 인구, 외국인 체류자,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위협을 요인으로 선택했다. 최근 국내 이슬람 인구는 전체 인구의 0.3% 인 15만 명으로 소수이지만 이슬람교는 나쁜 종교이며 테러리즘 발생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상당수 있다(한국일보 19/03/26). 한편 1위로 나타난 북한의 위협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타 요인에 비해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다른 요인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어떤 요인이든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증오범죄는 국민안보를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표 2〉 국내 테러위험요인 우선순위 분석결과

	평가항목	중요도(가중치)	순위
국내테러 위험요인	북한의 위협	0.364	1
	사회 불만세력	0.188	2
	급진주의세력	0.166	3
	이슬람 인구	0.096	4
	외국인체류자	0.093	5
	북한이탈주민	0.092	6
	일관성 비율		.02

출처: 전용재 외(2017).

프랑스의 증오범죄를 통해 급변하는 한국 다문화사회가 주목해야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소외 계층

프랑스는 근대화 과정에서 저출산 현상과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와 경제공황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노동이민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전체인구 6560만 명 중 1/6에 해당하는 총 1,150만 명이 이민자이다.³⁾ 16세기 후부터 숙지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사회풍토를 가지고 있으며 나치즘의 인종우월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 대혁명의 역사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존중하게 하였다. 이는 정주민과 이주민의 구분을 두지 않는 프랑스식 동화주의로 발전하게 하였으며 이주민은 프랑스 정부와 ‘이민 계약’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신규 이민자와는 계약 (Contrat d'accueil et integration)을 체결하여 프랑스 국민으로 사회 통합을 강제하고 있다.

이주민이 갖는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고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야하는 이주민은 사회경제적으로 낙오자가 되고 주류 사회에 밀려나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 사회적으로 기준이 미달하는 지역 751개를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류사회에서 밀려나 도시 외곽으로 자리 잡은 이주민 거주 지역이다. 저개발 지역 선정에서 이민자 거주지역을 선택한 것은 아니나 선정 후 이민자 비율이 높은 곳임을 알 수 있었다. 이지역 인구의 증가는 이주민이 게토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⁴⁾ 2005년 프랑스 방리유 소요사태 또한 파리 외곽 이민자 거주 지역인 방리유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아울러 저개발 지역의 이주민은 자녀 교육에 열의가 부족하여 학력 저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빈곤의 되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다.⁵⁾

우리나라 교육부의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전체학생

3) 출처: <http://overseas.mofa.go.kr/fr-ko/index.do> (검색일: 2019. 04. 15.).

5백만명이 이민자이며 이 중 2백 만명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민자 자녀가 650만 명으로 숙지주의 원칙에 따라 모두 프랑스 국적자이다. 2012.5.23.(수) 프랑스 고등통합위원회(Haut Conseil a l'integration) 사무총장 면담 시 동인 발언 요지

4) 저개발지역의 주요 특징은 이민자 자녀수가 많다는 것인데, 예로 Seine Saint Denis 지역의 경우 거주자가 60%가 이민자이다.

5) 출처: <http://overseas.mofa.go.kr/fr-ko/index.do> (검색일: 2019. 04. 15.).

주프랑스 대한민국 영사관검색자료-2012.5.23.(수) 프랑스 고등통합위원회(Haut Conseil a l'integration) 사무총장 면담 시 동인 발언 요지

수는 약 18만 명 감소하였고 이 감소세는 저출산으로 인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18년에는 12만 명을 초과하여 전체 학생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7년도 기준 1.17%로 전체학생의 학업중단율인 0.87%보다 높게 나타났다⁶⁾.

낮은 학력은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 부적응과 사회에 대한 불만 또한 높아지게 한다. 경제적 빈곤은 거주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 과거 구로공단 지역의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가리봉동에서 대림동 일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이 일대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⁷⁾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의 한 예로서 몇 년 전 개봉한 '청년경찰'이라는 영화에서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역인 대림동은 인신매매, 장기적출 등 범죄를 일삼는 집단이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묘사되었다. 한국계 중국인 단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공포와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영화사측에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한국계 중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다.

2. 약소국에 대한 편견

2012년 이후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용의자들의 대다수가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이민자 2세대였으며,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말리 등 과거 프랑스 식민지이거나 보호령 지역 출신이었다(오창룡 2017). 이들은 방리유와 같은 이주민 밀집지역에 거주하며 일상의 차별 속에서 식민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프랑스와 알제리는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였다. 하지만 1830년 알제리를 식민화하면서 프랑스인들은 자신들과 종교 문화가 다른 이슬람을 믿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동시에 알제리 내에서 일어난 전쟁은 알제리 농촌과 공업기반을 황폐화시켰는데 일자리를 잃은 알제리인은 식민지 모국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이후 1962년 알제리 독립 후 프랑스에서는 알제리인의 이주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민 배경 2, 3세는 이민자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통합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데, 그들은 '우리들은 이민을 온 것이 아닌데도 여전히 통합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우리는

6)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6953> (검색일: 2019. 04. 15.) 교육부.

7) 행정안전부 2017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의하면 전체 지역 주민 중 영등포구는 13.8%, 안산시 단원구는 17.7%가 외국인 주민으로 나타났다.

이미 사회의 일부다' 라고 주장하였다(김현주 2015).

프랑스 식민지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프랑스 정주민은 지배와 피지배의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서양과 동양(orient)으로 이분화하고 이질성을 낙약함으로 몰아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오리엔탈리즘은 프랑스, 영국 등 지배국가 국민의 관점 뿐 아니라 식민지국가 국민의 관점마저도 지배하였다. 상위문화와 하위문화로 구성된 틀 속에서 머물며 식민지 국가의 구조적 모순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국 사회는 서양문화의 영향권 아래 서양이 씌워준 오리엔트(orient) 안에서 또 다른 오리엔트를 만들어 냈으며 그것은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편견으로 나타난다. 동남아시아권에서 우리 사회로 유입된 이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주한 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이 대다수이며 우리보다 '낙약' 국가라는 무시로부터 시작한 '편견과 차별'은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3. 종교 갈등

프랑스는 종교전쟁을 겪은 국가로 종교 간 평등을 인정하는 정교분리(Laicite)⁸⁾ 정책 기초를 가진 나라로 가톨릭 국가 중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에 있는 이슬람 사원수가 2천여 개이고 병원과 군대에도 이슬람 사제가 있다. 무슬림 인구의 증가가 반드시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률 증가와 취업난, 반(反)이민정당의 득세,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의 증가와 같은 요인과 결합한다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황기식 외 2015). 프랑스는 종교간 평등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나 이슬람 근본주의를 상징하는 표식이나 행동을 하였을 때는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 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평등과 통합이 중요한 정치철학으로 개인의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여 부르카 사용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고 본다. 학교에서 부르카 사용을 금지하거나 무슬림 여학생이 수영 시간에 남녀 합반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제재함에 따라 이슬람교도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갈등의 양상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테러라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빈민층과 부유층의 거주 지역이 구분되고 사회적, 인종적 차별이 고질화되는 것에 불만을 느낀 젊은이들이 테러 집단에 가담하기도 한다. 2015년 파리 테러들의 주범들은 거의 모두가 프랑스의 도시 빈민촌 출신이다.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모험과 이례적인 전율을 찾기에 IS는 육체투자만을 요구하므로 유혹적일 수밖에 없었다(최인숙 2016).

8) 1905년 제정된 라이시테법은 '사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되,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자리를 엄격히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프랑스 헌법 제 1조에도 포함되어 있다.

테러로 인한 증오범죄가 발생하면 무슬림에 의한 범죄로 언론 보도가 되며 이는 범죄 발생국가인 프랑스 뿐 아니라 전세계에 ‘이슬람포비아’라는 극단적이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대하는 대중의 인식에도 ‘이슬람포비아’가 작용하여 무조건적인 난민 수용 거부를 주장하기도 했다.

IV. 증오범죄 대응방안으로서의 다문화교육 방향 성찰

증오범죄의 여러 원인 중 사회적 원인으로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 대중매체의 영향이 있었다. 이 중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불평등한 사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대중매체 또한 이러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창구로 만들 것이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이민배경 2,3세가 사회로부터 받은 차별과 편견이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증오심으로 전환될 때 증오범죄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배경 2,3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의 방법으로 다문화인권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문화 인권교육은 차별과 편견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본질적으로 시민권과 시민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정상우 2017).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인식 등 다문화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다문화인권교육은 다양성의 다문화교육과 모두가 존엄한 인간으로 동등하게 처우 받는 보편적 특성을 교육하는 인권교육이 결합된 것이다(나달숙 2014). 인권교육 없이 문화다양성의 강조만 교육된다면 이주민과 정주민 모두 자기 국가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관적 해석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이민자, 이민배경 2,3세와 정주민, 이주민과 또 다른 이주민 간의 민족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교육을 통해 얻은 인권 지식이 차별가해 경험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했다. 인권교육은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존중되고 남도 존중하는 상호 신뢰감이 사회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정명진 2012). 청소년들이 일상의 차별과 폭력에 대해 감수성을 키우고 인권 침해 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에 대해 지각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인권교육이다(이상애 외 2009).

이민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이민자 자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증오범죄는 어린 시절부터 받아들인 차별과 편견에 의한 소외감이 원인이 되고 있다. 문화다양성을 수용하고 모든

인간의 존중받는 보편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인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증오범죄를 예방하는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1. 보편적 인류의 가치, 다문화 인권교육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2018년 12월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인종차별 증오 표현에 대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⁹⁾ 한국 사회도 외국인 체류 인구가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차별에 관한 법령 제정을 통해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시민으로의 윤리 의식을 갖추기 위한 다문화교육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인간에 대한 존엄을 중시하는 교육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베넷(Bennett)은 다문화교육의 네 가지 핵심적 가치를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과 인정’,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세계공동체에 대한 책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에 두었으며 이는 다문화교육에 철학적 기초가 된다(Christine I. Bennett 2009). 네 가지 핵심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가치가 기저에 존재할 때 나머지 세 가지 가치 또한 실천 가능한 내용이다.

세계화의 진행으로 환경, 난민 문제, 자연재해나 질병 등 단일 국민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어나면서 ‘인권’이라는 초국적 어젠다에 주목하고 있다(김수경 2015). 인권은 고대 철학의 자유론, 그리이스, 스토아학파나 기독교의 인간학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프랑스혁명 선언으로 인권의 분류화가 구체적으로 시도되었고, 그 후 역사적인 발전과 더불어 자유권, 기본권, 자연권, 시민권으로 강조점이 달라져 왔다(김용대 2004). 프랑스공화국의 기본 이념은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1789년에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에 대한 내용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기초한다. 제 1조에 명시된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 한다’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중요성이 나타나 있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1791년 프랑스 헌법의 전문으로 채택되었고 세계 각국의 헌법과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세계인권선언문’ 제정으로 이어졌다.

전지구화 현상은 국경을 넘는 이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주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방인으로 남아 있으며 국적을 취득하고 시민의 권리를 얻게 되더라도 출신

9) 위원회는 이날 국가별 심의 보고서에서 2012년에도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입법을 촉구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에 따른 편견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가기도 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주류와 비주류, 이주민과 정주민, 부유층과 빈곤층과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체득할 수 있는 계층 간의 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사회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국제 인권 레짐의 등장은 국민국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적과 영토에 근거한 정의에서 벗어난 시민권이 인류 보편의 권리로 규정된다. 따라서 시민권의 경계는 민족국가를 초월한 '탈민족적 시민권(postnational citizenship)'으로 영향력을 이동하게 한다(김수경 2015).

국민국가의 경계가 확장된 유럽연합에 속한 여러 국가는 유럽 의회에서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다문화교육에 근거한 가치 전달과 차이의 극복을 위한 인권교육을 일반화하였다.

인권이 다문화교육에서 갖는 의미는 인권에서 다루고 있는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 불평등의 문제들이 다양성과 공존의 문제를 추구하는 다문화교육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김수경 2015). 다문화교육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을 한다면 오히려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여성성기의 일부를 절제하는 '할레'와 집안의 명예를 위해 순결을 잃은 여성을 살해하는 '명예살인'과 같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논쟁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다양성의 수용과정에서 인권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의 명확한 판단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 또한 인권과 다문화교육의 주요 과제이다. 소득 불평등으로 시작되는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박탈, 갑질, 위화감 등으로 하위 계층을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한다. 차별과 배제로 인한 소외감이 분노가 되어 범죄를 일으킬 정도로 고통 받는 이민 배경 2,3세의 이민 사회 적응을 위해 다문화교육의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2. 시민 사회 주도의 다문화인권교육

이민자에 의한 증오범죄의 사회 심리적 요인인 차별과 배제에서 오는 소외감을 감소하게 하는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인권교육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그 방향은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인권교육'이 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이해교육, 인권교육 등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관주도형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교육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개선이 자발적이라기보다 의무감이 우선되어 피교육자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 또한 관이 주도하여 다문화가족에게 시혜적인 정책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반(反)다문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위에서부터의 교육 방침과 콘텐츠는 ‘교육의 전달’에 그칠 수 있다.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아래로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교육 참여자와 연대하여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후 피드백을 통한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주도해줄 시민단체의 역할이 요구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민 단체가 이민 배경 2, 3세와 함께 이민사회에서의 어려움과 불만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민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이며 자신의 힘으로 달라질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분노의 적재로 증오가 일어나는 과정을 막을 수 있고, 당당한 시민의 자리를 차지한 이주민을 바라보는 정주민의 시선 또한 차별에서 다양성의 인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자를 위한 인권교육은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 이는 분노를 억누르지 않게 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소수자인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 위주에서 최근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수자 교육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다문화 학생이 분리된 교육을 받을 경우 낙인효과¹⁰⁾로 인해 오히려 교육을 통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학생과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자 즉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자신들이 처한 환경으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문화인권교육이 진행되어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이민배경 2, 3세가 가질 수 있는 권리, 가정에서의 인권침해, 정체성 확립, 다문화가족관련 지원 등은 별도의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요구하고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인권교육은 소수를 위한 교육과 다수를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분리교육이 아닌 선택에 의한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학교의 다문화인권교육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교육으로 인식되어왔다. 이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수 과정이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를 교육소외계층으로 보고 교육복지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접근하여 다문화교육이 동화주의 성격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강현민 외 2015).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¹¹⁾가 설립되고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지만 다문화교

10)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는 경제적 빈곤층, ‘우리와 다른’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육과 인권교육의 요소가 결합된 다문화인권교육은 2010년부터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문화인권교육은 '다문화교육을 인권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라는 견해와 '다문화교육의 본질에 인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다문화인권교육은 다문화교육에 인권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하고 있다(나달숙 2017).

2018년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¹²⁾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2015년, 2018년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령별 조사에서 20대의 다문화수용성이 2015년 조사보다 8개 요소¹³⁾가 모두 하락하였으며 특히, 고정관념 및 차별에서 5.27점이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다문화교육이 학교에서 실시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반 시민이 접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은 4.6%이며 청소년의 경우 32.4%가 다문화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교육의 기회가 일반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20대는 한국 다문화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로 교육의 기회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용 또한 지침에 가까웠으며 온정적이고 시혜적 관점의 교육이 많았다. 다문화교육이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민배경 2, 3세가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가 시작되는 공간은 학교이며 다문화교육이 실천되는 공간 또한 학교이다. 소외감은 이민자 자녀에게 국한된 감정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상처받는 감정이다. 증오범죄는 이민 배경 2, 3세만이 아니라 소외계층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외감을 학교의 또래문화에서부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의 관점을 넘어 '모든 사람'으로 시각을 확장하고 다문화인권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오로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적 산물(Hunt Lynn 2009)로 인간과 사회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사고(思考)를 통해 자각(自覺)해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인권교육은 인권의 대한 자각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을 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12) 20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13) 다양성(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일방적 동화기대, 거부, 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보편성(이중적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4. 탈정치 이념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

유럽 사회 내 이민자 문제는 정주민과 이주민 간의 문화적, 종교적 갈등으로 표출되면서 반(反)이민 정서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선거에서 약진함에 따라 이민자 문제는 ‘정치화’ 되었다(황기식 외 2016).

2000년대부터 유럽에서는 극우정당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났고 집권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다. 극우정당 지지율이 각국의 이민자비율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자비율이 높은 프랑스는 극우정당의 지지율의 약진이 뚜렷하여 프랑스 내 반(反)이민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으로 실업률이 증가한 원인을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비 증가를 가져왔다고 선동한 것도 반(反)이민 정서확대가 원인이 되었다(오정은 2014). 한국의 반(反)다문화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 저소득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어 내국인의 소득 수준을 낮춘다고 본다.

1974년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새로운 노동이민을 금지하고 프랑스를 떠나는 이민자에게 귀국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젊은 시절은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좌파로 전향하여 이주민의 고용상태와는 무관하게 10년 유효기간의 체류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하였다. 미테랑 대통령의 정책에 힘을 얻어 이주민들은 반인종주의 운동협의체인 ‘아랍계 프랑스인들의 운동’의 주도로 ‘공화주의적 평등에 기초한 통합’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주민들의 조직화 현상은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와 달리 다시 극우세력에 의해 이민문제를 정치도구화 하였고 다시 인종주의적 태도를 부각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했다(엄한진 2017).

프랑스 이민자 통합 정책은 자유주의의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강조한 자유주의는 이민에 대한 유럽국가의 태도가 동화에서 통합으로 변화하고 반(反)차별주의를 부각시켰다. 다른 해석으로는 최근의 통합정책에서 드러나는 권력과 규율이 강조되는 푸코적 학술전통에서 영향 받은 ‘통치성’이라는 개념의 신자유주의 관점이다(김현주 2015). 통치성의 관점은 세계화로 국가가 상당부분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컨트롤과워를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주권국가로서 통치력을 발휘하여 이민자들을 통합하고 사회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관점이다.

프랑스 정부는 전통적 학교 교육의 목표인 ‘프랑스 공화국 시민의 가치 함양’ 원칙에 충실한 강력한 통합주의를 표방하고 이 원칙에 따라 학교는 ‘공동적인 프랑스 문화’를 지닌 프랑스 시민을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경수 2011). 프랑스의 다문화교육

은 프랑스의 우월함으로 ‘우리 프랑스 시민’이 되어 함께 가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를 시민 윤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동화와 다문화의 딜레마’를 초극할 수 있는 대안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시민적 자세를 가질 때 다문화의 시민 윤리 실현의 토대를 갖추고 다문화시민의 윤리가 정착될 것이다(장정애 2008).

다문화관련 정책은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집단에 대한 수용과 통치 형태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항하는 집단’은 집권 정권에 불만을 표출하는 세력이었을 것이고 이들은 야권(野圈)이고 좌파(左派)를 상징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다문화정책은 자유주의의 두 가지 해석과 같이 공존과 안보의 이분화된 정치세력에 편승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다문화인들의 편견, 차별 방지라는 문제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치자들이 객관적인 관중으로서의 차별한 성찰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V. 맺음말

중요범죄는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개인과 사회를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한다. 중요범죄의 대응방법은 범죄자와 범죄 집단을 향한 또 다른 보복을 하거나 내부의 완전 무장을 선택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며 피해자가 행할 수 있는 보복은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갖는다. 이러한 방법은 중요 범죄가 발생한 후의 선택이다. 우리는 중요범죄가 발생하기 전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중요범죄의 원인 중 이민자 2, 3세가 받았던 사회적, 경제적 소외가 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이들은 빈곤과 저학력, 인종 차별을 경험하고 분노를 가지고 살아왔다.

한국은 다문화인구가 주민등록인구 대비 3.4%를 넘고 서울 영등포구와 안산시는 13%를 선회하는 것에서 보다시피 일부 지역이 계토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이 일반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져 사회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요범죄를 일으킨 테러리스트의 대부분이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으로 이는 이슬람포비아 현상을 유발하여 종교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주었고 최근 발생한 예멘 난민 사태에서 말해주듯 이슬람종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강하게 드러났다.

중동·아랍 사람들은 한국 가전,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찾고, 한국말과 문화를 배우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지극히 보통의 이민자들인 점을 한국 사회가 인지해야하며, 이슬람을 종교적 문제로만 보는 지나친 편견을 버리고 이들을 친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서울신문 11/04/08). K-POP과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을 원하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것은 무지로 인한 집단 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이민자와의 공존은 필연적이다. 다문화 정책과 이민 정책은 정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집권 정권의 성향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기도 한다. 이민 사회 통합을 위해 이러한 변화에 요동치지 않는 시민의 보편적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베넷(Bunnett)의 다문화교육 핵심가치 네 가지 요소 중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은 이민 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향후 다문화교육은 민족국가를 초월한 '탈민족적 시민권(postnational citizenship)' 개념으로 확장하고 다문화교육의 가치 전달과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문화인권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은 개인의 성장과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타자(他者)는 경쟁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타자(他者)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 될 것이라 믿게 한다.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의 다문화교육은 경쟁중심의 교육 현실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기술을 제공하여 타자(他者)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중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증오범죄에 관한 사례 수집을 선행연구와 언론에 노출된 기사를 중심으로 수집하였고 범죄가해자에 대한 정보 수집이 부족하여 선행 연구 결과에서 유추하여 작성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성과와 대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의 특성상 객관적 효과 분석이 어려워 이론적 고찰에 그친 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해 나아가기로 한다. 향후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다문화교육의 실천적 연구의 진행으로 이민배경 2, 3세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 강현민 · 정상우. 2015. 다문화인권교육의 개념 정립과 발전방향 소고. 법과 인권연구 8(3).
- 구춘권. 2005. 메가테러리즘의 등장배경과 원인: 지구화의 충격과 이슬람 근본주의의 부상. 국제.지역연구 14(1), 109-138.
- 김수경. 2015. 이주민의 인권과 국가 안보-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통권 26.
- 김수원. 2009. 사회적 차별, 혐오범죄(Hate crime), 그리고 인권. 원광법학 25(3).
- 김용대. 2004. 폭력과 인권-소렐, 아렌트, 벤야민에서의 폭력의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4(1), 91-108.
- 김진희. 2014.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국제 갈등 이슈와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찰. 다문화교육 연구 7(1), 01-129.
- 김현덕. 2011. 9.11 사건 이후 국제이해교육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6(2), 31-56.
- 김현주. 2015. 1990년대 이후 프랑스 다문화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변화. 프랑스 문화연구 31, 441-468.
- 김혜정 · 권주혁. 2013. 증오범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고찰. 영남법학 36.
- 나달숙. 2015. 다문화인권교육의 이해와 실천방향. 법과인권교육연구 7(2).
- _____. 2017. 다문화 인권교육의 정립과 실천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0(3).
- 박단. 2015. 샬리 엡도 사건과 프랑스 내 소수자들-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 HOMO-MIGRANS 13, 83-102.
- 박순진. 2003.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2014.07.
- 양문승 · 이훈재. 2008. 증오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원광법학 24(4), 167-199.
- 엄한진. 2017. 프랑스의 이민문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 오정은. 2014. 유럽의 반이민 정서 확산과 극우정당. IOM이민정책연구원위킹페이퍼.
- 윤민우. 2016. 2015 파리테러 이후 독일에서의 최근 테러리즘 동향과 테러대응의 변화, 경찰학논총 11(4).
- 이기라 · 양창렬. 2007. 공존의 기술. 그린비, 19-68.

- 이상애 · 이혜원. 2009. 가출청소년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16, 1-29.
- 이선엽. 2010. 문명의 충돌과 테러리즘의 기원 : 문명 간의 대화. 한국테러학회보 3(2).
- 이정주. 2013. 증오범죄의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다문화사회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4(2), 247-270.
- 장정애. 2008. 세계화 시대의 국제 협력과 다문화의 시민 윤리-프랑스 문화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2(4), 148-169.
- 전제철. 2011. 시민사회에서의 다문화인권교육연구. 시민교육연구 43(3).
- 정도희. 2017. 다문화사회 갈등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입법 검토. 홍익법학 17(4).
- 정명진. 2012. 학교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상우. 2017. 다문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과 인권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
- 최인숙. 2016. IS, 왜 프랑스에 분노하였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62, 299-315.
- Christine I. Bennett. 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 Hunt Lynn. 2009. Inventin human rights. 인권의 발명. 파주: 돌베개.
- James B. Jacobs and Kimberly A Potter. 1997. Hate Crimes: A Critical Perspective. Crime and Justice 22.
- M. G. Herek et al. 1997. Hate Crimes Victimization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Prevalence, Psychological Correlates,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Interpersonal Volence 12(2), 195-215.
- Michael Welch 2011. 9.11의 희생양 - 테러와의 전쟁에서 증오범죄와 국가범죄. 갈무리.

- 교육부 www.moe.go.kr
- 서울신문 www.seoul.co.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프레시안 www.pressian.com
-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 투고일: 2019.07.19. ● 심사일: 2019.07.26. ● 게재확정일: 2019.08.11.

Countermeasures of Hate Crime Cases through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Focused on Hate Crime Cases in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French Immigrants

Jung Eunjeong (Dong-A University)

Kim Daejung (Dong-A University)

This paper is to find the implications and preventions of hate crimes from the example of the recent European case especially with immigrant society and its notable hate crimes including terrorism in Banlieues, France in 2005. This paper suggest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for prevention of hate crimes. The hate crimes by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from French immigrant backgrounds revealed several issues of multiculturalism policy in France. Korean society should also consider this and try to prevent the similar result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French multiculturalism based on equality has converted immigrants into the underprivileged, and the majority of the criminals are muslims created 'Islamophobia' immigration issues. Multicultural policy and education to pursue genuine social integration with immigrants and crime prevention should develop into human rights education for citizenship. Then they are able to think outside the box and possess the post-racial citizenship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universal human rights' by Bennet, which can make them grow up into a member of society and prevent hate crimes.

<Key words> hate crime,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multiculturalism policy, human rights,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일반논문

간문화능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의 '개인 간 갈등'을 중심으로

원순옥 · 김영경



간문화능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의 '개인 간 갈등'을 중심으로



원 순 옥

제1저자 경운대학교
(nasongjung@hanmail.net)



김 영 경

교신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chungrha@hanmail.net)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간문화능력이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고찰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보유한 인지적, 정의적, 실천 차원의 간문화능력 요소와 그들의 '개인 간 갈등'에서 선호되는 갈등관리방식 간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적 차원, 정의적 차원, 실천 차원의 간문화능력 모두 통합과 타협 갈등관리방식과는 정(+)의 상관성을 보이고 통제 형태의 갈등관리방식과는 부(-)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문화능력이 통합과 타협 등 친사회적이고 협력적 성향의 갈등관리방식 채택에는 긍정적인 매개로 작동하는 반면 배타적 성향의 통제 갈등관리방식의 사용에는 부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간문화능력의 습득이 건전한 갈등관리방식을 수용하도록 돕는 유효한 방안이라 간주하여 다문화교육 내용과 운영에서 간문화능력의 요소를 내장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간문화능력(인지적 차원, 정의적 차원, 실천적 차원), 개인 간 갈등, 갈등관리방식

I. 서론

현대사회는 보편적으로 다(多)문화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현대사회가 그 안에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에서 다양한 삶의 유형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 주체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구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분화와 이종(異種)의 구성은 도덕·윤리의 다원성을 잠재하고 생성함에 따라 사회 요소 간 대립과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주자를 수용하는 지역의 집단 문화와 규범이 이주해 온 소수집단이 추구하는 가치, 습관 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논쟁도 그러한 예이다. 문화적인 배경이나 가치관에서부터 신체적,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이르는 차이가 각 개인과 집단의 요구 및 권리와 의무 등에서 상충하고 결국 여러 유형의 갈등으로 표출되게 된다. 다문화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갈등은 점차 그 양과 빈도가 증가하고 종종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하여 사회구성원들 상호 간의 관계를 악화 또는 단절시키고 있다.

갈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갈등을 체제 논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갈등의 형태와 요인, 과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다양한 조건에 적합하게 재구성되는 전략들이 요구되고 있다.

갈등의 형태 가운데 특히 개인 간 갈등의 출발점은 개인이 거주하는 집과 마을 등 극히 국지적이며 갈등의 전 과정이 폐쇄적, 우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해소 과정에서 외부 중재자 개입이 원활하지 않다. 실제로 가족 간 갈등을 가정 내부의 문제로 치부해 온 우리 사회의 오래된 시각은 그 상황과 행위자를 오히려 타자화하고 은폐하는 기제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만약 개인 간 갈등에서 갈등 당사자가 지니는 관리 역량이 공적인 경로보다 더 빈번하게,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문화교육에서도 개인의 갈등 관리능력을 향상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간문화적 요소가 다문화교육 과정에 포함된다면 개인 간 갈등 관리능력 배양의 대안으로서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의 파급력과 그 해소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내 개인이 개인 간 갈등에 대처하는 갈등관리방식과 그들이 습득한 간문화능력 간 관계를 분석하여 '갈등관리방식'에 대한 간문화능력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간문화능력과 갈등관리방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양자 간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행위자들의 갈등 해결 가능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배양한다는 간문화의 선언적 의미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가지는 의미와 사회교육으로서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본다.

현재 소도시 지역에서 가동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사회적 갈등 관계 해소의 중재자로서는 그 역할을 인정받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는 간문화적 교육에 대한 학리적 검토와 그에 따른 적용과 실천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다문화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유형과 접목된다면 이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 연구 및 이론 고찰

1. 갈등의 개념과 갈등유형

갈등은 대개 개인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현실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가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우리가 일정한 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다중현실(multiple realities)’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의 해결을 위한 협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허영식 2012, 240). 갈등국면의 배경을 가정이라는 사회로 치환해서 본다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일상적 문화갈등을 경험하는 진원지로 등치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간 갈등을 언급한 학자로 Sprey와 Coleman이 있다. Sprey(1971)는 가족 내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수단과 목표 달성 간 괴리가 갈등 발생의 원인임을 강조하였으며 Coleman(1984)은 부부간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로 인한 충돌을 부부갈등이라 정의하였다. 이들의 견해는, 대인관계나 개인의 내부에서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개입이 갈등유발의 원인이라는 Deutsch(1969)의 갈등 개념이 가족 간 갈등에 적용된 것이다. 이로써 가족 역시 갈등을 내포하는 체제이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은 관리방식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갈등은 그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며 그 연구내용은 특정 시점, 해당 사회의 갈등 추이와 원인 그리고 갈등관리방식의 기초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된다.

March & Simon(1958)은 갈등유형을 개인적 갈등, 조직 내부의 갈등, 조직 간 갈등으로 크게 범주화하여 구분하였다. 이 초기 이론은 현재까지 많은 갈등유형 연구에서 기저로 활용되고 있다. 이후 Thomas(1976)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개인 내부의

갈등과 외적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론에서 개인 내부의 갈등은 쾌락원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아의 통제를 받아 발생한 긴장 상태를 말하며 이 긴장 상태가 심리적 갈등상태를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Thomas는 외적 갈등의 원인을 서로 다른 관심을 표출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았으며 개인 간, 집단 내, 집단 간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또한 갈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 갈등(goal conflict), 정서갈등(affective conflict), 행동 갈등(behavioral conflict) 등으로 구분, 기술하였다. Robins(1998) 역시 갈등행위 주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여 개인 간 갈등, 집단 내의 갈등, 집단 간의 갈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Amason(1996)과 Jehn(1997)은 갈등의 기능을 언급하여 긍정적 갈등(positive conflict)과 부정적 갈등(negative conflict)으로 구분하였다. 최해진(1998)은 갈등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이익갈등(interest conflict)과 가치갈등(value conflict)으로 구분하였으며 갈등의 쟁점에 따라서 부부, 세대, 지역, 노사, 정책 갈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는 또한 행동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적 갈등(personal conflict), 개인 간 갈등(interpersonal conflict), 조직간 갈등(organizational conflict), 집단 간 갈등(intergroup conflict), 국가 간 갈등(international conflict)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과업과 관련하여 구성원 간의 지각, 판단, 의견의 차이 또는 불일치로부터 비롯되는 직무 갈등(task conflict)과 과업 외에 조직 내 개인 관계에서의 충돌과 의견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관계갈등(relationship conflict) 등으로 조직 내 갈등 범주를 규명한 연구(Jehn 1994; Simons & Peterson 2000)도 있다.

한국에서의 갈등유형 연구 추이를 보면 주로 특정 유형의 갈등이 조직 내의 성과, 몰입,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 갈등유형 간 관계, 개인 혹은 집단의 정체성과 갈등 특성 등에 관한 논의로 수렴되고 있다. 갈등유형 별로 양적 규모를 살펴보면 조직 내부, 조직 간에 해당하는 갈등유형의 비중이 높고 사적인 공간에서의 개인 간 갈등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인다. 특히 문화적 갈등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시적인 갈등 대부분이 기업 성과 혹은 정치적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논의 및 실천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의 주체와 차원 역시 집단적이고 조직적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최근 문화적 갈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점차 갈등의 요인이 정교해지고 그 갈등 주체와 연구방법 역시 다양해지고 세분화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사회 변화에 따른 갈등 범주의 확장성을 논한 한 연구로 허영식(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허영식은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간문화적 갈등은 일차적으로 문화적인 영역에 놓여 있는 현실 수준을 포함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비대칭적 권력관계와 민족적·문화적

전략, 경험지향 차별모형, 간문화성의 해석모형에 의해 간문화적 갈등의 범주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유형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개인이 가정에서 가족 간 겪는 '개인 간 갈등(interpersonal conflict)'의 사례를 기본 자료로 규정하였다.

2. 갈등관리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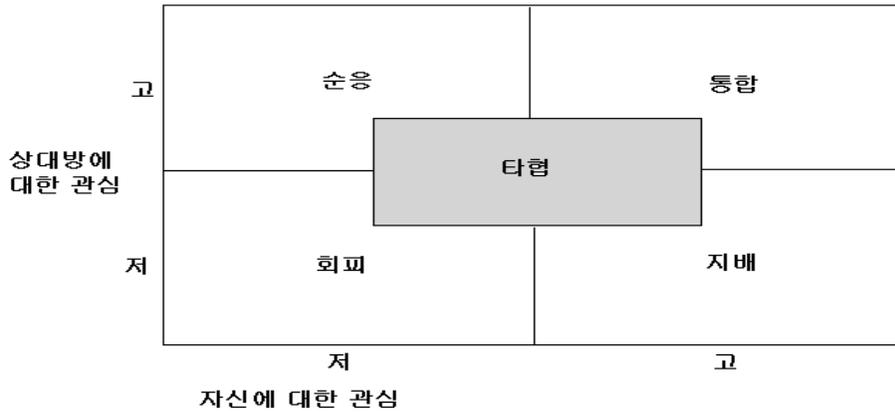
사람들은 갈등에 직면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리하려고 하며 이때 일관되게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을 사용한다. 개인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일컫는 갈등관리방식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가 있으나 견해들을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갈등에 직면한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이 갈등상황에 반영되어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보이는 사회적 행태'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본고의 동의는 본 연구의 수행과정이 갈등의 주체가 갈등상황에서 선택하는 행태 특성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갈등관리 연구는 초기 갈등관리유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갈등관리유형 연구는 20세기 초에 시작되었으나 실제 갈등관리유형 연구는 Blake & Mouton(1964)의 '갈등관리유형론'에서 촉발되었다. 그들의 갈등관리유형론은 개념과 실제의 차이, 실제 행동에서 나타나는 비밀관성, 환경적 맥락에 따른 갈등 발생의 차이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으나 많은 갈등관리유형 연구의 모태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유형론이란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 인간의 잠재적인 심리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몇 가지 인간 유형에 따라 갈등관리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그러나 갈등관리는 심리적 특성보다 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회과학 측 주장이 나오면서 유형론은 사회과학 방법론상의 갈등관리 개념과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갈등관리행태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 가운데 두 가지 차원(자신에 관한 관심, 상대방에 관한 관심)에 기초한 이중적 관심모형(Dual Concern Model)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론이다(Desivilya & Yagil 2005, 56). 본 이론은 1964년 Blake & Mouton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이후 학자들에 의해 점차 변형, 개발되었으며 다섯 가지 관리방식의 형태로 응집되고 있다. 그중에서 Rahim(1983)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모형과 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고 널리 적용되고 있다(Boonsathorn 2007, 200). Rahim은 그의 모형에서 갈등상황의 개인은 '자신에 대한 관심(concern for self)'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concern for the other party)'이라는 두 가지 동기 인자와 조합하여 갈등관리방식을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림 1〉 개인 간 갈등의 관리방식 Rahim(1983, 369) 참고. 저자 재작성



〈그림 1〉은 두 가지 동기 인자에 따른 각 갈등관리 방식의 위치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에 대한 관심’ 인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통합(integrating)’과 ‘지배(dominating)’ 방식은 높은 영역에 분포하고 ‘순응(obliging)’과 ‘회피(avoiding)’ 방식은 낮은 영역에 위치한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 인자가 기준이 될 때, ‘순응(obliging)’과 통합(integrating)’은 높은 구간에, ‘회피(avoiding)’와 ‘지배(dominating)’ 방식은 낮은 영역에 위치한다. 그 중 ‘회피(avoiding)’는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모두 낮으며 ‘통합(integrating)’은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게 묘사되고 있다.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발현된다는 점에서, ‘통합(integrating)’은 갈등 당사자 양쪽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능동성을 가지며 협력적인 접근 방식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자신과 상대방의 성취 지점 모두에 낮은 관심을 보이는 ‘회피(avoiding)’는 갈등에 직면한 개인이 상대와의 상호작용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순응(obliging)’은 자신보다 상대방의 성취 지점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상대방의 관심을 우선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자신의 성취 지점에 대해서만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지배(dominating)’와는 대조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지배(dominating)’는 갈등 해소 과정에서 특정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이며 심지어 상대의 정서를 훼손 혹은 위협할 수 있는 공격적인 행태를 수반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Roloff(1976)는 ‘지배’와 같은 갈등관리방식 과정에서 흔히 수반되는 공격적 행동을 반사회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타협(compromising)’ 방식은 자신의 성취 지점과 상대방의 성취 지점에 대해 모두 중간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이 전략에 대해 Gross & Guerrero(2000)는 갈등상황에 있는 쌍방 모두 일부 포기과 일부 획득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기술하고 있다. Blake & Mouton(1964), Thomas (1976) 등은 5개 범주의 갈등관리방식 가운데 가장 건전한 방식으로 통합유형을 지목하였다.

이밖에, 개인 간 갈등에서의 갈등관리방식을 범주화한 학자로 Sillars, Putnam & Wilson, 등을 들 수 있다. Sillars(1980)는 부부 혹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대인 갈등을 유형화하였는데, 대인갈등해결 전략으로 노출성과 경쟁성을 기준으로 하여 통합전략, 분배전략, 회피전략의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하였다. Putnam & Wilson(1982)은 상황적 의사소통전략 평가 모형인 OCCI(Organization Communication Conflict Instrument) 개발 과정에서 해결 지향적(solution-oriented), 통제(control), 회피(nonconfrontation) 등 세 가지 범주의 갈등관리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갈등관리방식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해결 지향적 전략과 협력유형은 통합전략으로, 분배전략과 공격유형은 통제전략으로 응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간문화능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Rahim(1983) 및 Sillars, Putnam & Wilson 등의 갈등방식 모형으로부터 통합형, 통제(지배)형, 회피형, 순응(동조)형, 타협형 등 다섯 형태의 갈등관리방식으로 수렴하고 연구 대상자의 갈등관리방식 규명과정에서 1차 자료로 사용하였다(표1).

〈표 1〉 개인 간 갈등관리방식

학자 \ 갈등관리방식	통합형	통제(지배)형	회피형	순응(동조)형	타협형
Rahim	통합	지배	회피	순응	타협
Sillars	통합	분배	회피		
Putnam & Wilson	해결	통제	회피		

3. 간문화능력과 구성요소

Chen and Starosta(1996)는 “간문화능력은 특수한 물리적 환경 및 상징적 환경과 동일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상호작용이다.”라고 하여 간문화능력을 ‘간문화적 교차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나 상호작용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 정의는 ‘소통행위의 적절성’과 그 소통행위로 인한 결과 지점

도달 여부 및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논지이다.

한편 Thomas(2003)는 “간문화능력은 자기 자신과 타자의 인지·판단·감정·행위에 작용하는 문화적 조건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세계에 대한 해석 및 세계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상호 적응, 양립 불가능한 것에 대한 관용, 협력과 공동생활의 형태, 그리고 행위를 이끄는 성향의 형태가 포함된다.”라고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Liebe(2006)는 간문화능력의 갈등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간문화능력은 갈등과 관련된 행위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또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협상을 통하여 결국 도달한 합의사항에 대한 신뢰성과 지속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다.

Mayer(2008)는 간문화능력, 매개변수(개인적·문화적·인적 자원), 상승작용(문화에 특정한 중재 기법·역할 규정·일정·장소·소통방식 등에 대한 협상), 맥락 등이 간문화갈등에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하고 간문화중재모형을 개발하였다.

Straub, J. et al.(2010)에서는 구성개념으로서 간문화능력을 강조하였는데, 간문화능력은 개인에게서 시시각각 경험되고 나타나는 복합적인 자질과 성향(특징·특성·지식·능력·기능)으로 돌발적 상황에서 적합하게 작용하고 행위를 선도할 수 있는 일련의 가변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성요소는 개인에게서 시시각각 경험되고 나타나는 복합적인 자질과 성향을 말하며 돌발적 상황에서 적합하게 작용하고 행위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간문화능력은 행위 결정의 상황적 요인의 변화성 때문에 보편화하기는 어려우나 모든 가능한 것을 포함하며, 간문화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다채로운 지식과 능력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하는 과정 역시 다층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Straub et al 2010, 16-17).

위의 간문화능력에 대한 개념으로 추동된 간문화능력 모형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을 통하여 구성요소를 배열하고 구성개념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화된 표상을 제공할 수 있어, 간문화능력 개념 이해를 좀 더 수월하게 한다. 간문화능력 모형의 이러한 특성은 간문화능력을 갖춘 사람의 특성과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특히 다문화교육에 간문화적 요소를 내재화하는 과정에 유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간문화능력을 파악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간문화능력을 갖춘 개인의 중요한 특성을 목록화하여 정리하거나 배열하고 있는 Bolten(2006), Straub et al.(2010), Hiller(2010b)의 간문화능력 모형을 활용하였다.

Bolten(2006)은 전체적으로 정의적·정서적 차원, 인지적 차원, 행동관련·심동적

· 실천적 차원으로 간문화능력을 분화하였으며 Straub et al.(2010)은 간문화적 적실성을 갖춘 인성 특징, 간문화적 적실성을 갖춘 사회적 능력, 특정한 문화능력, 일반적 문화능력으로, Hiller(2010b)는 행위능력, 자세와 태도, 내면적 효과를 성찰능력, 외면적 효과를 구성적 상호작용 등으로 그 차원을 구분하고 구성요소를 배치하여 설명하고 있다<표 2>.

〈표 2〉 간문화능력 차원과 구성요소

Bolten			Straub				Hiller			
정의적·정서적 차원	인지적 차원	행동관련·심동적·실천적 차원	간문화적 적실성을 갖춘 인성특징	간문화적 적실성을 갖춘 사회적 능력	특정한 문화능력	일반적 문화능력	행위능력	자세와 태도	내면적 효과: 성찰능력	외면적 효과: 구성적 상호작용

허영식 외(2012a, 75); 김영경(2017, 85) 재인용

위의 간문화능력 모형을 기저로 교육적 차원의 평가요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Chen and Starosta(1996)와 Thomas(2003)의 간문화능력 개념 정의와 Bolten(2006), Straub et al.(2010), Hiller(2010b) 등의 간문화능력 구성요소를 교육영역인 인지적, 정의적, 실천(행동)차원으로 범주화하였다<표 3>.

〈표 3〉 간문화능력 평가요소

	인지적 차원	정의적 차원	실천 차원
1	인자·사고·태도·행동·행위방식의 인자로서 문화 현상 이해	근소한 자민족중심주의	소통하려는 의지와 자세
2	타문화 행위맥락 이해	스트레스 해소 및 감소 능력	창의성
3	자문화 행위맥락 이해	유연성	소통능력
4	간문화적 소통과정의 특별성 이해,	자기 신뢰	행위의 일관성
5	상호 문화적 차이와 그 의미에 대한 지식	개방성	행동의 유연성
6	언어, 지리적 해석 능력	타문화 존중 및 수용	갈등 해결능력
7	메타소통능력	모호성에 대한 관용	
8		타자에 대한 인정·관용·존중	
9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존중	

허영식 외(2013, 36); 김영경(2017, 95) 참고, 재구성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내 개인 간 갈등상황에서, 갈등 당사자의 간문화능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개인 간 갈등에서 인지적 차원의 간문화능력은 갈등관리방식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가?
- 〈연구문제 2〉 개인 간 갈등에서 정의적 차원의 간문화능력은 갈등관리방식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가?
- 〈연구문제 3〉 개인 간 갈등에서 실천 차원의 간문화능력은 갈등관리방식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가?

이러한 문제는 현장의 자료 수집과 양적, 질적 분석으로 해소되었으며 문제의 해소는 곧 본 연구의 목적과 명제를 뒷받침하는 검증 과정이 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이 다수 분포하는 경상북도 경산시를 주된 연구 영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거주 국제결혼이주자의 가정 구성원 가운데 간문화교육에 참여한 개인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연구의 과정은 1) 간문화교육 교과 선정 및 표본추출, 2) 갈등관리방식과 간문화능력에 대한 자료 수집, 3) 수집된 자료 분석의 순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및 사회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의 기관과 다문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다문화교육 연계 체계를 활용하여 웹사이트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90개를 수집하였고 그 중 선별과정을 거쳐 교육프로그램에 해당하는 40개를 교과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다.

40개의 교육프로그램에서 간문화교육의 속성을 지닌 교과를 선정하기 위하여 허영식(2010) 및 김영경(2017)의 간문화성을 위한 교육 원칙과 간문화교육 방법의 이론 모형¹⁾을 지표로 활용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6개의 교과로 수렴, 선택되었다.

유의추출 방법 중 전형추출법(typische Einzelbeobachtung)을 사용하여 경산시 다문화 가정 구성원 중, 선정된 6개 간문화교육을 학습한 국제결혼 이주자와 그 배우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간문화능력을 보유한 응답자 확보가 필요한 본 연구의 특성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유용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표본추출 방법으로 확정하였다. 표본을 통한 자료 수집은 설문과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간은 2018년 11월에서 2019년 3월까지 약 4개월간이었다.

설문의 측정 도구로 Rahim(1983)의 통합형, 통제(지배)형, 회피형, 동조(순응 혹은 복종)형, 타협형 등 다섯 개의 갈등관리방식 모형을 원용하여 4개 문항씩 총 20개 항목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간문화능력 평가 설문은 Bolten(2006), Straub et al.(2010), Hiller(2010b)의 간문화능력 모형을 토대로 인지, 정의, 실천 차원의 평가요소 22개를 선정하고 각 요소의 항목 당 2개씩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었으며 해당 언어를 숙지한 조사자로 국제결혼이주자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은 원칙적으로 1회 진행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5점 척도의 자기평가 기입 방식(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선정된 6개 교과목을 이수한 100명에게 총 100부가 배포되고 87부가 수거되었으나 이중 응답이 부실한 5부를 제외하고 실제 82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된 설문은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는 연속적 속성을 갖는 두 변인 간 상호 연관성에 대한 기술통계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두 변인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해 주는 통계분석 기법으로 간문화능력의 요소와 갈등관리방식 유형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는데 효과적인 통계 기법이다. 모든 통계적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연구 취지, 참여한 수업의 특성 구사 및 설문 문항에 대한 설명과 도움이 필요한 일부 응답자와의 만남은 2회 이상 이루어졌으며 특정 응답자와는 3회 이상의 면접을 하였다.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은 여성 76%(62명), 남성 24%(20명)로 여성 비율이 단연 높고 연령대의 분포를 보면 여성은 23세에서 40세이며 남성은 32세에서 52세로 남성의 연령대가

-
- 1) ① 간문화성을 위한 교육 원칙: 첫째, 각 문화의 내적 논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둘 것, 둘째, 상대주의를 지향할 것, 셋째, 경직된 구조와 조직으로 문화를 등급 매기지 아니할 것, 넷째, 타자 공포증을 비판적으로 다룰 것, 다섯째, 논쟁과 갈등을 회피하지 않을 것
 - ② 간문화교육의 방법: 간문화적 상황과 경험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 등의 해결과 변동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방안으로서 교수법, 기법, 실천, 기본조건의 차원

약 10세 정도 높게 분포하고 있다.

1차 분석한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간문화교육 교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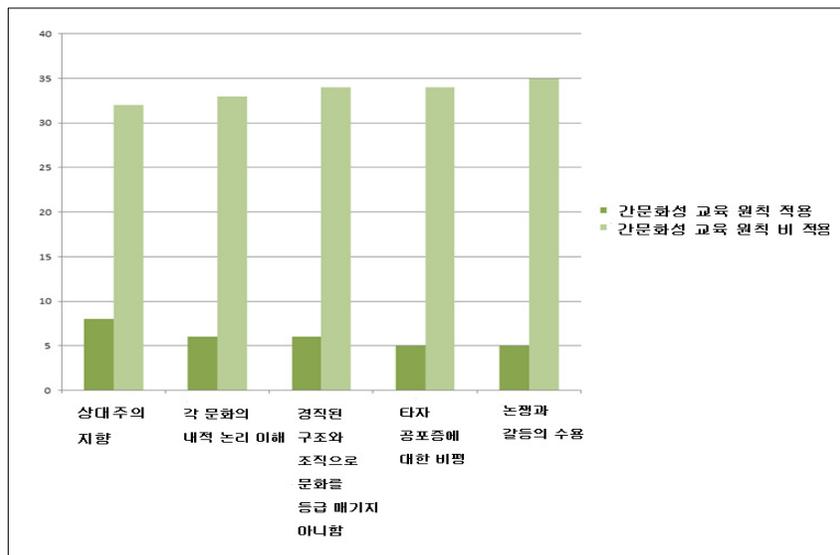
현재 경산시에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업무 위탁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 몇 개의 민간 기관에서 다문화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산시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관련 기관의 2018년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40여 개를 현장 답사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제별 분포를 보면 사회적응(문화, 언어, 음식 관련), 법(민법, 상법, 헌법 등), 취업교육, 시민성 함양, 갈등 해소 등이며 사회적응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시민성 함양과 갈등 해소 관련 주제의 교육은 극히 일부로 파악되었다.

간문화교육 교과 선정을 위해 '간문화성을 위한 교육 원칙의 함유'와 '교육 방법의 실행'을 지표로 사용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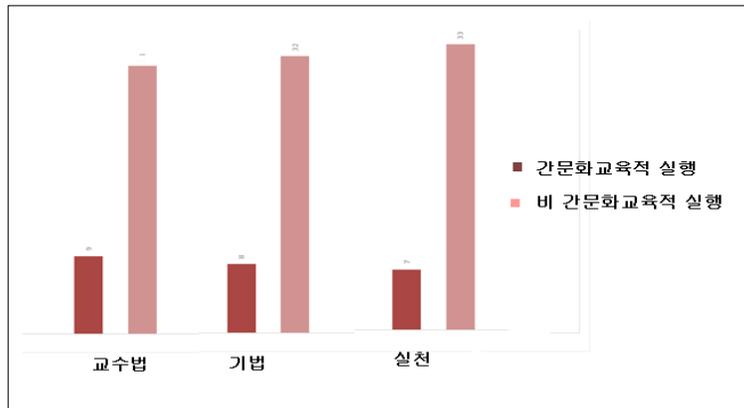
간문화성을 위한 교육의 원칙 적용은 조사 대상 다문화교과의 약 1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들 원칙별 적용 빈도를 보면 '상대주의 지향' 외에는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간문화성을 위한 교육 원칙 적용 특성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처하는 적절한 간문화교육 방안 모색과 적용은 교육현장에서의 실행에서 잘 나타나며 그 적용 특성과 양은 학습자들의 간문화능력 함양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법, 기법, 실천의 세 가지 차원으로 탐색하여 교육 방법에서의 간문화적인 특성 여부를 알아보았다. 탐색 결과 교육자(화자)와 학습자(청자) 사이의 원만한 소통 처리 과정을 의미하는 교수법은 9개 과목(23%)에 해당하는 교과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학습자 내부경험의 대립적 요소들에 유용하게 기능하는 정의적 자극이나 메타소통 등의 교육 기법 비중은 8개 교과(20%)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그 적용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천은 학습자가 갈등 등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교육 방법으로 토론, 논쟁 등을 수반하는, 전형적인 간문화교육 방법이지만 불과 7개 과목(18%)으로 분포하여 교육현장에서 그 활용도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

〈그림 3〉 간문화교육적 실행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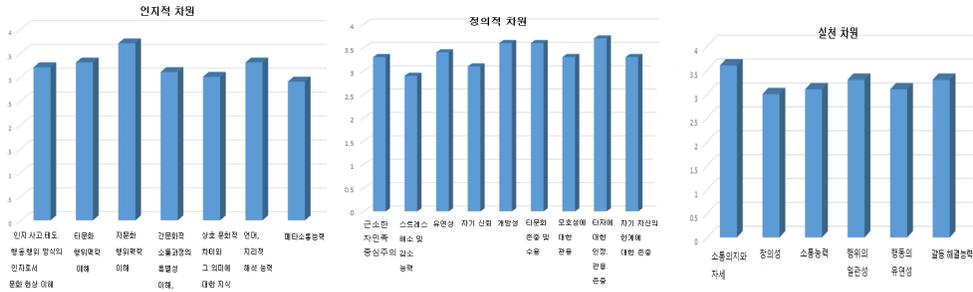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간문화성을 위한 교육의 원칙에서 4개 이상, 교수법, 기법, 실천의 세 가지 차원을 모두 충족하는 ‘언어와 음악 사이’, ‘사회와 법’, ‘시끄러운 지구’, ‘신문으로 종이접기’, ‘나의 어린왕자 만나기’, ‘폐품 살리기’ 등 6개 교과목을 간문화교육 교과로 선정하였으며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간문화교육 참여자의 간문화능력

선정된 6개 교과를 학습한 참여자들의 간문화능력의 범주를 인지적 차원, 정의적 차원, 실천 차원으로 구성을 하고 각 지표에 6~9개의 요소를 정치하여 총 22개 문항으로 재구성하

였으며 5점 척도(0~4점)로 평가하였다. 간문화능력 습득 수준을 보면 평균 3.3의 평균값을 보여 높은 수준의 습득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참여자의 간문화능력



(1) 인지적 차원의 간문화능력

간문화능력의 인지적 차원은 7개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소의 Cronbach's a 신뢰도 계수를 보면 인지·사고·태도·행동·행위방식의 인자로서 문화 현상 이해 .66(M=3.46, SD=.602), 타문화 행위매락 이해 .78(M=3.56, SD=.530), 자문화 행위매락 이해 .80(M=3.36, SD=.546), 간문화적 소통과정의 특별성 이해 .72(M=3.46, SD=.586), 상호 문화적 차이와 그 의미에 대한 지식 .68(M=3.36, SD=.568), 언어, 지리적 해석 능력 .80(M=3.36, SD=.553), 메타소통능력 .68(M=3.46, SD=.532)의 알파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신뢰도 계수 .70 이하인 '인지·사고·태도·행동·행위방식의 인자로서 문화 현상 이해', '상호 문화적 차이와 그 의미에 대한 지식'과 '메타소통능력'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을 변수로 채택하였다.

(2) 정의적 차원의 간문화능력

간문화능력의 정의적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9개 요소의 Cronbach's a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근소한 자민족중심주의 .64(M=3.41, SD=.472), 스트레스 해소 및 감소 능력 .80(M=3.36, SD=.553), 유연성 .83(M=3.63, SD=.602), 자기 신뢰 .68(M=3.46, SD=.532), 개방성 .61 (M=3.43, SD=.436), 타문화 존중 및 수용 .80(M=3.36, SD=.554), 모호성에 대한 관용 .68(M=3.36, SD=.568), 타자에 대한 인정·관용·존중 .80(M=3.36, SD=.553),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존중 .68(M=3.46, SD=.532)의 알파값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신뢰도 계수 .70 이하인 '근소한 자민족중심주의', '자기 신뢰', '개방성', '모호성에

대한 관용',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존중'의 항목을 제외한 4개 요소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3) 실천 차원의 간문화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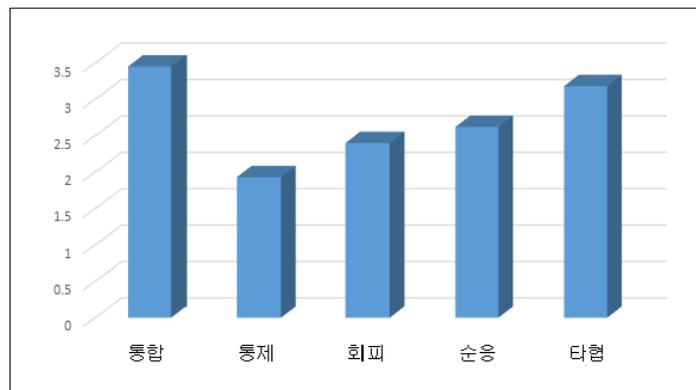
간문화능력 중 실천 차원에 해당하는 6개 요소의 Cronbach's a 신뢰도 계수의 알파값은 소통하려는 의지와 자세 .78(M=3.56, SD=.530), 창의성 .64(M=3.41, SD=.472), 소통능력 .74(M=3.60, SD=.483), 행위의 일관성 .64(M=3.41, SD=.472), 행동의 유연성 .71(M=3.23, SD=.550), 갈등 해결능력 .74(M=3.60, SD=.483)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0 이하의 신뢰도 계수 값을 가지는 '창의성'과 '행위의 일관성'을 제외한 4개의 요소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3) 참여자의 갈등관리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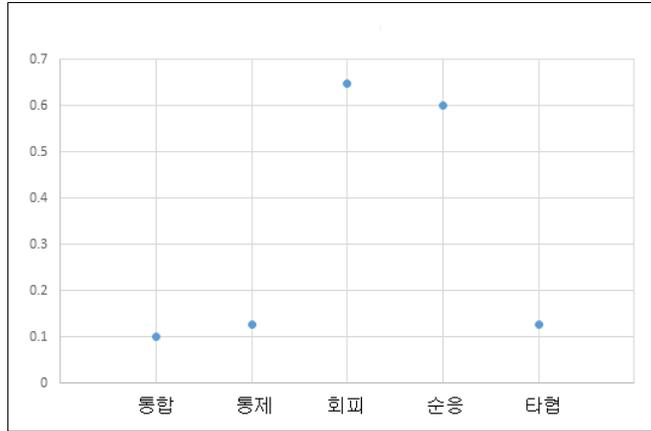
갈등관리방식의 5개 요인은 각각 7개 문항씩 총 3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요인의 Cronbach's a 신뢰계수를 살펴보면 통합유형 .82(M=3.60, SD=.502), 타협유형 .82(M=3.60, SD=.502), 통제유형 .70(M=3.24, SD=.512), 순응유형 .76(M=3.35, SD=.512), 회피유형 .72(M=3.23, SD=.568)의 알파 값을 나타내고 있어 5개 요인 모두를 채택하였다.

참여 다문화가족의 갈등관리방식을 유형별 평균값은 통합 3.5, 통제 1.9, 회피 2.4, 순응 2.6, 타협 3.2로 통합과 타협유형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준편차를 통해 응답의 분산도를 측정한 결과 통합, 통제, 타협유형은 평균 중심으로 집중하는 반면 회피와 순응유형의 분산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 갈등관리방식의 평균값



〈그림 6〉 갈등관리방식 응답의 분산 정도



IV. 결과

1. 인지적 차원의 간문화능력능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에서 설정한 다문화가족의 인지적 차원의 간문화능력이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인지적 차원의 간문화능력 요소와 갈등관리방식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4〉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다문화 행위 맥락 이해’ 능력은 통합($r=.68, p<0.1$), 순응($r=.44, p<0.1$), 타협($r=.39, p<0.1$) 갈등관리방식과 모두 정의 관계에 있는데 특히 통합 형태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통제($r=-.24, p<0.1$), 회피($r=-.26, p<0.1$)형 갈등관리방식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문화 행위 맥락 이해’ 능력은 타협($r=.39, p<0.1$)과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통합($r=.28, p<0.1$)과 통제, 순응형의 갈등관리방식과도 유의미하게 정의 상관성을 보여준다.

‘간문화적 소통과정의 특별성 이해’ 역시 통합($r=.69, p<0.1$), 타협($r=.32, p<0.1$) 유형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합과는 매우 높은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간문화적 소통과정의 특별성 이해’ 능력은 통제($r=-.22,$

p<0.1), 회피(r=-.28, p<0.1), 순응(r=-.24, p<0.1)형 갈등관리방식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언어, 지리적 해석 능력’은 통합(r=.58, p<0.1), 타협(r=.58, p<0.1)과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통제(r=-.24, p<0.1), 순응(r=.18, p<0.5) 형태와는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언어, 지리적 해석 능력’은 통합(r=.58, p<0.1), 타협(r=.38, p<0.1) 형태와 높은 정의 상관성을 가지며 통제(r=-.24, p<0.1), 순응(r=-.18, p<0.5)과는 부적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지적 차원의 간문화능력은 대체로 통합, 타협형태의 갈등관리방식과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타문화 행위맥락 이해’, ‘간문화적 소통과정의 특별성 이해’, ‘언어, 지리적 해석 능력’은 통합 형태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타협방식과는 4개의 능력이 모두 유의미하게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갈등상황에 놓인 다문화가족이 갈등관리방식으로 통합과 타협유형을 사용하는데 인지적 차원의 간문화능력 습득이 긍정적인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자문화 행위맥락 이해’능력을 제외한 3개의 인지적 차원 능력과 통제 형태의 갈등관리방식 간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은 인지적 차원의 해당 간문화능력이 강화될수록 통제 형태의 갈등관리방식이 배제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인지적 차원의 간문화능력과 갈등관리방식 간 상관관계

변인	타문화 행위맥락 이해	자문화 행위맥락 이해	간문화적 소통과정의 특별성 이해	언어, 지리적 해석 능력	통합	통제	회피	순응	타협
타문화 행위맥락 이해	-								
자문화 행위맥락 이해	.45**	-							
간문화적 소통과정의 특별성 이해	.62**	.36**	-						
언어, 지리적 해석 능력	.52**	.24**	.11*	-					
통합	.68**	.28**	.69**	.58**	-				
통제	-.24**	.09	-.22**	-.24**	-.21**	-			
회피	-.26**	-.09	-.28**	-.09	-.39**	.11*	-		
순응	.44**	.08	-.24**	-.18*	.08	-.11*	.48**	-	
타협	.39**	.36**	.32**	.38**	.44**	.11*	.21**	.28**	-

*p<.05 ** p<.01

〈표 5〉 정의적 차원의 간문화능력과 갈등관리방식 간 상관관계

변인	스트레스 해소 및 감소 능력	유연성	타문화 존중 및 수용	타자에 대한 인정·관용·존중	통합	통제	회피	순응	타협
스트레스 해소 및 감소 능력	-								
유연성	.55**	-							
타문화 존중 및 수용	.64**	.65**	-						
타자에 대한 인정·관용·존중	.52**	.44**	.68*	-					
통합	.69**	.68**	.68**	.62**	-				
통제	-.34**	-.42**	-.48**	-.52**	-.21**	-			
회피	-.28**	-.09	-.34**	-.15*	-.39**	.11*	-		
순응	.48**	.08	.09	-.12*	.08	-.11*	.48**	-	
타협	.52**	.58**	.42**	.38**	.44**	.11*	.21**	.28**	-

*p<.05 ** p<.01

3. 실천 차원의 간문화능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에서 설정한 다문화가족의 실천 차원의 간문화능력이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실천 차원의 간문화능력 요소와 갈등관리방식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으며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실천 차원의 간문화능력 중 ‘소통하려는 의지와 자세’는 통합($r=.68, p<0.1$)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통제($r=-.44, p<0.1$), 회피($r=-.32, p<0.1$)와는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소통능력’ 역시 통합($r=.68, p<0.1$)과 높은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제($r=-.42, p<0.1$)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소통하려는 의지와 자세’의 양상과 흡사하다.

‘행동의 유연성’과 통합($r=.68, p<0.1$), 순응($r=.32, p<0.1$), 타협($r=.42, p<0.1$)간에는 정적 상관성이 나타나고 통제($r=-.44, p<0.1$)와의 사이는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갈등 해결능력’은 통합($r=.68, p<0.1$)과는 높은 수준의 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통제($r=-.54, p<0.1$), 회피($r=-.35, p<0.1$)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하면 실천 차원을 이루는 4개의 간문화능력은 모두 통합과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제와는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실천 차원의 간문화능력 향상은 갈등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이 갈등 해결을 하고자 할 때 통합방식을 채택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통제방식 채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실천 차원의 간문화능력과 갈등관리방식 간 상관관계

변인	소통하려는 의지와 자세	소통능력	행동의 유연성	갈등 해결능력	통합	통제	회피	순응	타협
소통하려는 의지와 자세	-								
소통능력	.69**	-							
행동의 유연성	.64**	.52**	-						
갈등 해결능력	.62**	.48**	.64*	-					
통합	.68**	.66**	.68**	.68**	-				
통제	-.44**	-.42**	-.44**	-.54**	-.21**	-			
회피	-.32**	-.12*	.08	-.35*	-.39**	.11*	-		
순응	.08	.09	.32**	-.12*	.08	-.11*	.48**	-	
타협	.14*	.14*	.42**	.14*	.44**	.11*	.21**	.28**	-

* $p<.05$ ** $p<.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간문화능력이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경상북도 경산시 국제결혼이주자의 가정을 연구의 표본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인지적 차원의 간문화능력은 대체로 통합, 타협형태의 갈등관리방식과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통합, 타협방식 채택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간문화능력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다문화 행위 맥락 이해', '간문화적 소통과정의 특별성

이해, '언어, 지리적 해석 능력'은 통합 형태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갈등상황에 놓인 다문화가족이 갈등관리방식으로 통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인지적 차원의 간문화능력 습득이 유용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타문화 행위맥락 이해', '간문화적 소통과정의 특별성 이해', '언어, 지리적 해석 능력'을 가진 갈등 당사자는 서로 협력하며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통합을 구사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클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반면에 '자문화 행위맥락 이해'를 제외한 '타문화 행위맥락 이해', '간문화적 소통과정의 특별성 이해', '언어, 지리적 해석 능력'과 통제 형태의 갈등관리방식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이 나타나 인지적 차원의 해당 간문화능력이 강화될수록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통제 형태의 갈등관리방식을 배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정의적 차원의 간문화능력과 갈등관리방식 간에는 부분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적 차원을 구성하는 '스트레스 해소 및 감소 능력', '유연성', '타문화 존중 및 수용', '타자에 대한 인정·관용·존중' 등의 간문화능력은 대부분 통합과 높은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타협형태의 갈등관리방식과도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타자에 대한 인정·관용·존중'의 능력 외 모든 정의적 차원의 간문화능력 요소는 통제방식과는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의적 차원의 간문화능력을 습득할수록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가족 간 갈등상황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타협을 통해 중도입장을 추구한다는 경향성을 보이며 통제 형태의 갈등관리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실천 차원의 간문화능력은 모두 통합과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통제와는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갈등에 직면한 다문화가족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할 때 '소통하려는 의지와 자세', '소통능력', '행동의 유연성', '갈등 해결능력'의 간문화능력은 통합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통제방식 구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적, 정의적, 실천 차원의 간문화능력은 다문화가족이 자신과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 모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쌍방 모두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통합 갈등관리방식 구사에 긍정적인 매개로 작동하는 반면 통제 등 억압과 지배 방식의 관리방식과는 부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관리방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에 힘입어 본 연구자는

다문화교육 내용에 간문화능력 각 차원의 요소를 내장하고 간문화능력 배양에 무게를 두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갈등 해소에 매우 유용한 방안임을 밝힌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간문화능력의 갈등관리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 방법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실용적 차원의 의미를 부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국한된 표본의 규모 및 변인의 제한 등은 향후 보완하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 김영경. 2017. 대학 다문화교육에서의 '간문화성' 증대 방안 -교수 학습경험실천 모형 개발을 통해, 현대사회와다문화 7(1), 77-111.
- 이창원·전주상. 2003. 갈등당사자의 상대적 지위와 개인 간 갈등의 관리방식. 한국행정학보 37(2), 1-19.
- 정용주. 2006. 갈등관리유형이 리더신뢰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조병은. 2015. 가족의 위기와 해체. 한국가족학연구회편. 가족학. 하우.
- 최해진. 1998. 갈등의 이해와 관리. 두남.
- 허영식. 2000. 간문화 학습의 이론적 기초와 학습 과정. 사회과교육학연구(4), 82-102.
- _____. 2010.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 강현출판사.
- _____. 2012. 다문화사회의 통합관점에서 바라본 간문화 갈등과 간문화 중재. 아태연구 19(2), 231-261.
- 허영식·정창화. 2012a. 간문화주의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 이담북스.
- 허영식·김진희. 2013. 간문화능력과 간문화교육에 대한 동향과 함의: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3(3), 31-60.
- Amason, A. C. 1996. Distinguishing the effects of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conflict on strategic decision-making: Resolving a paradox for top management team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 123-148.
- Blake, R. R. & Mouton, J. S. 1964. The Managerial Grid. Gulf Houston.
- Bolten, J. 2006. Interkultureller Trainingsbedarf aus der Perspektive der Problemerkahrungen entsandter Führungskräfte. Goetz, K. (ed.). Interkulturelles Lernen, interkulturelles Training. Muenchen: Hampp, 57-75.
- Boonsathorn, W. 2007. Understanding Conflict Management Styles of Thais and Americans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ai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8(3), 196-221.
- Chen, G.-M. and Starosta, W. 1996.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A synthesis. *Communication Yearbook* 19, 353-383.

- Desivilya, H. S., & Yagil, D. 2005. The Role of Emotions in Conflict Management: The Case of Work Team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6(1), 55-69.
- Deutsch, M. 1969. Conflicts: Productive and destru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25, 7-41.
- Gross, M. A., & Guerrero, I. K. 2000. Managing Conflict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An Application of the Competence Model to Rahim's Organizational Conflict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1(3), 200-226.
- Hiller, G. 2010. Einleitung. Ueberlegungen zum interkulturellen Kompetenzerwerb an deutschen Hochschulen. Hiller, G. and Vogler-Lipp, S. (eds.). *Schlüsselqualifikation Interkulturelle Kompetenz an Hochschulen*, Wiesbaden VS 2010a, 19-31.
- Hiller, G. 2010b. Was machen Sie denn da eigentlich?. Hiller, G. and Vogler-Lipp, S.(eds.). *Schlüsselqualifikation Interkulturelle Kompetenz an Hochschulen*. Wiesbaden: VS, 2010b, 35-56.
- Jehn, K. A. 1994. Enhancing effectiveness: An investigation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value-based intragroup conflic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5, 223-238.
- Jehn, K. A. 1997. Qualitative analysis of conflict types and dimensions in organizational group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 538-566.
- Liebe, F. 2006. Mediation im politischen Feld, Nicklas, H. et al. (eds), *Interkulturell denken und handeln. Theoretische Grundlagen und gesellschaftliche Praxis*, Frankfurt/M.: Campus, 358-368.
- March James G. & Herbert A. Simon, 1958. *Organization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Mayer, C.-H. 2008. *Trainings und buch Interkulturelle Mediation und Konfliktloesung*.
- Putman, L. L. & Wilson, C. E. 1982. Communication strategies in organizational conflicts. In, M. Burgoon(ED) *Communication Yearbook* 6.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Robbins, Stephan, P. 1998. Organizational Behavior(8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 Roloff, M. E. 1976. Communication strategies, relationships, and relational change. In G. Miller(ED.), Exploration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everly Hills, CA: Sage.
- Sillars, A. L. 1980. The sequential and distributional structure of conflict interaction as a function of attributions concerning the locus of responsibility and stability of conflicts. In D. Nimmo(ED.), Communication Yearbook 4, 217-235. New Brunswick, N. J.: Transaction.
- Simons, T. L. & Peterson, R. S. 2000. Task Conflict and Relation in top management teams: The Pivotal Role of Intragroup Trus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1), 102-111.
- Sprey, J. 1971. On the management of conflict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 Straub, J. et al. 2010. Interkulturelle Kompetenz lehren: Begriffliche und theoretische Voraussetzungen. Weidemann, A. et al., (eds.).Wie lehrt man interkulturelle Kompetenz? Theorien, Methoden und Praxis in der Hochschulausbildung. Bielefeld: transcript, 15-27.
- Thomas, A. 2003. Interkulturelle Kompetenz. Grundlagen, Probleme und Konzepte. Erwaegen- Wissen - Ethik (14)1, 137-150.
- Thomas, K. W. 1976.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Dunnette, MD(Ed.) Handbook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Rand McNally, Chicago.
- 朝日新聞 2014/06/17

● 투고일: 2019.07.09. ● 심사일: 2019.07.19. ● 게재확정일: 2019.08.02.

| Abstract |

**The Effects of Intercultural Competence on Conflict
Management Style**
- Focusing on Interpersonal Conflicts in Multicultural Families -

Won Sunok (KyungWoon University)

Kim Yeongkyeong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intercultural competence affects conflict management style. To achieve this goal, the interrelation between each factors(cognitive, affective, and practical domain)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conflict management style preferred in their interpersonal conflict was statistically verifi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of the cognitive, affective, practical domain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gration and compromise conflict management style but negative(-) correlation with control conflict management style. These findings show the inclination that intercultural competence is a positive mediator for the choice of conflict management approaches that are pro-social and cooperative, including integration and compromise conflict management style but intercultural competence could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choice of exclusive conflict management style such as control method. Based on these conclusions, considering the acquisition of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is to be a valid way to help adopt a healthy conflict management style, this researcher propose to embed the elements of intercultural capacity in the contents and oper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Key words〉 intercultural competence(cognitive, affective, and practical domain), interpersonal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style